

AML/CFT/CPF 준법 매뉴얼

버전: 2026년 9월 30일

AML/CFT/CPF 준법 매뉴얼

약어 목록	
약어	전체 용어
AML/CFT/CPF	자금세탁 및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조달 방지
BRA	사업 위험 평가
CA	Companies Act 2001
CDD	고객확인
CIS	집합투자기구
CO	준법감시인
CRA	고객 위험 평가
DMLRO	부자금세탁보고책임자
DPO	정보보호 담당 부서
EDD	강화된 고객확인
FATF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
FIAMLA	Financial Intelligence and Anti - Money Laundering Act 2002
FIAMLR	Financial Intelligence and Anti - 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18
FIU	금융정보분석원
FSA	Financial Services Act 2007
FCC	Financial Crimes Commission – Act 2023
FSC	금융서비스위원회
FSC 핸드북	FSC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Handbook 2020, 2022년 9월 21일 최종 개정

FYE	회계연도 말
GBC	글로벌 비즈니스 회사
IA	독립 규제 준법감사
IA 보고서	독립 규제 준법감사 보고서
ICAC	부패방지 독립위원회
KYC	고객알기제도
MC	운용회사
ML/TF/PF	자금세탁 및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조달
MLRO	자금세탁보고책임자
NRA 보고서	국가 위험평가 보고서 2019
NSC	국가 제재위원회
NSSEC	국가 제재 사무국
PEP	정치적 주요 인물
ROC	회사등록관
STR / SAR	의심거래보고서 / 의심활동보고서
UBO/BO	(최종) 실소유자
UN Sanctions Act 2019	The United Nations (Financial Prohibitions, Arms Embargo and Travel Ban) Sanctions Act 2019
UNSC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용어 목록	
용어	설명/정의
실소유자	“실소유자” 또는 “최종 실소유자”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소유권, 의결권 또는 기타 지배 수단을 통하여 회사를 궁극적으로 소유하거나 회사에 대하여 실효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그러한 지배력은 차등 의결권, 고위 경영진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 채무상품, 법인 내에서 보유하는 직위 또는 해당인이 회사에 대한 궁극적인 실효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기타 메커니즘을 통하여 행사될 수 있다. 소유권 또는 기타 지배 수단을 통해 자연인을 식별할 수 없거나 실소유자의 신원에 의문이 있는 경우, 실소유자는 Companies Act 2001의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회사를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으로 한다.
고객/의뢰인	회사와 거래하는 개인 또는 법인.
고객확인	FIAML Regulations 2018 및 FSC AML/CFT/CPF Handbook 2020(2022년 9월 최종 개정)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조치.
고위험 국가	FATF가 공개성명에서 “그레이 리스트”로 등재한 국가 또는 Financial Intelligence and Anti-Money Laundering Act의 section 17H(1)에 따라 모리셔스의 관련 장관이 지정한 국가로서, 지속적이거나 중대한 ML/TF/PF 위험 또는 국제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는 전략적 AML/CFT/CPF 결함이 있는 국가.
법인	보고기관과 지속적인 고객관계를 설정하거나 그 밖에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연인 이외의 모든 실체. 여기에는 회사, 법인체, 조합 또는 협회, 기타 유사한 실체 또는 법적 약정 이외의 기타 모든 사람의 단체가 포함된다.
법적 약정	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 신탁은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수탁자를 통하여 사업관계를 형성한다. 신탁을 대신하여 사업관계를 체결하는 자는 신탁의 수탁자이며, 수탁자는 신탁과 함께 고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자금세탁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합법적인 출처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이를 은폐하려는 과정.
정치적 주요 인물(“PEPs”)	외국 PEP - 외국으로부터 중요한 공적 기능을 위임 받았거나 위임받았던 개인.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정부 수반, 고위 정치인, 고위 정부·사법 또는 군 관계자, 국영기업의 고위 임원 및 주요 정당 관계자; 국내 PEP - 모리셔스에서 국내적으로 중요한 공적 기능을 위임받았거나 위임받았던 개인.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정부 수반, 고위 정치인, 고위 정부·사법 또는 군 관계자, 국영기업의 고위 임원 및 주요 정당 관계자; 또는 외국 PEP와 국내 PEP의 차이 는 해당 개인에게 중요한 공적 기능을 위임한 국가이다. 또한 국내 PEP인 개인이 다른 국가에서 수행하는 또 다른 중요한 공적 기능을 통해 외국 PEP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PEP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제기구 PEP- 고위 경영진을 의미하는 국제기구의 중요한 직무를 위임받았거나 위임받았던 사람. 예를 들어 이사, 부이사 및 이사회 구성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PEP의 가까운 관계자- 모든 유형의 PEP에는 사회적 또는 직업적 관계에 관계없이 그 가족 구성원과 가까운 관계자도 포함된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여러 유형의 민족·문화적·종교적 관계(예: 부족, 씨족, 카스트, 종파)가 가까운 관계자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다. PEP의 정의는 앞서 언급한 범주에 속하는 중간 직급 또는 그보다 하위 직급의 개인을 포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확산자금조달	국내법 또는 해당되는 경우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여 핵무기,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와 그 운반수단 및 관련 물질(비합법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중용도 물품을 모두 포함)의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수출, 환적, 중개, 운송, 이전, 비축 또는 사용을 전부 또는 일부 목적으로 하는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FATF Report 출처)
테러자금조달	테러 행위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의도 또는 인식을 가지고 어떠한 수단으로든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고의로 제공하거나 수집하는 행위. 테러자금 조달의 출처는 합법적일 수도 있고 불법적일 수도 있다.

제보 행위	조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자와 관련된 범죄.
-------	----------------------------------

목차

약어 목록	1
용어 목록	3
서문	8
전원의 준법 준수 의지	8
제1절: 배경	9
1.1 모리셔스	9
1.2 모리셔스의 글로벌 비즈니스 라이선스	9
1.3 모리셔스의 투자 딜러 라이선스	9
1.4 입법 체계	9
1.5 회사 개요	10
1.6 고객 / 의뢰인	10
1.7 제공 서비스	10
1.8 등록 사무소	11
제2절: 회사, 이사회, 경영진 및 직원	12
2.1 회사의 의무 및 책임	12
2.2 이사회 의무 및 책임	13
2.3 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14
2.4 투자 딜러 팀의 의무 및 책임	15
2.5 자금세탁 보고 책임자(“MLRO”) 및 부 MLRO의 의무 및 책임	15
2.6 준법감시인의 의무 및 책임	15
2.7 모든 직원 및 지정 임원의 의무 및 책임	16
2.8 임원의 임명 및 변경	16
2.9 직원 심사 절차	16
2.10 AML/CFT/CPF 교육 및 기타 관련 교육	17
2.11 징계 조치	17
제3절: 일반 정책 및 절차	18
3.1 기록 보관	18
3.2 연차 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20
3.3 고객 지급 지시	21
현금 사용 금지 정책	22
3.4 고객 지시	22
3.5 고객 및 회사 은행계좌의 조정을 통한 거래 모니터링	22
3.6 시스템 백업, 사업 연속성 및 재해 복구 계획	23
3.7 윤리강령	24
3.8 보험 정책	25
3.9 최소 자본금	25
3.10 광고	25
3.11 데이터 보호	26
3.12 실질 요건 - 라이선스 기준	26
제4절: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확산금융 대응 정책 및 절차(“AML/CFT”)	27
4.1 자금세탁	27
4.2 테러자금 조달	28

4.3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28
4.4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및 확산금융 관련 범죄 요약:	29
4.5 AML/CFT/CPF 정책 및 절차	32
5.0 고객 식별 및 확인 절차	39
5.1 고객확인(CDD') 정책 및 절차	39
5.2 고객 식별 및 확인과 고객 온보딩에 대한 책임	39
5.3 고객의 신원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가?	41
제3자 의존	45
5.5 심사	46
5.6 자금 출처 / 재산 출처	49
5.7 기존 고객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51
5.8 내부 및 외부 보고 절차	54
5.9 AML/CFT/CPF 정책, 절차 및 프로세스의 검토와 독립 감사	60
5.10 독립 감사 기능	60
5.11 AML/CFT/CPF 관련 적용 법률에 따른 제재	61
5.12 인증	61
5.13 번역	62
제6절: 고객 정책 및 절차	63
6.1 일반 고객 정책	63
6.2 고객 온보딩 정책	63
6.3 회사의 주요 책임자 및 임원	66
6.4 고객 분류	66
제7절: 운영 정책 및 절차	68
7.1. 고객 운영 절차	68
7.2 고객에 대한 서비스	68
7.3 고객 은행계좌와 회사 계좌의 분리	69
7.4 고객에 대한 보고	69
7.5 회사의 선금금	69
7.6 이해상충	70
7.7 민원 처리 절차	70
7.8 준법 및 위험 위원회	71
7.9 감사위원회	71
맺음말	71

서문

본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조달 대응 및 확산금융 대응(AML/CFT/CPF) 준법 매뉴얼(이하 ‘매뉴얼’)에는 Spec Capitals Ltd.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이하 ‘BoD’ 또는 ‘이사회’)가 승인한 내부 정책, 절차 및 통제 시스템이 수록되어 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정책, 절차 및 통제 시스템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매뉴얼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사전 승인을 얻지 않는 한 확립된 정책, 절차 및 통제 시스템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매뉴얼은 회사의 내부 정책, 절차 및 통제 시스템에 이루어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해당되는 경우 회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제 체계의 변경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전원의 준법 준수 의지

BoD와 경영진은 물론 준법감시인, MLRO 및 DMLRO를 포함한 경영팀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명확한 기준과 지원 지침을 상세히 규정한 회사의 AML/CFT/CPF 준법 매뉴얼을 기쁘게 제시한다. 또한 AML/CFT/CPF 준법 매뉴얼은 회사의 준법 준수 의지를 뒷받침하고 직원, 투자자/트레이더/고객(이하 ‘고객’), 파트너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한 긍정적이고 윤리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본 AML/CFT/CPF 준법 매뉴얼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회사의 준법 체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 AML/CFT/CPF 준법 매뉴얼의 내용에 관한 질문은 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문의해야 한다.

당사는 준법 문제에 관한 여러분의 권고와 의견을 환영한다. 준법감시인은 여러분의 의견을 다루기 위한 자원으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제1절: 배경

1.1 모리셔스

모리셔스는 견고한 규제 체계, 고도로 숙련되고 다언어를 구사하는 인력 및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포함한 양호한 인프라를 갖춘 매력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제금융센터이다.

모리셔스는 사업 용이성, 아프리카 거버넌스 및 경제적 자유와 관련한 국제 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에 설립된 금융서비스위원회('FSC')는 금융서비스법("FSA") 2007에 따라 비은행 금융서비스 부문과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부문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1.2 모리셔스의 글로벌 비즈니스 라이선스

회사는 FSA 2007에 따라 발급된 글로벌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라이선스 보유자는 모리셔스에 실질적인 관리의 주요 장소를 두고 주로 모리셔스 외부에서 사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는 거주 법인이다.

1.3 모리셔스의 투자 딜러 라이선스

투자 딜러 라이선스는 그 보유자가 모리셔스에서 거래 플랫폼을 설립하고 고객을 대신하여 증권 및 이와 유사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증권 부문을 포함한 다른 모든 비은행 금융서비스 활동과 마찬가지로 투자 딜러 서비스는 FSC의 규제를 받습니다. 회사는 특히 Securities Act 2005에 따라 발급된 Investment Dealer (Full Service excluding Underwriting) Licence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Investment Dealer (Full Service including Underwriting) Licence와 달리 인수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1.4 입법 체계

- 모리셔스에서 Global Business Licence 및 Investment Dealer Licence를 보유한 회사에 적용되는 입법 요건과 체계는 Securities Act 2005 및 Securities (licensing) Rules 200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Finance Acts에 의해 개정되고 Regulations에 의해 보완된 Income Tax Act 1995
- Finance Acts에 의해 개정되고 Regulations에 의해 보완된 Companies Act 2001
- FIAML Regulations 2018에 의해 보완된 Financial Intelligence and Anti Money Laundering Act 2002
- Regulations에 의해 보완된 Prevention of Terrorism Act 2002
-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2002 (폐지)
- 관련 Finance Acts에 의해 개정된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and Related Matters Act 2003
- 관련 Codes 및 Regulations에 의해 보완된 Banking Act 2004
- Finance Acts에 의해 개정된 Financial Reporting Act 2004
- Regulations에 의해 보완된 Securities Act 2005, 여기에는 Securities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and Closed-end Funds) Regulations 2008이 포함됩니다.
- Securities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and Closed-end Funds) Regulations 2008
- Guidelines, Codes 및 Circular Letters에 의해 보완된 Financial Services Act 2007

- Insolvency Act 2009
- Asset Recovery Act 2011 (폐지)
- Regulations에 의해 보완된 Data Protection Act 2017
- United Nations (Financial Prohibitions, Arms Embargo and Travel Ban) Sanctions Act 2019
-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Proliferation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2019
- FSC 적격성 및 적합성 가이드
- National Sanctions Secretariat가 2020년 8월 25일 발행한 United Nations (Financial Prohibitions, Arms Embargo and Travel Ban) Sanctions Act 2019에 따른 표적 금융제재 이행 지침
- 2020년 8월 25일 발행된 United Nations (Financial Prohibitions, Arms Embargo and Travel Ban) Sanctions Act 2019에 따른 표적 금융제재 이행 지침에 관한 FSC 공지
- FSC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Handbook 2020, 2021년 3월 31일 최종 업데이트되었으며 2022년 9월에 재검토됨
- Securities (Amendment) Act 2021
- Financial Crimes Commission Act 2023
- Finance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2024
-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Proliferation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2024
-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Proliferation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2026

1.5 회사 배경

Spec Capitals Ltd는 모리셔스에서 설립되었습니다. **04th 2025년 8월** 주식 유한책임 비공개 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회사는 FSC로부터 다음 라이선스를 발급받았습니다:

- Investment Dealer (Full Service excluding Underwriting) Licence가 발급된 일자: **08th 2025년 8월** Securities Act 2005에 따라
- Global Business Licence가 발급된 일자: **08th 2025년 8월** FSA 2007에 따라

1.6 고객 / 의뢰인

회사는 수시로 개정되는 Business Plan에 따른 Target Markets에 부합하도록 고객을 온보딩합니다. 고객은 개인 또는 법인일 수 있습니다.

1.7 제공 서비스

회사는 Securities Act 2005에 따라 Investment Dealer (Full-Service Dealer excluding Underwriting) Licence 보유자에게 통상적으로 허가되고 수행되는 활동 / 직무를 수행하며, 특히 다음 활동을 수행합니다:

- 고객을 위한 증권 거래의 집행에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 해당 증권을 대중에게 재판매할 의도로 자기계산으로 증권을 거래합니다; 그리고

-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 활동 과정에 부수되는 투자 자문을 제공합니다

FSC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회사는 자신의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는 어떠한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FSC에 사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위에 열거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 활동 및 서비스가 고객 유형,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고객의 사업 부문 및 지리적 위치와 같은 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자금세탁 및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역할과 관계없이 Financial Action Task Force¹ ('FATF')는 회사와 같은 증권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인 위험기반 접근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ML/TF/PF**/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1.8 등록 사무소

회사의 등록 사무소 주소는 C/O Credentia International Management Ltd, The Cyberati Lounge, Ground Floor, The Catalyst, Silicon Avenue, 40 Cybercity, 72201 Ebène, Republic of Mauritius입니다.

1. FATF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조달로부터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독립적인 정부 간 기구입니다. FATF 권고사항은 AML/CFT와 관련한 글로벌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제2절: 회사, 이사회, 경영진 및 직원

회사의 조직도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2.1 회사의 직무 및 의무

- SA 2005 제55조에 따라 회사는 대차대조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보고서를 FSC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의 기업지배구조 정책에 관한 보고서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관련 정보;
 - Financial Reporting Act 및 모리셔스의 기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형식과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감사된 재무제표; 그리고
 - FSC가 발행한 기타 규칙에 따라 명시될 수 있는 요건

SA 2005 제55조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최대 MUR 50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위반행위입니다.

- 증권 거래 확인과 관련된 SA 2005 제56조에 따라 회사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 회사가 고객의 증권 거래 주문을 집행하는 경우, FSC Rules에 명시된 형식으로 지체 없이 고객에게 확인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 회사는 FSC Rules에 명시된 형식과 기간에 따라 각 고객에게 계좌 명세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 회사는 해당 증권거래소의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거나 거래되는 증권을 자기계산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증권과 관련하여 회사가 고객과 자기계산으로 거래하는 경우, 회사는 거래를 체결하기 전에 자기계산으로 거래를 체결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공개해야 한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SA 2005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며, 최대 MUR 10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회사가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특히 다음 세부사항을 보관해야 한다:
 - 자문이 제공될 증권에 관한 세부사항;
 - 자문이 구속력을 가지는지 또는 구속력이 없는지 여부; 그리고
 - 자문이 제공될 수단.
- 회사가 고객을 위한 증권거래의 집행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접수한 때부터 주문 집행을 최종 완료할 때까지 회사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관련된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상세한 흐름도를 포함)을 작성하고 기록의 일부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해당 활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관해야 한다:
 - 고객의 온보딩 및 위험 프로파일링에 관한 절차.
 - 사용할 거래 플랫폼에 관한 세부사항;
 - 절차 및 거래 흐름.
 - 거래의 집행;
 - 고객에 대한 거래 확인에 관한 세부사항; 그리고

- 고객 활동의 모니터링에 관한 세부사항.
- 거래 플랫폼과 관련하여(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다음 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관해야 한다:
 - 사용할 플랫폼에 관한 세부사항;
 - 플랫폼이 규제되었는지 또는 규제된 거래소와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할 것;
 - 플랫폼의 운영 방식에 관한 세부사항;
 -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자와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에 관한 세부사항;
 - 플랫폼에 접근하는 수단에 관한 세부사항; 그리고
 - 신청인이 다른 기관의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을 표시하고 보관할 것:
 - a. 플랫폼 제공자가 규제 대상 기관인지 여부 및 그러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보관할 것;
 - b. 회사와 플랫폼 제공자 간에 체결될 계약서 초안;
 - c. 플랫폼 제공자의 회사 프로필.
- 거래의 집행을 제3자가 수행하는 경우, 회사는 그 과정에서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고객에게 계약명세서를 발행하고 거래를 모니터링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서화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모니터링 절차에 대한 설명; 그리고
 - 회사와 제3자 간의 계약서 사본.
- 회사는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활동을 장래에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인력, 내부 구조, 기술적·재정적 수단 및 인프라와 관련하여 충분한 자원을 유지해야 한다.
- 회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이 적격하고 적절하며,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Regulator로부터 정식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회사는 Mauritius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록과 장부를 유지해야 한다.
- 회사는 이해상충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성 있고 합리적인 서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회사는 Securities (Licensing) Rules 2007에 따른 의무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다른 Group 구성원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여 활동을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내부자 정보의 사용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Privacy Policy & Internal Privacy Controls를 참조할 것.
- 회사의 시스템 및 절차는 고객 포트폴리오에 관한 투자 결정이 권한 없는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제공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및 절차는 비공개 정보가 엄격히 통제되고 권한 없는 당사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Privacy Policy & Internal Privacy Controls를 참조할 것.
- 회사는 모든 합리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투자 거래가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위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 거래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
- 회사는 본 AML/CFT/CPF Compliance Manual을 통해 상세한 AML/CFT/CPF 절차와 프로세스를 수립했으며, 이는 Securities (Licensing) Rules 2007에 따른 의무를 충족한다.

2.2 이사회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

회사는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사회(‘이사회’ 또는 ‘BoD’)에 의해 관리된다. 이사회는 Mauritius에 거주하는 이사를 최소 2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회사는 이사회의 구성 및 자격과 관련하여 Companies Act 2001의

section 133(“CA 2001”) 및 Financial Services Act의 section 24(“FSA 2007”) 요건을 항상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는 CA 2001의 section 143에 항상 규정된 의무와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AML/CFT/CPF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책임을 진다:

- (a) AML/CFT/CPF Framework 및 최소 기준의 수립에 대한 책임과 감독을 유지할 것.
- (b) 위험 평가, 완화 및 프로파일링, CDD, 기록 보관, 지속적인 실사,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 및 테러리즘/확산의 자금조달 방지에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 내 AML/CFT/CPF 조치에 관한 정책을 승인할 것.
- (c) 회사의 서비스, 기술 및 Money Laundering, Terrorist Financing 및 Proliferation Financing(“의동향과 변화 및 발전에 따라 AML/CFT/CPF Framework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도록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 ML/TF/PF”);
- (d) AML/CFT/CPF를 위한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수립하고 회사가 수행하는 전반적인 AML/CFT/CPF 조치에 대해 충분한 감독을 유지할 것.
- (e) AML/CFT/CPF 조치를 이행하는 권한과 책임의 체계를 정하고, 정책 및 절차를 이행하는 자와 통제를 집행하는 자 사이에 직위가 분리되도록 할 것;
- (f) 예방을 위해 이행된 통제의 견고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고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보장할 것 ML/TF/PF;
- (g) 회사의 운영 성격, 사업 규모, 사업 운영 및 구조의 복잡성,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위험 프로파일 및 지리적 범위를 반영하는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수립할 것; 그리고
- (h) MLRO와 Deputy MLRO(“DMLRO”)를 선임한다. DMLRO는 MLRO의 부재 시 MLRO의 업무를 수행하며 AML/CFT/CPF와 관련하여 MLRO와 유사한 지위, 의무, 책임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Compliance Officer(“CO”)를 선임한다.
- (i) Management / (D)MLRO / 외부 컴플라이언스 감사인의 정기적인 보고 및 업데이트를 통해 승인된 AML/CFT/CPF Framework의 이행을 평가한다.

또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책임을 진다:

- (a) 자신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채용한다.
- (b) 적절한 직원 평가 시스템을 수립하여 모든 직원의 청렴성을 보장한다.

2.3 MANAGEMENT COMPANY의 의무 및 책임

Financial Services Act 2007(“FSA”) 제71(3)(a)(iii)조에 따라, 회사는 Management Company, 즉 **Credentia International Management Ltd (“CREDENTIA” 또는 “the Management Company”** (이하 ‘Management Company’)에 의해 관리되며, 해당 회사 역시 FSC의 허가를 받고 규제를 받는다. 이사회의 책임은 회사의 모든 컴플라이언스 기능에 대해 계속 유지되지만, 회사는 일부 역할과 의무를 CREDENTIA에 위임하였다. 이러한 일부 기능의 위임은 회사와 Management Company 간에 체결된 Service Level Agreement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Service Level Agreement를 참조한다.

회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Management Company의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법적 요건의 준수는 계약상 합의 또는 규정에 따라 Management Company가 수행하며, Management Company는 회사에 적절한 자금세탁방지 절차도 시행한다.

이사회는 지정되고 선임된 Officers 및/또는 그 직원(해당하는 경우)이 ‘fit and proper’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Management Company가 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신규 후보자에 대해 선임 전에 심사를 실시하고, 아래 제2.9절에 설명된 바와 같이 기존 Officers 및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실사 점검을 수행하도록 한다.

2.4 INVESTMENT DEALER TEAM의 의무 및 책임

회사는 Investment Dealer Licence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Investment Dealer Team의 역량은 회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팀 구성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그들이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기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상태를 보장해야 한다.

회사는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Investment Dealer Team에 최소 2명의 구성원이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규제를 받거나 규제기관의 허가를 보유한 자일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investment dealer team의 구성원은 SA 2005 및 Securities (Licensing) Rules 2007에 따라 요구되는 관련 경험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investment dealer services 제공에 있어 입증된 실적을 보여야 한다.

Investment Dealer Team의 의무와 책임은 Appendix 4에 따른다.

2.5 MONEY LAUNDERING REPORTING OFFICER(“MLRO”) 및 DEPUTY MLRO의 의무와 책임

MLRO / DMLRO는 거래를 처리하는 사람이 알게 된 정보 또는 기타 사항 중, 해당인의 의견에 따라 다른 사람이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정보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한 내부 보고를 받아야 하는 Officers이다.

회사는 FSC의 정식 승인을 받은 Management Company의 Senior Officers를 각각 MLRO 및 DMLRO로 지정하였다.

MLRO / DMLRO는 FIU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내부 보고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MLRO 및 DMLRO의 의무와 책임은 Appendix 2에 따른다.

각 이사회 회의에서, 단 최소 연 1회, MLRO / DMLRO는 해당되는 경우 내부 AML/CFT/CPF 정책 및 절차와 AML/CFT/CPF 법률, 규정집 및 모범 관행 기준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회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6 COMPLIANCE OFFICER의 의무와 책임

Compliance Officer(‘CO’)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내부 프로그램, 통제 및 절차와 법률 및 규정의 요건을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회사는 FSC의 정식 승인을 받은 Management Company의 Senior Officer를 CO로 지정하였다.

Compliance Officer의 의무와 책임은 Appendix 3에 따른다.

각 이사회 회의에서, 단 최소 연 1회, CO는 해당되는 경우 내부 AML/CFT/CPF 정책 및 절차와 AML/CFT/CPF 법률, 규정집 및 모범 관행 기준의 중대한 위반 사항도 회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7 모든 직원 및 지정된 Officers의 의무와 책임

- 회사의 모든 Officers, 직원 및 회사의 관리를 위해 배정된 Management Company의 직원은 본 AML/CFT/CPF Compliance Manual과 회사에 적용되는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Officers / 직원의 비위행위로 간주하며 Management Company에 보고하고, Management Company는 아래 제2.11절에 규정된 Disciplinary Measures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한다.
- 또한 이들은 회사의 설립 문서를 준수하고, SA 2005, The Securities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and Closed-end Funds) Regulations 2008 및 회사를 규율하는 AML / CFT/ CPF 정책, 절차, 규칙, 규정 및 법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규칙, 규정 및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직원, Officers 및 directors의 비위행위로 간주하며, 회사는 Section 2.11의 Disciplinary Measures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한다.
- 이들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Company의 입장과 의심스러운 사례를 보고할 책임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Company 내부에서 관찰된 불법 또는 부정직한 활동이 의심되는 경우의 내부고발도 포함된다. 내부고발자는 해당 활동을 조사하거나 책임 소재 또는 시정 조치를 결정할 책임이 없다. Director(s)/Compliance Officer/MLRO/DMLRO는 해당 상황을 통보받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이들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조기 발견과 방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원으로서 경계심을 실천하여야 한다.
- 이들은 의심스러운 활동/거래를 즉시 MLRO / DMLRO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들은 Compliance Officer / MLRO / DMLRO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관련 정보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8 임원 선임 및 변경

임원(Officer)이란 이사회 구성원, Chief Executive, Managing Director, Chief Financial Officer 또는 Chief Financial Controller, Manager, MLRO/DMLRO, CO, Company Secretary, Partner, Trustee, Head of Dealing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Investment Dealer Team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Company는 이와 관련하여 FSC Guide to Fitness and Propriety 및 FSA 2007 제2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Company의 모든 임원은 적격하고 적절한 자이어야 하며, 주요 인력의 선임/변경은 FSC의 승인을 받거나 FSC에 통지되어야 한다.

Company는 Management Company를 통하여 어떠한 임원이든 선임하기 전에 FS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신청서는 선임될 자의 정식으로 서명된 Personal Questionnaire (PQ) Form을 포함한 전체 인적사항과 함께 FSC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Company는 임원의 사임 또는 해임 및 그러한 사임 또는 해임 요청을 둘러싼 상황을 FSC에 알려야 한다.

2.9 직원 심사 절차

FIAML Regulations 2018 규정 22(1)(b)에 따라 Company는 직원을 채용할 때 높은 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Company는 다음 절차를 채택하였다:

- 직원의 고용 이력, 자격 및 전문직 단체 회원 자격을 확보하고 확인하는 것.
- 적절한 추천서를 확보하고 확인하는 것.

- 예비 직원에 대하여 규제기관 또는 전문직 단체가 취한 규제 조치 또는 조치의 세부사항을 확보하고 확인하는 것;
- 형사 유죄 판결의 세부사항에 관한 확인을 확보하는 것.
- 선발 단계에서 직원을 심사하는 것. 여기에는 다음에 대한 확인이 포함된다 United Nations (Financial Prohibitions, Arms Embargo and Travel Ban) Sanctions Act 2019 (“UNSA 2019”)에 따른 지정 또는 등재 당사자의 UN 및 National Sanctions List.

직원 심사는 Company에 의해 개시되어야 한다. Company는 심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심사 소프트웨어인 Dilisense가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및 국내 List of Targeted Financial Sanctions에 대한 검색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10 AML/CFT/CPF 교육 및 기타 관련 교육

Company는 ML/TF/PF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사, 임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 ML/TF/PF와 연계될 수 있는 거래 및 행위를 인식하도록 지원하는 것
- ML/TF/PF와의 연계가 확인된 경우 따라야 할 절차를 교육하는 것.

Company는 지정된 CO/MLRO/DMLRO가 FSC가 2014년 10월에 발행한 Competency Standards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매년 최소 10시간의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AML/CFT/CPF 보수 교육 과정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에는 Investment Dealer Team의 역할과 관련된 전용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Compliance Officer는 Training log (Appendix 8 참조)를 유지하여야 하며, Company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CREDITIA의 모든 principals 및 officers가 이수한 모든 내부 및 외부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2.11 징계 조치

이 Manual의 위반은 중대한 것으로 간주된다. Company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Company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배정된 Management Company의 직원이 행한 위반 또는 비행은 이사회에 회부되어야 하며, 이사회는 각 상황에 적용할 징계 조치를 결정한다. 적용되는 징계 조치 및 제재는 위반 또는 비행의 중대성에 상응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특히 Workers’ Rights Act 2019에 규정된 바에 따른 고용 Agreement의 종료 및/또는 법적 조치가 해당되는 경우 포함된다.

제3절: 일반 정책 및 절차

3.1 기록 보관

3.1.1 목적 및 범위

기록 보관에 관한 본 정책(이하 “Policy”)의 목적은 Company가 적용 가능한 법률(아래 3.1.2 참조)에 따라 장부 및 기록을 분류하고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시행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

기록 보관의 목적은 Company가 언제든지 또는 FSC, FIU, Law Enforcement Agencies, Courts, Auditors/Examiners 또는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Customers 및 이들의 거래 세부사항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FIAMLA 2002 제17(b)조에 따라 Company는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FIU는 이를 매우 중대하게 간주하며 규제상 및/또는 형사상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

본 Policy는 Company가 유지하여야 하는 장부 및 기록의 유형, Company가 그러한 장부 및 기록을 분류하고 유지하는 방법 및 그 유지 책임자를 규정한다. 모든 기록은 관련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또는 지속적인 business relationship의 경우 해당 business relationship이 종료된 후 최소 7년 동안, 요청 시 즉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3.1.2 기록 보관에 관한 법적 요건

Company는 다음에 따라 회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 CA 2001 제190(2)조
- > FSA 2007 Part V(licensees의 지속적인 의무) 제29조
- > FSA 2007 제71(4)(b)(iii)조
- > FIAMLA 2002 제17F조
- > FIAML Regulations 2018 규정 14
- > FSC Handbook 제11장; 및
- > 해당되는 기타 Acts 및/또는 Regulations

회사는 기록 보관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모든 측면에서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3.1.3 일반 기록 보관 정책

[=의 권고사항 11](#) FAFT는 금융기관이 사업관계의 존속 기간 중뿐만 아니라 사업관계 종료 후에도 거래 기록이 유지되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 절차 및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리셔스에서는 모든 CDD 조치를 통해 취득한 기록, 거래 기록(국내 또는 국제 거래) 및 의심거래보고서 사본을 최소 7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사항이 [FSC Handbook](#) 제11장 및 [Section 190 of the Companies Act](#)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록 보관은 회사가 규제상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기능하며, 요청에 따라 [AML and CFT](#) 체계에 따라 법 집행기관이 금융조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므로 그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회사의 기록은 등록 사무소 주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따라서 기록 보관 정책을 상세히 규정한 내부 절차 매뉴얼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항상 진실하고 정확하며 최신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FSC 및 기타 정부 당국에 의한 장부와 기록의 예고 없는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위조, 허위 작성, 변조, 말소하거나 보존기간 전에 폐기하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직원은 형사처벌, 규제상 제재 및/또는 고용 종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1.4 기록 보관에 대한 책임

회사의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Management Company는 회사의 장부 및 기록 정책과 기록 보관 요건의 이행 및 모니터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집니다. Management Company는 규제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록이 저장된 매체 및 형식으로 기록 사본과 그러한 기록의 출력물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기록에 접근하고 이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합니다.

3.1.5 기록의 형식 및 검색

회사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장부와 기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으로 이를 체계화한 문서 보관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와 사업 기록 보관 절차를 고려하여 회사는 아래 열거된 형식 중 하나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원본 서면 문서
- 스캔 형식 - 확인 자료를 스캔하여 전자적으로 보관
- 원본 서면 문서의 인증된 진정 사본을 서면 또는 전자 형식으로 보관
- 전자 확인 점검 결과의 전자 사본 또는 서면 사본 보관
- 보관된 자료의 기록 참조 세부사항

회사가 기록을 보관하기로 선택한 형식과 관계없이, 서신 기록은 언제든지 거래를 쉽게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해야 합니다. 인증 세부사항은 Section 5.12를 참조하십시오.

3.1.6 기록 보존

모든 문서는 고객/사업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소 7년 동안 기록으로 보존됩니다.

이와 관련한 절차는 회사가 채택한 내부 절차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자기록 보존

기록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회사는 모든 문서가 완전하고 판독 가능하며, 부당한 지연 없이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문서 보관 시스템에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기록은 접근 통제, 사용자 인증, 적절한 경우의 암호화 및 정기적인 시스템 모니터링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적절한 IT 보안 조치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보안 위치에 주기적으로 백업을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백업 및 재해복구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기록은 Microsoft SharePoint 및 해당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CRM platform)과 같은 승인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 시스템 보안 및 백업 프로토콜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은 회사의 Cybersecurity & IT Policy and Procedure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물리적 기록 보존

기록을 물리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무단 접근, 분실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록을 접근이 제한된 구역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물리적 파일은 The Cyberati Lounge, The Catalyst, Silicon Avenue 40 Cybercity, 72201, Ebene Republic of Mauritius에 위치한 회사의 등록 사무소에 보관됩니다.

물리적 기록에 대한 접근은 승인된 직원으로만 제한되어야 하며,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동식 서류 보관 캐비닛은 Office Administration Assistant 또는 Administration Department의 대표자가 감독하는 가운데 최소 연 1회 정리해야 합니다.

> 언어 및 번역 요건

기록이 공식 언어(English & French)가 아닌 언어로 접수된 경우, 회사는 해당 문서가 English 또는 French 중 하나로 적절하게 번역되었고 번역자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자격과 적합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한 증거는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3.1.7 기타 로그 및 등록부

회사는 투자 거래 업무와 관련된 진실하고 정확하며 최신의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FSC Handbook 제11장 및 FIAMLA 제17F조에 명시된 기록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MC는 일반적으로 ‘Log and Register’ 범주에 해당하는 필수 보존/보장 기간에 따라 해당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등록부는 회사의 Registered Office에 보관됩니다.

- 교육 등록부
- PEP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PEP 등록부(해당하는 경우)
- STR Log (Internal & External)
- False Positive 및 Positive Matches 목록
- 거부된 고객 목록
- 내부 민원 등록부
- 외부 민원 등록부
- 위반 보고 등록부
- 이해상충 등록부
- 서비스 제공자/제3자 목록
- 특수 사례 로그 또는 예외 보고서
- 거래 모니터링 시트
- UN Sanctions Act 2019 제25(2)조에 따른 Positive Name Matches 보고 로그
- UN Sanctions Act 2019 제23(4)조에 따른 NSSEC, FIU 및 FSC에 대한 통지 로그

3.2 연례 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3.2.1 법정 신고 및 준법 보고서

회사의 관리회사는 회사등록관(‘ROC’) 및 FSC와 같은 각 관계 당국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규정 준수 목적으로 영수증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회사는 다음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 CA 2001 제210조,
- FSA 2007 제30조,
- Securities (Amendment) Act 2021 및
- Financial Reporting Act 2004에 따라 발행된 회계기준 및/또는 제정된 규정.

FSC가 2018년 2월 28일 발행한 Circular Letter CL280218에 따라, 회사는 Corporate Governance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AFS')와 함께 각 대차대조표일 종료 후 90일 이내에 FSC에 제출되어야 한다.

회사의 회계사/재무감사인은 CA 2001 제195조에 따라 회사의 각 연례회의에서 승인된다.

회사의 관리회사는 회사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문서 제출 및 법정 수수료와 비용의 납부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 SA 2005 제55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
- FSA 2007 및 CA2001에 따라 회사의 GBC Licence와 관련된 연간 FSC 라이선스 수수료 및 ROC 연회비를 납부하는 것
- CA 2001 및 FSA 2007에 따라 회사의 이사 선임 및 변경 사항을 제출하는 것
- CA 2001 및 FSA 2007에 따라 회사의 자본구조 변경 사항(해당하는 경우)을 제출하는 것
- Income Tax Act 1995 제116조에 따라 회사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
- 필요한 경우 CA2001에 따라 회사의 담보권을 제출하는 것
- 필요한 경우 Mauritius Income Tax Act에 따라 US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및/또는 OECD Common Reporting Standard('FATCA/CRS')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것
- 2018년 1월 15일 발효된 Data Protection Act 2017에 따른 등록 및 의무

회사의 관리회사가 회사가 상기 요건을 항상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Compliance Officer도 Compliance Report에 그러한 불이행을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지속적으로 준수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이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후 Compliance Officer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내린 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보고서와 결정 및/또는 취해진 조치는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 회의에서 제출되어야 한다.

3.2.2 우수 기업지배구조 조치

회사는 높은 수준의 Corporate Governance를 준수하고, FSC가 2018년 2월 28일 발행한 Circular Letter CL280218에 따라 National Code of Corporate Governance에 명시된 원칙의 준수 여부를 보고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GBC Licence의 Condition 5는 회사가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적절한 corporate governance measures를 고안하고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수시로 검토하고 재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Corporate Governance Policy가 사용된다. 해당 정책에 포함된 조치는 우선 적용되며 수시로 평가 및 재평가되어야 한다.

3.3 고객 지급 지침

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객의 투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검토, 감독, 재조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회사와 개별 고객 간에 체결된 Client Agreement의 범위 내에서 투자 목적으로 은행/금융기관을 통해 보유한 고객 계좌로 자금을 입금 및/또는 출금하기 위한 모든 지침은 Administrator가 Investment Dealer Team과 협력하여 처리한다.

현금 금지 정책

회사는 (AML/CFT/CPF) 기준을 준수하고 규제 준수에 대한 의지를 이행하기 위하여 ATM 현금 예금 및 수표 예금을 포함한 현금 예금에 대해 엄격한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3.4 고객 지시

회사는 회사와 고객 간에 체결된 Client Agreement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회사는 허가받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의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 접근 권한을 유지한다.

- 고객은 다음으로 인해 회사 또는 회사의 이사, 임원 및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이 지급했거나 부담했거나 입은 모든 손실에 대하여 회사를 면책하여야 한다;
 - (i) 체결된 서비스 계약에 따른 회사의 이행, 또는
 - (ii) 고객, 고객의 Custodian, 고객의 Administrator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의 대리인이 회사에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 지침 및 정보를 실행하거나 이에 의존하는 행위. 다만, 그러한 손실이 회사 또는 회사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이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범한 과실, 고의적 불이행 또는 사기로부터 직접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 구두 지시를 서면 확인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과 관계없이,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이다. 즉, FIAMLR 2018 및 FSC Handbook에 따라 언제든지 요구되는 거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도록 해당 지시의 신뢰할 수 있는 기록/증거를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면책 보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5 고객 및 법인 은행 계좌의 조정을 통한 거래 모니터링

회사는 모리셔스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모리셔스에 보유한 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거주 이사들에게 조회 권한이 부여되었다. United Arab Emirates에 보유한 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Investment Dealer Team 및 Foreign Signatories에게 접근 권한이 부여되었다. Operations Team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관리회사와 공유한다. Appendix 17 – Transaction Monitoring을 참조한다.

이 조정 작업의 통상적인 주기는 2주마다이지만, 관리 대상 고객의 요청에 따라 또는 필요에 따라 그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3.5.1 국내 은행

수령한 모든 지급 지침(예금 및/또는 인출)에 대하여 은행은 증빙서류를 요청하기 위해 관리회사와 협의한다.

충분한 검증 및 실사를 완료한 후 거래를 처리한다.

3.5.2 외국 은행

거래 모니터링은 거래량에 따라 2주마다 수행된다.

투자자/거래자/고객이 해당되는 경우 국내/외 은행 또는 지급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하는 모든 입금 또는 출금에 대해서는 투자중개업자의 운영팀/거래팀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그 후 거래량에 따라 관리자/컴플라이언스 분석가/운용회사는 2차 검증을 위해 일일, 주간 또는 월간 기준으로 거래 보고서를 요청한다.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지속적인 고객 파일 검토 및 고객 확인 절차의 일환으로 위험도에 기반하여 모니터링되고 조정된 거래를 검증해야 한다. MLRO는 또한 분기별 방문 시 분기별 거래 및 조정 보고서를 확인하고, 매년 회사 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3.6 시스템 백업, 업무 연속성 및 재해 복구 계획

회사의 정책은 모든 파일을 전자 사본으로 백업하는 것이며, 기술적 장애 발생 시 정보가 손실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시스템 백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백업은 기록 보관 정책을 상세히 규정한 회사의 내부 절차 매뉴얼 및 회사가 채택한 정보기술 및 보안 매뉴얼의 적용을 받는다.

회사는 업무 연속성 및 재해 복구 계획(BCDRP)을 채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 연속성 및 재해 복구 계획도 참조한다.

BCDRP의 주요 목적은 중대한 업무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중단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재개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BCDRP는 회사의 업무 구조에 맞게 조정되었다.

투자중개업자 라이선스 보유자는 전체 업무 구조가 거래 플랫폼, 온라인 온보딩 및 거래 실행에 의존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권고된다:

1. 비상 계획 - 재해 복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비상 상황에서 회사의 주요 문서, 기록 및 장비를 검색할 수 있는 대응 및 복구 전략을 포함하는 계획.
2. IT 정책, IT 침투 테스트 및 IT 감사 - 회사는 또한 정기적으로(매년) IT 감사를 실시하고 식별된 취약점을 해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IT 침투 테스트는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거나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백업 주기에 관한 세부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상기 내용을 토대로 BCDRP를 완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정보기술 및 보안 매뉴얼이 수립되었다. BCDRP는 매년 검토되고 문서화된다.

IT 감사는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재무제표 감사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감사에는 계획 수립, 통제 테스트, 실증 테스트 및 감사 완료/보고의 네 가지 주요 단계가 있다. 회계연도 말 감사 중 감사인은 통상적으로 IT 감사를 수행한다. 회사는 별도로 독립적인 IT 감사를 실시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절차 종료 시 전체 보고서를 제공받게 된다.

IT 감사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데이터 백업 및 보관 절차
2. 업무 연속성 계획
3. 재해 복구 계획
4. 사용자 승인 정책
5. 비밀번호 정책
6. 이메일 정책

7. 인터넷 사용 정책
8. 소셜 미디어 사용 정책
9. 자산 관리 정책
10. MetaQuotes

한편, 고객은 신뢰도 높은 금융시장용 최신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평판이 높은 공급업체인 MetaQuotes도 사용한다. MetaQuotes의 핵심 업무는 자동화된 온라인 중개 서비스 및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위한 전문적이고 고품질인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개발 및 구현이다.

MetaQuotes는 앱을 통한 이미지, 동영상 및 다양한 문서 유형을 포함한 기밀 데이터의 안전한 교환을 보장하기 위해 높은 보안 요건을 준수한다. 전송되는 모든 정보가 안전하게 암호화되므로 이 소프트웨어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이 IT 감사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보안성을 인증하기 위한 프로필/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다.

3.7 윤리 강령

회사는 회사의 행동 및 윤리 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가 부과하는 기타 의무 및 책임에 더하여, 회사는 모든 이사회 구성원,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원 및 직원이 다음 원칙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

- a. 대중, 고객, 잠재 고객, 고용주, 동료 직원 및 기타 사업 참여자에 대해 성실성, 전문성, 근면성 및 존중을 바탕으로 윤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
- b. 회사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하고 거래 고객의 거래, 예금 및 모니터링에 관한 요청이 현행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한다;
- c. 고객이 회사와 맺은 관계의 범위 내에서 전달한 모든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한다. 단, 법률에 따라 회사가 고객의 의심되는 불법 활동을 관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d. 독립성, 객관성 또는 고객에 대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사업 관계에 참여하거나 선물을 받는 것을 거부한다;
- e. 직업적 활동에 관여할 때 충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독립적인 전문적 판단을 행사한다;
- f. 직원 및 해당 직업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하도록 장려한다;
- g.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증진하고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규칙을 준수한다;
- h. 자신의 전문 역량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며 다른 투자 전문가의 역량도 유지하고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 i. 항상 전문적이고 사업가다운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리고
- j. 회사가 채택한 정책, 절차 및 프로세스가 항상 준수되도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시행한다.

위반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우선 해당 위반의 중대성을 조사하고 다음의 조치/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 징계위원회 및/또는 인사위원회
- 직무 재배정
- 경고장 발부
- 특정 접근 권한 제거

- 정직
- 고용 종료

참고: 제재 결정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언을 기록하는 것도 의무이다.

3.8 보험 정책

투자중개업자 라이선스에 적용되는 FSC의 라이선스 기준에 따라 규정된 건전성 및 보호 요건에 의거하여, 회사는 무엇보다도 다음 위험에 대비한 전문직업인 배상책임 보장(‘보험 보장’)에 가입해야 한다:

- 직원의 사기 행위.
- 사기성 지시.
- 전자 데이터 또는 전자 거래의 악의적 또는 사기성 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 전문적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적 책임.

회사는 유효한 보험 보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라이선스 요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적시에 해당 보장을 갱신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9 최소 자본

Investment Dealer (Full Service excluding Underwriting) Licence에 따라, Securities (Licensing) Rule 2007의 Fourth Schedule (Rule 14)에 정의된 회사의 최소 명시 무손상 자본은 MUR1 million(기타 법정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무손상 명시 자본은 전액 납입되어야 하며, 어느 시점에도 미지급 또는 지급 예정인 금액이 없어야 한다.

회사의 최소 명시 무손상 자본이 요구 금액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FSC에 통지하고 요구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3.10 광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광고, 판매 문서 또는 서신을 발행하거나 이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명칭 또는 사업이 이와 관련하여 사용되도록 고의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진실하지 않은 진술 또는 중요한 사실의 누락을 포함하거나, 그 밖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 정당화되지 않은 구체적 결과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는 경우.
- 대표성이 없는 통계를 사용하여 부당하거나 과장된 결론을 제시하거나,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때 적용한 중요한 가정을 밝히지 않는 경우.
- 그러한 것으로 명확히 식별되지 않은 미래 사건에 관한 의견 또는 예측을 포함하는 경우.
-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공정하게 제시하지 않는 경우.
- 공익에 해로운 경우.
- 회사가 발행하고자 하는 모든 광고 또는 판매 문서의 사본은 발행 전에 FSC에 제출되어야 한다.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FSC Guidelines for Advertising and Marketing of Financial Products를 준수하고, 요구되는 경우 FS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 데이터 보호

회사는 Data Protection Act 2017 및 이에 따라 제정된 Regulations를 포함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Data Protection (Fees) Regulations 2020에 따라 Data Protection Office에 Data Controller 및 Processor로 등록하였으며, 이는 2020년 7월 20일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er가 공표한 Communique to the Public을 참조한다.

회사는 Management Company의 직원인 지정 Data Protection Officer('DPO')를 선임하고 CREDITIA의 Data Protection Framework를 채택한다.

Privacy Policy & Internal Privacy Controls(아래 3.11.1 참조)는 Mauritius Data Protection Act 2017에 따른 포괄적인 Data Protection Framework를 포함한다.

3.11.1 사무실 보안, 비밀유지 및 문서 열람

방문객의 회사 출입은 CREDITIA가 주 출입구에서 엄격히 통제하며, CREDITIA는 회사에 자체 사무실 보안 규칙을 적용한다.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회사의 업무 또는 고객의 업무에 관한 문서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회사의 모든 임원과 회사를 담당하는 CREDITIA의 직원은 회사 및 고객과 관련된 모든 업무 사항이 전문적이고 신중하게 취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모든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문서화된 Privacy Policy & Internal Privacy Controls를 마련하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고객 정보 및 기록의 기밀성, 보안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3.12 실질 요건 – 라이선스 기준

회사는 Global Business Licence 보유자가 항상 모리셔스 내에서 또는 모리셔스로부터 핵심 소득 창출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FSA 2007 section 71(3)(a), 회사의 사업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기준 및 Commission이 2018년 10월 12일 발행한 Circular Letter (CL1-121018)에 따라 실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상업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리셔스에서 중재가 이루어지도록 회사의 Constitution에 규정을 두며, 이는 해당 라이선스 기준을 더욱 뒷받침한다.

SECTION 4: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리즘 및 확산금융 방지 자금조달 정책 및 절차('AML/CFT')

회사는 본 매뉴얼을 통해 회사 사업의 성격에 근거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확산금융 ('ML/TF/PF') 방지를 위한 정책, 절차 및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다.

AML/CFT/CPF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함에 있어 회사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용 가능한 법적 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였다:

- Financial Intelligence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02 및 이에 따라 제정된 규정, Financial Intelligence and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18 및 그 개정 내용을 포함
- United Nations (Financial Prohibitions, Arms Embargo and Travel Ban) Sanctions Act 2019 (The “UN Sanctions Act 2019”)
- Prevention of Terrorism Act 2002
- Convention for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Terrorism Act 2003
- Securities Act 2005 및 이에 따라 제정된 규정, The Securities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and Closed-end Funds) Regulations 2008 및 그 개정 내용을 포함
- Anti Money Laundering and Combat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Proliferation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2019
- Anti Money Laundering and Combat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Proliferation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2020
- Financial Crimes Commission Act 2023
- Anti Money Laundering and Combat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Proliferation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2024
- Anti Money Laundering and Combat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Proliferation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2026

또한 회사는 ML/TF/PF 방지와 관련되고 유용한 FATF와 같은 국제기구가 발행한 지침도 따라야 한다.

4.1 자금세탁

일반적으로 자금세탁은 범죄자가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의 실제 출처와 소유권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성공하면 범죄 재산은 범죄성을 상실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범죄자가 자신의 자금 또는 자산을 범죄 행위로 추적당할 우려 없이 범죄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금세탁은 흔히 복잡한 일련의 거래를 수반하며, 전통적으로 세 가지 별도 단계로 구분됩니다.

**자금 배치
(Placement)**

자금 세탁(Lay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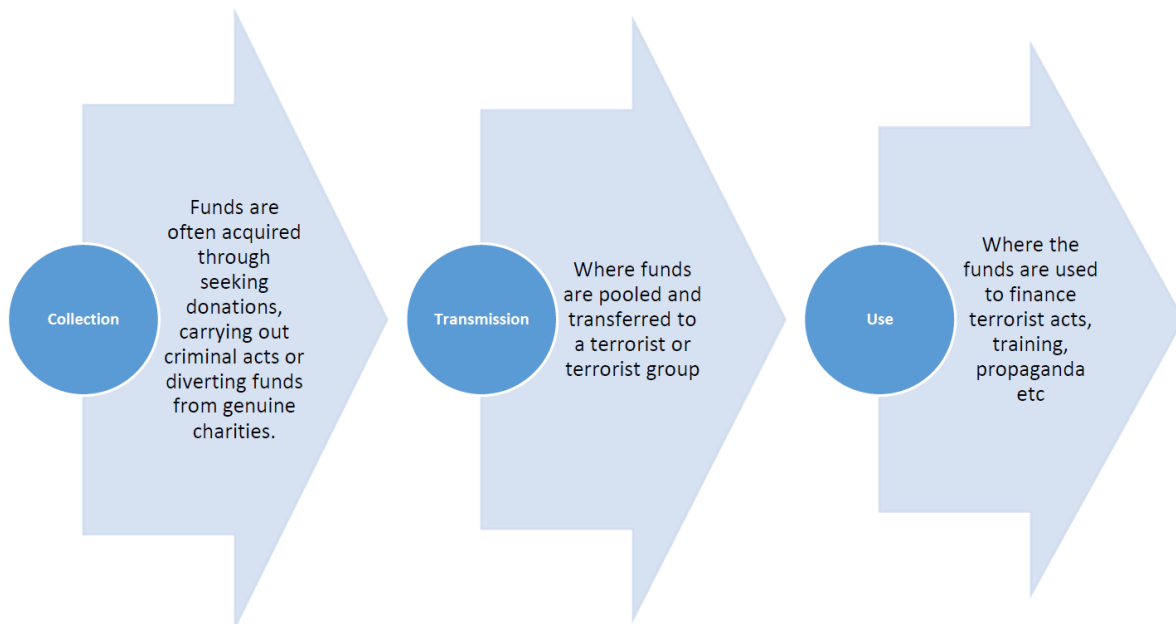
자금 통합(Integration)

범죄수익이 금융 시스템에 유입되는 단계	자금이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되는 단계로, 감사 추적과 자금의 불법적인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다양한 계좌 및/또는 관할권 간에 자금이 이동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제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는 자금이 정상적인 사업 또는 개인 거래로 보이는 목적으로 경제에 재유입되는 단계입니다.
-----------------------	---	---

4.2 테러자금조달

간단히 말해, 테러자금조달은 테러 또는 테러를 조장하거나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자들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테러자금조달은 자금의 출처가 개인의 급여와 같이 합법적일 수도 있고, 불법 복제 DVD 판매, 사기 또는 마약 밀매와 같은 범죄수익처럼 불법적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금세탁과 다릅니다.

테러자금조달은 흔히 복잡한 일련의 거래를 수반하며, 일반적으로 세 가지 별도 단계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아래에 예시된 바와 같이 기부금 모집, 범죄행위 수행 및 진정한 자선단체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이 조달될 수 있습니다.



4.3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핵무기, 생물무기 또는 화학무기와 그 운반체계(예: 장거리 미사일)가 포함된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물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전문지식의 이전 또는 수출을 수반합니다.

WMD 확산 금융은 중요한 요소이며, 국제 범죄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확산 지원 네트워크는 국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와 사업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도덕한 자들은 민감한 물자, 물품, 기술 및 전문지식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취하거나, 외관상 합법적인 전면 조직을 제공하거나, 대표자 또는 중개인으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4.4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 금융 관련 범죄의 요약:

먼저 유의할 점은 특히 US Patriot Act 2001(개정된 법률 포함)과 같은 US AML 법률은 역외적 효력을 가지며, 사업자가 US Dollar로 거래하는 경우 US 규정 및 제재가 적용될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열거된 법률은 현지 AML/CFT/CPF 체계를 구성하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범죄는 FIAMLA 및 FIAML Regulation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의 편의를 위한 비포괄적 범죄 목록입니다.

FCCA 2023의 Section 36 (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는 -

- a)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수익이거나 범죄수익을 나타내는 재산과 관련된 거래에 관여하거나; 또는
- b)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수익이거나 범죄수익을 나타내는 재산을 수령하거나, 소지하거나, 은닉하거나, 위장하거나, 이전하거나, 전환하거나, 처분하거나, 모리셔스에서 반출하거나 모리셔스로 반입하고,

해당 재산이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범죄로부터 파생되었거나 그 범죄로 실현된 것이라고 의심하거나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20 million rupees 이하의 벌금 및 10년 이하의 노역복무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FCC Act 제2조에 따라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 (a) 취득 방법을 불문하고 유형 또는 무형, 유체 또는 무체, 동산 또는 부동산을 불문한 모든 종류의 자산;
- (b)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권리를 증명하는 모든 형태의 법률 문서 또는 증서로서 전자적 또는 디지털 방식의 것을 포함하며, 통화, 은행 신용, 예금 및 기타 금융 자원, 여행자수표, 은행수표, 우편환, 주식, 유가증권, 채권, 어음 및 신용장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소재지를 불문하며, 그 밖에 소지인에게 지급되거나 소지인 지급으로 배서된 양도성 증서 또는 양도될 수 있는 모든 증서;
- (c) 그러한 자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법적 또는 형평법상 이익;
- (d) 모리셔스 또는 그 밖의 지역에서 영업하는 은행의 계좌에 모리셔스 통화 또는 그 밖의 통화로 보유된 모든 잔액;
- (e) 모리셔스 외부의 은행에 어떤 통화로든 보유된 모든 잔액;
- (f) 자동차, 선박, 항공기, 보트, 예술품, 보석, 귀금속 또는 그 밖의 가치 있는 물품;
- (g) 해당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 또는 이익; 그리고 (h) Virtual Asset and Initial Token Offering Services Act 2021에 따른 가상자산 및 가상토큰.

FCCA 2023 제36조 (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은행, 금융기관, 현금거래업자 또는 관련 전문직이나 직업의 종사자가 자신 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범죄를 범하거나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없도록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를 범한 것으로 하며, 유죄판결을 받으면 2천만 루피 이하의 벌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FCCA 2023 제36조 (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Act) 제150조 및 제151조와 제X부 및 범죄인 보호관찰법(Probation of Offenders Act)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죄판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FCCA 2023 제36조 (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법에서 범죄수익이 전부 또는 일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되거나 이를 나타내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한다는 표현에는 그 재산의 진정한 성격, 출처, 소재지, 처분, 이동 또는 소유권이나 그에 관한 권리를 은닉하거나 위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FCCA 2023 제37조 (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Bank of Mauritius Act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을 전제로, 500,000 루피 또는 외화로 환산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 지급을 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자는 범죄를 범한 것으로 하며, 유죄판결을 받으면 2천만 루피 이하의 벌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FCCA 2023 제37조 (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항은 면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FCCA 2023 제37조 (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Act) 제150조 및 제151조와 제X부 및 범죄인 보호관찰법(Probation of Offenders Act)은 제1항에 따른 유죄판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FCCA 2023 제37조 (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절에서 -

“면제 거래”란 다음의 거래를 의미한다 -

- a) Bank of Mauritius와 다른 사람 간의 거래;
- b) 은행과 다른 은행 간의 거래;
- c) 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거래;
- d) 은행 또는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거래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i) 거래 금액이 고객의 적법한 활동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
 - A)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고객이 해당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기존 고객이며; 또한
 - B) 거래가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의 계좌에 대한 예금 또는 그 계좌에서의 인출로 구성되는 경우; 또는
 - ii) 해당되는 경우,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운영책임자가 면제 거래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이 발행한 지침, 명령 또는 규칙에 따라 거래를 직접 승인한 경우; 또는
- e) 규정될 수 있는 그 밖의 사람 간의 거래.

FCCA 2023 제38조 (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수익을 발생시킨 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사람은 자금세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FCCA 2023 제38조 (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수사와 전제범죄에 대한 수사가 동일한 수사기관에 의해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사람은 하나의 기소장 또는 별개의 기소장에 따라 자금세탁 범죄와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수익을 발생시킨 범죄 모두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FCCA 2023 제38조 (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Sub-part에 따른 범죄로 사람을 상대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서, 해당 재산이 전부 또는 일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수익이거나 이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특정 범죄를 명시하지 않고 기소장에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법원은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해당 수익이 전부 또는 일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수익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FCCA 2023 제38조 (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Courts Act 제184(f)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자금세탁 범죄로 기소된 사람의 과거 유죄 판결을 고려하여, 자금세탁 범죄의 대상이 된 수익이 해당 사람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 FIAMLA 제16(3) (A)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보고의 법적 결과

제(1)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하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5 million 루피 이하의 벌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FIAMLA 제17(C) (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고객확인 의무 요건

FIAMLA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지침에 따른 CDD 요건과 관련하여 보고의무자에게 고의로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하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500,000 루피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FIAMLA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보고 및 기록 보관 의무와 정보 공개에 관한 범죄

요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1) 은행, 현금거래업자, 금융기관 또는 관련 전문직이나 직업의 구성원, 또는 그 이사, 직원, 대리인이나 그 밖의 법적 대리인이 고의로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

(a) 다음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i) 요청서에 명시된 날까지 제13(2)조 또는 제13(3)조에 따라 FIU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ii) 제14조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것; 또는

(iii) 제17조부터 제17G조까지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하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 million 루피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b) FIAMLA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이 요구되는 기록, 등록부 또는 문서를 파기하거나 제거하는 경우;

(c) 이 Part에 해당하는 거래가 허위 신원으로 수행되도록 조장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하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one million 루피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는 사람 -

(a)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and Related Matters Act 2003에 따른 요청과 관련하여 중요하거나 중요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문서 또는 자료를 위조, 은닉, 파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그러한 위조, 은닉, 파기 또는 처분을 야기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또는

(b)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수사가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예정임을 알고 있거나 의심하면서, 그 사실 또는 그 밖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and Related Matters Act 2003에 따른 요청의 작성 또는 집행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하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one million 루피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FIAMLA 제19E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정보 제공 의무

제(2)(b)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하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one million 루피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FIAML Regulations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하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one million 루피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5 AML/CFT/CPF 정책 및 절차

4.5.1 위험평가 정책

FATF 권고사항은 AML/CFT/CPF 요건을 규정하여, 기업이 **ML/TF/PF**의 예방 및 탐지에 위험기반 접근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기반 접근법을 적용하면 상응하는 예방 및 완화 조치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을 제공하므로, Company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고객에게 비례적인 통제와 감독을 적용할 수 있다.

FIAMLA 제17조 및 FSC Handbook 제3.2절에 따라 Company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잠재적 고객, 신규 고객 및 기존 고객/파트너/이해관계자, 사업, 제품/서비스 및 시스템이 Company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ML/TF/PF** 위험을 식별, 평가 및 이해한다
- (b) (예정된) 사업관계 및 (예정된) 고객관계를 통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최초 평가를 실시하고, 초래되는 위험 및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c) 적용할 적절한 완화 수준과 유형을 결정하고,
- (d) 위험평가를 문서화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회사는 “체크박스” 방식의 접근을 지양하고 사안별로 위험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회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여 회사에 대한 모든 잠재적 위험을 이해하고 평가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 **ML/TF/PF**. 이사회는 사업위험평가를 주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해당 평가가 최신 상태이고 관련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또한 FSC는 직급의 고하와 관계없이 이사, 임원 및 직원이 금융기관을 ML 및 TF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할 책임을 이해하고 수용하여야 한다고 기대한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모든 직원은 자신이 책임을 지는 영역에서 고객이 초래하는 **ML/TF/PF** 위험을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위험평가 정책의 상세 절차는 부록 5를 참조한다.

4.5.2 위험평가 체계

위험기반 접근법은 관리하여야 하는 위험의 식별 및 평가에서 시작한다. 위험기반 접근법에 따라 회사는 자신이 어떻게 **ML/TF/PF**.

에 관여하거나 이용될 수 있는지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회사는 자신이 직면한 ML/TF/PF**

-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적 단계를 포함하는 위험기반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ML/TF/PF** 로 인해 회사에 초래되는 구체적인 위험과 회사의 사업 중 가장 취약한 영역을 식별한다.
- 해당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것이 회사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한다.
- 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 절차 및 통제의 적용을 통해 식별된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화한다.
- 회사가 완화하지 못한 위험 및 취약성에서 발생하는 잔여위험을 관리한다.
- 회사에 초래되는 위험에 변화가 있어 정책, 절차 및 통제의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위험을 검토하고 모니터링한다.

회사의 위험평가 체계는 사업위험평가와 고객위험평가로 구성된다. 고객위험평가에는 고위험 국가 평가와 식별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되는 통제 및 조치가 포함된다. 회사는 CDD 목적으로 어떠한 관련 AML/CFT/CPF 서비스 제공자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A. 고객 위험 평가

FSC 핸드북 제5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금융기관은 고객을 식별하고, 해당되는 경우 실소유자를 식별한 후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대응에 필수적이다. CDD는 금융기관이 그러한 지식을 확보하는 수단이며 모든 내부 AML/CFT/CPF 시스템의 핵심 요소이다.” 또한 위험기반 접근법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대응하기 위한 FATF 권고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회사는 각 고객의 **ML/TF/PF** 위험에 관한 고객별 위험등급을 산정하기 위해 각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문서화한다. 위험등급 산정은 고객 수락 단계에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계획 또는 고객 프로필에 변경이 있거나 거래 추세에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검토된다. 위험등급(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음)이 설정되면 고객 파일은 부여된 위험등급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거래의 관련 당사자에 대한 스크리닝 빈도는 부여된 위험등급에 따라, 즉 위험기반 접근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특정 고객에 대한 최초 위험평가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확인 대상 식별정보의 범위 및 그에 대한 검증
- 요청하여야 하는 추가 정보; 및
-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범위

회사는 더 높은 **ML/TF/PF** 위험을 가진 것으로 식별되었다고 해서 고객이 자동으로 자금세탁을 하거나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자금을 조달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한다. 마찬가지로 고객을 더 낮은 **ML/TF/PF** 위험을 가진 것으로 식별한다고 해서 해당 고객이 어떠한 위험도 전혀 초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미 있는 위험평가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평가 전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권고된다(회사는 이것이 목표이지만 항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의 비망라적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고객 투자의 규모, 성격 및 복잡성
- 고객/파트너/이해관계자의 성격 및 유형
- 관계의 상업적 근거
- 고객/파트너/이해관계자의 거주지 지리적 위치
- 고객/파트너/이해관계자의 사업상 이해관계 및/또는 자산의 지리적 위치(해당되는 경우)
- 고객과의 사업관계와 관련된 자산/자금의 성격 및 가치
- 고객/파트너의 자금 및 재산의 출처(적절한 경우)
- 소개자의 역할 및 해당 소개자가 규제 대상인지 여부
-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및 관련 위험과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규제 대상인지 여부

위험평가를 완료한 후에도 상황이 불명확한 경우 추가 정보, 증거 또는 설명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위험평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이후 부여된 총 백분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고객/사업관계의 위험 수준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CRA 설문지에서 위험을 산출한 후에는 아래 표를 사용하여 고객 파일/구조의 위험 수준을 분류하여야 한다. 위험 수준은 3개 범주로 분류한다:

위험 수준	위험 등급
낮음	0 - 59
중간	60 - 129
높음*	130 - 205

회사는 위험 평가 분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정당화 내용과 식별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된 완화 조치 및 통제, 그리고 위험 요소 또는 평가의 검토 / 조정 / 재정의와 관련된 모든 결정을 문서화해야 한다. 회사는 고객 또는 고객 범주와 관련된 **ML/TF/PF** 위험을 평가할 때 모든 고객 위험 측면이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포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회사는 Appendix 6B에 따라 고객 위험 평가 설문서('CRA')를 마련하였다. CRA는 회사의 위험 평가 체계의 일부이며, 각 고객에 대해 작성되어야 하는 살아 있는 문서로서 고객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입수될 때마다 재검토 및 검토되어야 한다.

CRA는 다음의 위험 요소를 고려한다:

- 고객 위험 요소
- 상품, 서비스 및 거래 위험 요소

- 국가 및 지역 위험 요소
- 기술 발전 및 제공 채널과 같은 기타 위험 요소

이 절차는 일련의 연속적인 정보 수집 단계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각 단계의 완료 결과는 다음 단계의 범위와 구조를 결정하는 데 반영된다.

모든 CRA는 현행 4안 원칙에 따라 Compliance Officer 또는 MLRO/DMLRO 또는 Management Company의 기타 고위 임원, 즉 Team Leader, Assistant Compliance Manager, Compliance Manager 등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A.1 자동 고위험 등급

정치적 주요인물(PEP) / 전직 PEP / PEP의 가까운 동료 / 가족 구성원 또는 고위험 국가가 사업관계 개시 전 또는 사업관계 중에 식별된 경우, 고객 파일은 **자동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야 한다: **고위험**, FIAML Regulations 2018의 Regulation 12(1) 및 FSC Handbook의 Chapters 5 및 6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EDD) 조치를 적용해야 하며, 사업관계를 계속하거나 개시하기 위해 Senior Management 또는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해당되는 경우).

A.2 CRA 수행 및 위험 기반 모니터링의 빈도

CRA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고 고객의 위험 프로필에 변경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CRA는 특히 다음 빈도에 따라 위험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위험 수준	모니터링	CRA, 파일 검토 및 스크리닝 빈도
낮음	표준 고객확인	36개월
중간	표준 고객확인	24개월
높음	강화된 고객확인 및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	12개월
• 고객의 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시점 •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하면 위험 등급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 즉 위험 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 등급 변경은 Compliance Officer와 협의한 후 지정된 Compliance Officer 또는 MLRO/DMLRO 또는 Compliance 부서의 Senior Member가 승인해야 한다.

각 고객 파일에는 고객과 관련된 문서 및 기록의 일부로서 적절히 작성 및 서명된 개별 설문서가 보관되어야 한다. 획득된 등급은 아래에 정의된 회사의 사업 위험을 평가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회사의 고객에는 잠재 고객, 회사의 기존 고객 및 그들의 모든 주요 관계자가 포함되지만, 컨설턴트, 고객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자, 자회사, 관계회사, 투자 대상 회사 또는 합작투자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회사, 수익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B. 사업 위험 평가

회사는 Appendix 6A에 따라 사업 위험 평가 설문서(‘BRA’)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회사의 위험 평가 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BRA는 회사가 평가를 수행하고 회사의 사업, 서비스 및 관계가 **ML/TF/PF**에 노출될 수 있는 정도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사업 위험 평가는 회사의 정책, 절차 및 통제가 비례적이고 적절하게 목표화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BRA는 회사가 위험 평가와 완화 요소 및 식별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된 통제를 기록하고 문서화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된다. BRA는 해당 파일을 담당하는 Compliance Analyst가 작성하고 회사의 Compliance Officer가 검토 및 승인한다. 이후 이사회 결의서 또는 Board 회의에서의 의결을 통해 Board of Directors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다.

BRA는 모든 관련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ML/TF/PF”) 위험이 적절하게 식별, 평가 및 문서화 되도록 Management, Compliance Function 및 Risk Management Function이 참여하는 협업 절차를 통해 작성되어야 한다.

BRA의 작성, 품질 및 실행에 대한 주된 책임은 제1선 방어선, 즉 사업 및 운영 기능에 있다. 이는 해당 기능이 회사의 상품, 서비스, 고객, 제공 채널 및 지리적 노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Compliance Function은 BRA 절차를 감독하고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경우 지침을 제공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평가 절차를 지원하며, 평가 방법론, 가정 및 결과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테스트해야 한다. Risk Management Function은 독립적인 위험 감독을 제공하고 해당되는 경우 BRA가 회사의 전사적 위험 관리 체계와 일관되도록 보장함으로써 평가를 지원해야 한다.

완료된 BRA는 승인을 위해 Board of Directors에 제출하기 전에 지정된 Compliance Officer 및/또는 Senior Management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후 Compliance Officer가 BRA를 승인한다. Board of Directors는 BRA의 감독, 승인 및 정기적 검토에 대한 최종 책임을 보유하며, BRA가 회사의 ML/TF/PF 위험 프로필에 적절하고 최신 상태이며 이를 반영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회사가 고객 관계의 설정 이후 및/또는 관련 이해관계자/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수령한 정보에 근거하여 위험평가를 조정했을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조정의 사유와 함께 이를 충분히 문서화하고 Compliance Officer의 적절한 서명을 받아야 한다.

FIAMLA 제17(2)항은 또한 회사가 사업위험평가를 수행할 때 다음 6개 핵심 영역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 (a) 회사의 활동의 성격, 규모 및 복잡성;
- (b) 고객의 위험;
- (c)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및 거래;
- (d) 고객 활동의 성격, 규모, 복잡성 및 소재지;
- (e) 기술 발전 및 서비스 제공 채널;
- (f) 고객확인 절차의 일부를 제3자에게 의존하는 것.

이 BRA를 수행할 때 회사는 국가 차원에서 수행된 위험평가의 결과와 FIAMLA 제17(2)(b)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평가 및 검토가 포함된다:

- a. 고위 경영진이 자신의 책임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경영정보시스템의 적정성;

- b.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및 통제의 운영과 효과성;
- c.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신규 고객 수입 절차의 중대한 변경, 사업 프로필에 대한 새로운 규제 변경의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
- d. 해당 연도 중 새롭게 발표된 국가적 및 국제적 조사 결과가 활용된 방식.

보고서는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 a. 위험관리 정책 및 위험 프로필의 문서화;
- b. 고려된 위험 완화 조치;
- c. 모든 영역이 적절히 다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위험 모니터링 체계.

B.1 BRA 수행 빈도

평가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회사의 BRA는 매년 검토한다. 다만, 연중 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회사의 BRA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A에 대한 모든 검토는 적절한 검토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고 서명해야 한다.

B.2 BRA 기록 보관

이사회와 Senior Management가 언제든지 FIAMLA 제17항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Company Secretary는 Board Papers의 일부로서 명확한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C. 고위험 국가 위험평가

지리적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고위험 국가와 관련하여 다음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FIAMLA 제17H(1)항은 FATF가 어떤 관할권에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과 확산의 자금조달 방지 조치(AML/CFT/CPF 조치)에 중대하거나 전략적인 결함이 있다고 식별한 경우, 자금세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장관(“Minister”)이 National Committee for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National Committee”)의 권고에 따라 해당 관할권을 고위험 국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6년 6월 19일, FATF는 다음 성명을 발표했다: "High-Risk Jurisdictions subject to call for action". 해당 성명에서 FATF가 식별한 관할권을 고려하여, Minister는 National Committee의 권고에 따라 다음 국가를 고위험 국가로 지정했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이란 및.
- > 미얀마.

(출처: Mauritius Government Gazette의 General Notice No. 359 of 2026.)

FATF 성명 “High-Risk Jurisdictions subject to a call for action”은 “FATF list of other monitored jurisdictions”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후자의 관할권들도 고위험으로 분류되지만, FATF는 “Jurisdictions under Increased Monitoring” 목록에 포함된 관할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적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FATF는 회원국들이 위험분석을 수행할 때 해당 관할권에 관하여 제시된 정보를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회사는 위험평가를 수행할 때 자금세탁, 테러리즘/확산 자금조달, 부패, 제재 및 금수조치 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식별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예: FATF, EU,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제공하는 국가 및 영토 관련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CRA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고려하며, 여기에는 지리적 위험요인(4.5에 명시됨)이 포함되고, 어느 하나의 요인도 그 가중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고객이 FATF list of other monitored jurisdictions에 등재된 국가 출신이고 지리적 위험요인이 높더라도, 다른 위험요인은 낮게 평가될 수 있으며, 모든 위험요인(4.5에 명시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해당 고객의 위험등급은 낮은 위험 또는 중간 위험일 수 있다.

D. 정치적 주요 인물(“PEPS”)

PEPs는 주요 공직 기능을 맡고 있거나 맡았던 개인을 의미한다(예: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 고위 정치인, 고위 정부·사법 또는 군 관계자, 국유기업의 고위 임원 및 주요 정당의 주요 관계자). PEP의 정의에는 외국 PEP, 국내 PEP 및 국제기구 PEP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의 가까운 친족 및 밀접한 관계자도 포함된다.

PEPs, PEPs의 가족 구성원 또는 밀접한 관계자와의 관계는 부패 수익의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해당 인물들이 자신의 직위와 인맥을 이용하여 부패 또는 기타 범죄의 수익을 은닉할 가능성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자금세탁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회사는 파일 검토 및 고객 관계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 고객의 구조 내 지배자 또는 연결된 자가 PEPs/Former PEPs인지, 고객 관계 중 PEP 또는 PEP의 밀접한 관계자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FSC Handbook에 규정된 바와 같이, “connected persons”에는 beneficial owners 및 controllers와 같은 underlying principals가 포함된다. 회사는 section 5.5에 따른 고객 스크리닝을 통해 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고객의 세부 사항은 회사의 MC가 유지하는 PEP Register에 적절히 기록해야 한다.

5.3.3항에 언급된 EDD 조치는 이에 상응하여 적용되며 PEP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Know Your Customer(“KYC”)에 관하여 “일단 PEP이면 영원히 PEP이다”라는 견해 또는 규제 접근법이 있으며, 회사는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더 이상 고위 공직 기능(“전직 PEP”)을 위임받지 않은 지배자 또는 관련자, 과거 PEP였던 자, PEP의 친족 또는 가까운 동료, 또는 전직 PEP의 가족 구성원이나 가까운 동료는 여전히 위험 기반 접근법에 따른 EDD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4.5.3 교육

FIAML Regulations 2018의 Regulation 22(1)(c)는 **ML/TF/PF** 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연례적이고 지속적인 정기 교육과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정기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은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자신의 책임, 적절한 통제의 적용, 의심스러운 행동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 및 그러한 의심을 보고하는 방법을 계속 숙지할 수 있다. 교육에는 비공식 교육 과정, 이메일, 뉴스레터, 지침서, 정기 팀 회의 및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기타 모든 수단과 같이 직원을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도 포함된다.

매년 최소 1회의 AML/CFT/CPF 교육 세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 사항 외에도 Compliance Officer / MLRO, Deputy MLRO, Directors, Officers 및 Investment Dealer Team은 FSC Competency Standards의 요건에 따라 외부의 체계적인 CPD points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Investment Dealer Team의 구성원은 또한 자신의 회사 내 역할에 따라 필요한 경우 Investment Dealing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Compliance Function은 이와 관련하여 조직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이 시행되고 Training Register에 문서화되도록 할 책임을 진다.

5.0 고객 식별 및 검증 절차

5.1 고객확인(CDD') 정책 및 절차

고객 식별 및 검증은 증권 부문의 불법적 이용을 방지, 탐지하고 기소하는 데 기여한다. 효과적인 고객 식별 및 검증 절차는 회사와 고객을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고객 및 실소유자의 식별 및 검증, Know Your Customer('KYC') 및 관련 데이터의 보관은 고객확인 절차('CDD 절차')로 간주된다. CDD 절차는 증권 규제의 주요 목적, 즉 투자자/고객의 보호,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시장의 보장 및 증권산업의 불법적 이용 방지를 달성하기 위한 증권 규제 요건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또한 **ML/TF/PF**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CDD 관행은 평판 위험, 법적 위험 및 규제 제재 위험을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타 위험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한다. 회사는 FIAMLA 및 FIAMLR을 준수하고 CDD 요건에 관하여 FSC Handbook이 제공하는 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5.2 고객 식별 및 검증 및 고객 온보딩에 대한 책임

Investor/traders/clients는 최소한 POI 및 POA를 제출하며, 이후 회사는 해당 서류를 검증한다.

Management Company는 이러한 CDD 서류를 재확인하고 승인이 완료되면 고객은 거래할 수 있다. CDD 서류가 승인되지 않은 고객은 거래할 수 없다.

CDD 절차는 고객 및 실소유자의 식별 및 검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 Compliance Manual에 따라 Management Company가 수행하여야 한다.

Management Company에는 회사가 CDD 절차를 통해 취득한 식별 정보 및 문서의 기록과 문서 검증을 유지할 책임이 위임되어 있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고객을 온보딩하기 전에 회사의 Backoffice team / Onboarding Team은 고객의 KYC(필요한 경우 인증본 - 본 매뉴얼의 5.12항 참조)를 수집하고 스크리닝을 수행한다.
- 고객은 등록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온보딩된다.
- 그 후 회사는 Management Company와 서류를 공유한다. 물량에 따라 매일, 매주 또는 매월 Management Company는 KYC 및 스크리닝에 대한 2차 검토를 수행한다.
- 이후 고객의 위험 등급을 산정하며, 해당 등급은 중요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검토된다.
- 불리한 일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Management Company는 회사에 다음 중 하나를 취하도록 통지한다;
 - i. 추가 서류
 - ii. PEP인 경우 - 신고서 및 강화된 증빙 서류.
 - 고객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계좌는 정지된다. 답변에 따라 계좌는 최종적으로 폐쇄되며 자금은 해당되는 경우 자금의 원천으로 송금된다.
 - 위 사항은 사안별로 처리하며 위험 기반 접근법을 적용한다.

- 불리한 일치 결과의 중대성 및/또는 가능성을 평가한다.

➤ 고객을 대리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한 고객확인

어떤 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사업관계를 설정하거나 지시를 이행하기 전에 해당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가 고객을 대신하여 행동할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사는 대리인의 권한이 만족스럽게 확인될 때까지 어떠한 계좌도 개설하지 않고 어떠한 거래 또는 지시도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최소한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출처의 서류, 데이터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고객과 고객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 모두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한다;
- 유효한 위임장, 법원 명령, 후견 명령, 위임장 또는 해당되는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문서 등 개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입증하는 문서 증거를 확보하고 검토한다;
- 부여된 권한이 유효하고 현재 유효하며 제안된 사업관계 또는 거래의 목적에 충분한지 평가한다;
- 회사의 기록 보관 요건에 따라 모든 식별 서류 및 권한 증거의 사본을 보관한다;
- 해당되는 경우, 회사의 AML/CFT 절차에 따라 권한 있는 대리인에 대해 제재 대상자 심사, 정치적 주요 인물("PEP") 심사 및 부정적 언론 보도 심사를 수행한다. 그리고
- 상황상 ML/TF/PF 위험이 더 높은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를 적용한다.

회사는 권한이 독립적으로 확인되었고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에만 권한 있는 대리인으로부터 지시를 수락한다. 권한의 진정성, 유효성 또는 범위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이 만족스럽게 해결될 때까지 회사는 해당 지시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회사가 권한이 철회되었거나 만료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적절한 권한 증빙을 확보할 때까지 대리인으로부터의 지시 수락을 즉시 중단한다.

투자자/트레이더/고객의 이전

고객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6.2.3절에 따른 이전 절차를 적용한다.

완전한 CDD 없이 거래

KYC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고객의 계정을 보류한다.

계정이 완전히 검증되면, 즉 유효한 POI 및 최근의 POA가 수령되면 고객은 입금 및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CDD 요건의 미준수

필수 CDD 조치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한다.

- 계정을 개설하거나, 사업 관계를 개시하거나, 거래를 수행하지 않는다.
- 사업 관계를 종료한다. 그리고
- 해당되는 경우 FIAMLA 제14조에 따라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한다.

5.3 고객의 신원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가?

회사의 CDD 절차 수행 책임을 부여받은 운용회사는 CDD에 위험기반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 제4.5절(A.2)에 따라 산정된 고객 위험 수준(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은 고객에게 요청할 CDD 정보 및 문서의 범위와 빈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회사의 고객 온보딩 절차를 참조한다. 최신 CDD 문서 지침은 부록 11을 참조한다.

회사는 국제적 모범 관행에 기반한 표준 고객확인 절차와 위험기반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5.3.1 간소화된 CDD 조치

간소화되거나 축소된 CDD 조치는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간소화된 CDD를 적용하기로 한 결정의 근거는 준법감시인 / MLRO / DMLRO가 적절히 문서화해야 한다. 즉, 고려한 요소(관련 뒷받침 문서의 보관을 포함)와 해당 조치를 채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문서화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채택된 조치의 변경 사항도 동일하게 문서화해야 한다. 다만, 고위험을 나타내는 상황은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준법감시인 / MLRO / DMLRO는 제4.5절에 따라 요구되는 빈도로 고객과의 관계(간소화된 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포함)를 검토해야 한다.

5.3.2 표준 CDD 조치

낮은 위험 및 중간 위험이 확인된 경우 표준 CDD 조치를 적용한다. 표준 CDD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각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것
- (b) 고객의 실소유자 또는 거래와 관련된 자 등 고객과 연계된 개인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것
- (c) 사업 관계의 목적과 의도된 성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
- (d) 사업 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해당 관계 전반에 걸쳐 거래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객이 관여하는 거래가 고객 및 고객의 사업과 위험 프로필에 관하여 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자금의 원천을 포함)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
- (e) 위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출처가 확인된 문서, 데이터 또는 정보(예: 상업 데이터베이스 및 공개 정보)를 사용하는 것
- (f) CDD 절차에 따라 수집된 모든 중요 자료는 관련성이 유지되고 최신 상태로 관리된다.

5.3.3 강화된 CDD 조치

회사는 다음과 같이 FIAMLR Regulation 12(1)에 따라 EDD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1. ML 또는 TF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감독 지침을 통해 ML 또는 TF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고객 또는 거래 신청자가 고위험 제3국 출신인 경우
4. FIAMLR Regulation 16에 따른 환거래은행 관계와 관련된 경우
5. FIAMLR Regulation 15를 전제로, 고객 또는 그 주요 관계자 또는 거래 신청자가 PEP, PEP의 가족 구성원 또는 PEP의 밀접한 관련자인 경우
6. 보고의무자가 고객이 허위 또는 도난된 신원확인 문서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고객과 계속 거래하려는 경우
7.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생한 경우

8. 최종 고객의 금융 이력 또는 배경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운용회사는 회사를 대신하여 EDD 조치를 수행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A. PEP 고객확인 절차

마찬가지로 회사는 PEP 또는 PEP의 밀접한 관련자를 상대하는 경우 EDD 조치를 적용한다. FIAMLR Regulation 15(1)에 따라 PEP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고객 또는 실소유자가 PEP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한다.
-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관계를 설정하거나 계속하기 전에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는다.
- PEP로 확인된 고객 및 실소유자의 재산 원천과 자금 원천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B. 고위험 국가

회사는 고위험 국가 출신의 자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EDD)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FIAMLA 제17H조는 관할권의 AML/CFT/CPF 조치에 중대하거나 전략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금융행동특별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식별한 경우, 관련 장관이 국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그리고 규정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후 해당 관할권을 고위험 국가로 식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회사는 FIAMLA 제17H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고위험 국가와, FATF가 전략적 AML/CFT/CPF 결함이 있고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식별한 국가를 구분하여야 한다.

FIAMLA 제17H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락하지 아니함** FIAMLA 제17H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그러한 고위험 국가로부터 어떠한 고객도 수락하거나, 해당 국가에 투자하거나, 자금/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수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회사는 FATF가 전략적 AML/CFT/CPF 결함이 있고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식별한 국가의 사람과 관련된 고객관계 및 거래에 대하여 아래 EDD 사례의 항목 2에 따라 강화된 CDD를 적용하여야 한다.

FATF 그레이 리스트(강화된 모니터링 대상 관할권)에 등재된 관할권의 거주자 또는 국민인 고객은 위험 분류 목적상 지리적 고위험 고객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류는 관할권 위험만을 반영하며 적용할 고객확인 수준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EDD)의 적용 여부는 고객 프로필, 자금/재산의 출처, 성격 및 예상 활동, 상품/서비스 위험, 거래 행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관련 위험 요인을 고려한 전반적인 고객 위험평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반적인 위험평가가 높은 경우 EDD를 적용한다. 지리적 고위험 분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위험이 중간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표준 고객확인을 적용하되, 적절한 경우 강화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추가적인 위험완화 조치를 병행한다. 모든 위험 분류 결정 및 EDD 적용에서의 이탈은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C. 기타 EDD 사례

요약하면, 회사는 다음의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조치를 채택한다:

	사례	EDD 조치
1.	고객이 고위험으로 분류된 경우	고객의 위험등급에 근거하여 제5.3.3절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 조치를 시행하여 고객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2.	고위험 국가 또는 비협조적 국가·영토(“NCCT”) (FATF가 지정한 국가·영토) 또는 AML / CFT 체계의 결함과 관련하여 FATF 공개성명의 대상이 된 국가, 또는 EU 고위험 국가가 관련된 경우.	고객의 위험등급에 근거하여 제5.3.3절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 조치를 시행하여 고객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3.	고객(즉, 주주, 실소유자* 또는 가족 구성원, 권한 있는 서명권자, 또는 그 지배자 중 어느 하나 (고객이 법인인 경우))이 전직 정치적 주요인물 (PEP)이거나 PEP의 전직 근접 관계자인 경우. (제5.3.3.A절 참조)	고객수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a. 전직 PEP가 부패, 자금세탁, 뇌물수수, 사기 또는 테러자금조달에 관여하였을 수 있다는 부정적 보도; b. 고객의 자금/재산의 출처; c. 고객과 관련된 법인 또는 개인의 프로필; d. PEP로 식별된 개인이 해당 계정에 대해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영향력의 정도; e. 후자의 계정이 법인을 통해 보유되는 경우, 해당 개인이 해당 계정 내에서 PEP로서 보유했던 직위의 고위성; f. 해당 개인의 과거 및 현재 직무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i) PEP 등록부에 해당 고객이 전직 PEP로 분류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ii) 위 (a) 내지 (f)의 조사 결과가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위험수준은 자동으로 고위험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전직 PEP가 있는 경우의 등급은 고위험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iii) 고객의 위험수준에 근거하여 제5.3.3.A절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4.	고객관계가 진행되는 동안 고객이 허위 또는 도난된 신원확인 문서 또는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회사는 고객관계를 종료하여야 한다: (i) 해당되는 경우 MLRO에 내부 STR을 제출하고, FIAMLA 제14조에 따라 FIU에 외부 STR을 제출한다. (ii) 고객에게 누설금지(tipping off)를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객관계 종료 사실을 통지한다(이와 관련하여 제 5.3.3절 참조).

5.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생한 경우.	제5.3.3절에 따른 조치를 적용한다.
----	---------------------------	---

회사가 내부 절차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 조치를 만족스럽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고객과의 업무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FIAMLA 제14조에 따라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실소유자 및 지배자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Proliferation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2024 제4(e)(i)(a)항 및 Companies Act 제190(5)(a)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는 요청이 있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에 모든 기본정보 및 이용 가능한 실소유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일 관리자를 지정하였으며, 후자가 부재하는 경우에는 그의 대체자를 지정하였다.

자연인과 관련된 “실소유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 Companies Act 2001 제2조는 “실소유자” 또는 “최종 실소유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a) 회사를 최종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회사와 관련하여 거래나 활동이 수행되는 상대방인 자연인을 의미하며;
 - (b) 실소유자 또는 최종 실소유자를 식별할 때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 (i) 최초로, 다음을 통하여 회사를 최종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 -
 - (A) 규정될 수 있는 비율로 해당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는 것;
 - (B) 의결권; 또는
 - (ii) 회사를 최종적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음을 통하여 다른 수단으로 지배하는 자연인 -
 - (A) 차등 의결권;
 - (B) 고위 경영진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
 - (C) 채무상품을 통한 지배;
 - (D) 법인 내에서 보유한 직위를 통한 지배;”
 - (c) (a) 및 (b)에 따라 자연인이 식별되지 않거나, 식별된 자가 실소유자인지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section 5에 따라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자연인;
- 모리셔스의 Financial Intelligence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FIAMLA) 제17E(3)조는 "실소유자"를 고객을 궁극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거래가 그를 대신하여 수행되는 자로 정의합니다. 또한 규정에서 추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법적 arrangement에 대하여 궁극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 FIAMLR 2018 규정 6은 법인 및 법적 arrangement의 실소유자를 식별하고 검증하도록 규정하며, 금융기관이 해당 법인 또는 arrangement를 궁극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요구합니다.

- FSC는 실소유자를 고객을 궁극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거래가 그를 대신하여 수행되는 자로 간주합니다. 여기에는 법인 또는 법적 arrangement에 대하여 궁극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연인 및 FIAML Regulations 2018의 Regulations 6 및 7에서 정할 수 있는 그 밖의 자도 포함됩니다.

법인과 관련하여 “controller”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

- (a) 법인의 지배기구 구성원인 자;
- (b) 법인의 지배기구 구성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가진 자;
- (c) 법인의 지배기구 구성원이 될 자의 임명에 동의가 필요한 자;
- (d) 단독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다른 자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i)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인의 사업 또는 재무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 (ii) 법인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배하는 자;
 - (iii) 법인 의결권의 20% 이상을 지배할 권한을 가진 자;
 - (iv) 행사될 경우 (ii) 및 (iii)의 조건이 충족되는 결과를 초래할 법인 관련 권리를 보유한 자;
- (e) 해당 법인의 모회사 또는 그러한 모회사의 controller인 자;
- (f) (a)부터 (e)까지의 문단에 명시된 자의 실소유자 또는 궁극적 실소유자이며, Commission이 해당 법인의 controller라고 판단하는 자;

“corporation” -

- (a) 법인체를 의미하며;
- (b) FSC Rules에서 정하는 경우 모든 trust, société 또는 partnership, 또는 그 밖의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합니다;

제3자 의존

5.4.1 KYC 및 CDD 조치

회사가 특정 CDD 조치를 완료하기 위해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존하는 경우, 제3자 의존에 관한 FSC Handbook 제8장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의 확인이 포함됩니다:

- 제3자가 규제, 감독 및 모니터링을 받는 자일 것;
- 제3자와의 계약상 약정이 체결되어 있을 것;
- 제3자에게 요청한 식별 정보가 적절하고 정확할 것;
- 제3자가 요청 시 CDD 정보 및 관련 문서를 제공할 것; 그리고
- CDD 조치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회사에 남아 있을 것.

회사는 신원 및 얼굴 검증을 위해 Shufti Pro를 사용합니다. Shufti Pro는 문서 인증 및 생체 안면 인식을 포함한 자동화된 신원 검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AML/KYC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이 플랫폼은 효율적인 고객확인을 가능하게 하고, 사기 방지 조치를 강화하며, 검증 활동에 대한 안전한 감사 추적 기록을 유지합니다.

5.4.2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

이는 회사의 제3자 관계 관리 및 그러한 제3자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내재적 위험과 잔여 위험에 관한 기준과 지침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회사가 내부 운영, 직원, 투자자 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도록 제3자와 관계를 맺을 때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면 회사가 재정적 손실, 소송 또는 기타 손해에 노출될 수 있으며, 기존 고객 관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고객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이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자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전담 Administrator가 Simplified CDD Measures 또는 Standard CDD Measures를 수행해야 합니다. 누락된 문서 또는 정보에 대한 요청은 Accounting Team에 전달되며, Accounting Team은 궁극적으로 업무에 관여하는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와 연락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Screening 및 Third-Party Risk Assessment는 회사 전담 Compliance Analyst가 수행해야 합니다. Appendix 16을 참조하십시오.

- 불리한 일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불리한 일치 결과의 심각성 및/또는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자료를 요청합니다:
 - PEP Status Declaration Form (해당되는 경우);
 - 불리한 일치 결과와 관련된 해명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
- 서비스 제공업체는 Screening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경우 온보딩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Screening 및 risk assessment)의 빈도는 위험기반 접근법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위험은 3년마다, 중위험은 2년마다, 고위험은 매년 검토합니다.

5.5 Screening

회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Screening 엔진을 통한 독립적인 검색을 사용하여 고객 및 기관 고객의 지배자와 관련자에 대한 Screening을 수행함으로써 CDD 조치를 보완합니다. 이러한 Screening 엔진에는 UN, OFAC, UK HMT, EU, DFAT 제재 목록(주요 목록만 예시로 든 것임)과 인터넷상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PEP Screening 및 제재 Screening을 포함한 Screening을 위해 Dilisense를 사용합니다.

Management Company는 사내에서 사용되는 Screening 엔진이 해당 검색 엔진이 의존하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적중 결과 또는 불리한 보고서가 발생하는 즉시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운용회사는 또한 심사에 국내 표적 금융제재 목록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적 금융제재 목록에 대한 검색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용회사는 해당되는 경우 FIU / National Sanctions Secretariat / FSC로부터 수령한 지정 명칭을 사용하여 검색 엔진을 테스트하고, 해당 명칭이 적절하게 포착되는지 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회사는 위험기반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회사가 채택한 위험기반 접근법의 범위를 넘어 낮은 위험 및 중간 위험 고객을 포함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러한 심사는 고객과 관련하여 금융 사기 또는 범죄, 금융 위험, 탈세, 마약 밀매, 조직범죄,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 확산금융 관련 사안에 관한 제재 또는 기타 검색 일치 결과 / 부정적 언론 보도(“Adverse Media”)가 없음을 회사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재 / Adverse Media가 발견된 경우에는 부록 10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운용회사는 Refinitiv라는 소프트웨어와 Infinitix라는 24/7 심사 도구를 도입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회사의 주요 Principals에 사용된다. PEP 또는 부정적 일치 결과 등 주요 Principals의 지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알림이 작동하며, 운용회사는 추가 서류를 요청하고 파일에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5.5.1 심사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법

FIAMLR 및 FSC Handbook은 위험기반 접근법에 따라 위험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회사의 Principals / Officers에 대한 심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회사의 Clients에 대한 심사는 온보딩 시 실시된다. Client Risk Assessment 등급(낮은 위험, 중간 위험 또는 높은 위험 고객으로 평가된 고객)에 따라 고객 심사는 높은 위험 등급의 경우 매년, 중간 위험 등급의 경우 2년마다, 낮은 위험 등급의 경우 3년마다 실시되어야 한다.

특정 Client에 대한 트리거 사건(예: PEP, 고위험 국가 또는 대규모 투자)이 발생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의심스러운 활동이 확인되면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STR”) 절차를 개시한다.

5.5.2 표적 금융제재

5.5.2.1 보고 의무 및 절차

회사는 United Nations (Financial Prohibitions, Arms Embargo and Travel Ban) Sanctions Act 2019(“UNSC Act 2019”)의 제정을 인지하고 있다. 이 법률은 모리셔스 정부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헌장 제VII장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한 표적 제재를 포함하여 금융제재, 무기 금수 및 여행 금지와 기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위협에는 테러리즘, 테러리즘의 자금조달 및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이 포함된다.

UNSC Act 2019 제9조는 국가제재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어떠한 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행동하든, 어떠한 자를 대신하거나 어떠한 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

(i) 확산에 관여하거나 연루되어 있거나, 확산과 연계되거나, 확산에 기여하거나, 확산을 지원하거나, 확산을 촉진하거나, 확산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ii) 확산금융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iii) 지정 당사자 또는 등재 당사자가 다음 행위를 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

(A) 이 법, UNSCR 1737, UNSCR 1718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UNSCRs에 따라 부과된 표적 금융제재, 무기 금수 또는 여행 금지를 회피하는 행위; 및

(B) 이 법, UNSCR 1737, UNSCR 1718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UNSCRs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해당 당사자를 지정 당사자로 선언하도록 내무부 장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제재위원회는 법 제9조에 규정된 그 밖의 상황에서 당사자를 지정하도록 내무부 장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

회사는 다음 링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통합 목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https://the Company.un.org/securitycouncil/content/un-sc-consolidated-list>, 특히 National Sanctions Secretariat가 업데이트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National Sanctions Secretariat가 발행할 수 있는 공지에 대해서도 신문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a) 회사는 National Sanctions Secretariat 및 FIU가 UN Sanction Lists 및/또는 National Sanction Lists(해당되는 경우)에 업데이트하는 각각의 명칭을 면밀히 조사한다. 회사는 이미 업데이트된 UN Sanction Lists를 포함하고 있는 검색 엔진을 사용해야 한다. National Sanctions Secretariat 및 FIU의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검색 엔진 사용에 더하여 해당 업데이트를 즉시 수동으로 면밀히 조사하여 제재 대상 명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b) National Sanctions Secretariat 및 FIU가 제공한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수행한 모든 확인의 증거 보관에 관하여, 회사는 예외적인 기준으로 처리하며, 일치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다.
- (c) 일치 결과가 있는 경우, 회사는 절차와 관련하여 아래 (f)에 따라 이를 National Sanctions Secretariat, FIU 및 FSC에 보고해야 한다.
- (d) 허위 양성 일치 결과인 경우, 회사는 해당 일치 결과를 배제하기 위한 강화된 실사를 수행하고, 내부 및 외부 보고 절차에 따라 작성된 False Positive Match Log에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 (e) 당사자가 Listed Party 또는 Designated Party로 등재된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 (i) 회사는 즉시(즉, 지체 없이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해당 Listed Party 또는 Designated Party의 세부사항이 자사의 고객 중 누구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ii) 긍정적 일치 결과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이 모리셔스 법 제2조에서 정의된 자금 또는 기타 자산(용어집도 참조)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 제23(1)조에 언급된 자금 또는 기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 (iii) 자금 또는 기타 자산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SC’)에 보고해야 한다.
 - (iv) 회사는 법 제18(1)조에 따라 발행된 통지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등재 당사자 또는 지정 당사자의 자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하거나 통제하거나 자신의 관리 또는 점유하에 두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음 사항을 국가제재사무국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법 제23(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i. 등재 당사자 또는 지정 당사자의 자금이나 기타 자산을 취급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 자금이나 기타 자산의 세부사항;
 - ii. 등재 당사자 또는 지정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 iii.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자금이나 기타 자산과 관련된 시도된 거래의 세부사항;
 - 송금인의 성명 및 주소;
 - 예정된 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
 - 시도된 거래의 목적;
 - 자금이나 기타 자산의 출처; 그리고

- 자금이나 기타 자산을 송금할 예정이었던 장소.
 - (v) 보고의무자가 일치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 보고서는 **NOT** 국가 제재사무국에 제출되지 않는다. 제재 등록부는 내부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제재 심사의 증거는 기록으로 보관한다.
 - (vi) 또한 회사는 금융정보 및 자금세탁방지법('FIAMLA') 제14조에 따라, 회사가 알고 있는 등재 당사자 또는 지정 당사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NSSEC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http://nssec.govmu.org>.

보고서는 다음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nssec@govmu.org

5.5.2.2 등재 당사자 또는 지정 당사자의 자금 또는 자산 취급에 대한 법적 제재

등재 당사자 또는 지정 당사자의 자금 또는 자산을 취급하는 것은 금지되며, 법 제23(5)조는 이와 관련하여 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하며,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500만 루피 또는 자금이나 기타 자산 가치의 2배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및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5.5.2.3 법 미준수에 대한 법적 제재

법을 위반하는 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하며,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구체적인 형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100만 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및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에 처한다.

5.6 자금 출처 / 재산 출처

다음의 식별에 있어 **ML/TF/PF** 위험과 관련하여, 고객의 의도된 사업 활동과 관련해 자금의 출처 및/또는 재산의 출처(해당되는 경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 전제조건이다.

자금의 출처란 회사와 고객 간의 사업 관계 및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수행해야 하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특정 자금 또는 자산의 기원을 의미한다(예: 투자, 예치 또는 송금되는 금액). 반면 재산의 출처는 자금의 출처와 구별되며 고객의 재정 상태 또는 총 순자산의 기원을 의미한다. 즉, 고객의 자금과 재산을 창출한 활동을 말한다.

준법감시책임자의 감독하에 준법 분석가는 각 사업 신청자에 대해 사안별로 자금의 출처 및/또는 재산의 출처(해당되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USD 50,000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자금 및 재산의 출처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하며, 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거로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 고객의 예치금이 USD 50,000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객이 신청서에 자금 및 재산의 출처에 관한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한다(아래 5.7.1 참조);
- 고객 정보, 자금의 출처/증빙 및 의도된 사업 활동 간에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고객이 공개한 자금 및 재산의 출처 유형에 따라 다음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o 소득 / 급여

자금 / 재산의 출처가 소득 / 급여인 경우, 고객은 직위 및 고용 기간을 포함하여 현재 및 과거 고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력서, 고용주가 보수액을 확인하는 서신/확인서 또는 세무 당국이 발행한 최근 세금 신고서/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입증하는 서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재산 / 부동산

자금 / 재산의 출처가 재산 및/또는 부동산의 임대소득이나 매각을 통해 형성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상속

상속을 받은 사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상속의 대략적인 금액, 피상속인의 재산을 형성한 활동 및 해당 활동의 소재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의 세부사항이 포함된 Probate Grant 또는 유언장 사본, 또는 합의의 전체 세부사항을 기재한 변호사나 공증인의 서명 서신을 제출해야 한다.

○ 사업 소유권

소유한 사업체, 해당 사업체의 활동 및 그 활동의 소재지, 그리고 해당 사업체에 대한 지분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주명부 또는 관련 회사의 지분율 확인서, 최근 감사 재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가 서명한 사업체 자산의 상세 기업 프로필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연금

연금을 발생시킨 자금의 최초 출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재원을 부담한 연금인 경우, 고용주, 보유 직위 및 고용 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개인연금인 경우, 연금에 기여한 재산 및/또는 자금의 최초 출처(예: 급여)에 관한 세부사항과 연금제도의 입증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 금융 증여

증여를 받은 당사자에 관한 세부사항과 함께 자금의 활동 및 해당 활동의 소재지를 포함한 재산 및/또는 자금의 최초 출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증여를 받은 사유도 포함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증여를 입증하는 법적 서류 또는 증여자의 서신과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대출 및 채무

대출/채무 제공자의 세부사항과 함께 대출 약정의 금액 및 사유에 관한 세부사항, 그리고 특히 제안된 투자자가 담보로 사용될 예정인 경우 취득한 담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제공되는 자금이 기존 채무의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성명, 해당 자금을 발생시킨 활동의 세부사항 및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진 장소를 포함한 채무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출/채무와 관련된 관련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 투자상품의 매각, 수령한 배당금 또는 이자

관련 증명서, 거래명세서 또는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o 기타 소득

공인 회계사가 서명한 자금/재산의 원천을 상세히 설명하는 적절한 증빙서류 또는 서명된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

불일치가 있는 경우, 취득한 정보를 검증하거나 해명을 요청하고 고객의 재산 원천에 관한 정보 취득을 고려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

고객은 다음의 경우 자금의 원천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고객의 프로필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고(예: Forbes 목록),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명백히 부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자금의 원천을 정당화하는 경우.
- 자금의 원천이 주주/실소유자의 기존 사업에서 발생하고 주주/실소유자의 재무제표를 통해 투입되는 자금이 이용 가능성이 입증되는 경우.
- 고객이 동등한 관할권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규제 금융기관이 이미 보유/관리하고 있는 금액을 투입하고, 고객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잔액이 있음을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를 제공한 경우.
- 이미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투자계좌에서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지분, 대출, 선금금 등의 방식), 단 다른 계좌의 자금 원천이 이미 만족스럽게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 고객의 프로필 또는 지위(예를 들어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 과거 실적 등)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고(예: Forbes 목록 또는 독립 언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명백히 부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회사가 관리할 고객 계좌에 투입된 자금의 원천을 정당화하는 경우.

위 목록은 망라적이지 않지만 모든 고객의 자금/재산 원천을 독립적이고 신뢰성 있게 확인하려는 회사의 방침을 반영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을 자금 원천 증빙 제출 의무에서 면제하기로 한 결정은 문서화하고 파일에 그 사유를 정당화해야 한다.

5.7 기존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부록 10에 따라 부정적 언론 보도/컴플라이언스 보고서를 처리하는 것;
- (b) 해당되는 경우 자금/재산의 원천을 확인하는 것;
- (c) 부록 11에 따라 기존 기록을 검토하여 수집된 문서, 데이터 또는 정보가 최신 상태이고 관련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 (d) 의도되었거나 실행된 거래의 사유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은행 명세서 검토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거래 관계 전반에 걸쳐 수행된 거래를 조사하여 해당 거래가 고객 및 고객의 사업과 위험 프로필에 관한 회사의 지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
- (e) 사업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취득하는 것;
- (f) 사업 관계가 진행되는 동안 고객이 PEP로 정의된 경우; 및/또는
- (g)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적 언론 보도/히트가 식별된 경우
- (h) 위험도에 따라 고객의 위험 평가를 검토하는 것.

회사가 내부 절차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조치를 만족스럽게 적용할 수 없거나, 고객이 허위 또는 도난된 신원확인 문서 또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회사는 고객과의 사업 관계를 종료하고 해당되는 경우 요구되는 바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내부 및 외부 보고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내부 절차 매뉴얼을 채택해야 한다.

5.7.1 거래 모니터링

회사는 사업 관계가 수립되는 시점부터 고객확인(CDD) 절차를 수행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위임에 따라 고객을 위한 유가증권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므로, 거래가 고객에 관한 회사의 지식과 고객의 사업 및 위험 프로필에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에 대한 추가 조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는 자금 유입 또는 유가증권 취득에 사용될 자금의 원천이 확인/확립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금 원천 신고서(부록 13)를 작성해야 한다. 강화된 고객확인조치에 대해서는 제5.3.3절을 참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 모니터링에 관한 제3.5절도 참조한다.

A.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KYC 문서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 회사는 이 절차에 표준 고객확인(CDD) 관행을 적용한다.

고객이 현지 은행/외국 은행 또는 해당되는 경우 Payment Service Provider를 통해 입금 또는 출금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Investment Dealer의 운영팀/거래팀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회사의 Management Company는 2주마다 거래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거래량(많거나 적음)에 따라 TM 빈도는 매일, 매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해진다. Management Company는 매일 또는 매주 거래 보고서를 요청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거래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해당되는 경우 추가 서류(EDD)를 요청한다. 제5.3.3절에서 정한 강화된 CDD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은 자금 원천/재산 원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EDD 조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은 신청서에 이 신고서를 작성한다(해당되는 경우).

B. 거래 후 모니터링

그 후 거래량에 따라 Management Company는 매일, 매주 또는 매월 중 하나의 주기로 2차 확인을 요청한다.

위 사항은 문서화하고 모니터링한다.

조회 권한과 관련하여 Credentia는 현지 이사가 조회 권한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을 항상 강조하지만, 외국 은행의 은행 시스템은 모리셔스 현지 은행의 시스템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5.7.2 정기 모니터링

회사는 고객과 관련하여 확보한 고객 식별 정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MLRO / DMLRO / Compliance Officer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고객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모니터링				
위험 수준	자금 출처 확인	CDD 문서 업데이트	스크리닝	고객 위험 평가 검토
저위험	온보딩 시 및 신규 거래 시	Appendix 11에 따름	저위험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스크리닝을 실시하여 강화된 스크리닝 조치를 적용합니다.	매 3년마다 또는 고객의 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중 더 이른 시점.
중위험	온보딩 시 및 신규 거래 시	Appendix 11에 따름	중위험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스크리닝을 실시하여 강화된 스크리닝 조치를 적용합니다.	매 2년마다 또는 고객의 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중 더 이른 시점.
고위험	온보딩 시 및 신규 거래 시	Appendix 11에 따름	고위험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스크리닝을 실시하여 강화된 스크리닝 조치를 적용합니다.	매년 또는 고객의 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중 더 이른 시점.

회사는 최종 고객을 위한 스크리닝 도구로 Dilisense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고객의 상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 고객 중 한 명이 PEP가 되었거나 부정적 언론 보도가 확인된 경우에는 알림이 발생하며, 회사는 추가 문서를 요청하고 파일에 보관하도록 보장합니다.

상환 또는 인출된 자금은 출처에서 고객에게 이체됩니다. 즉, 고객이 Credit Card를 통해 입금한 경우 자금은 동일한 Credit Card 정보로 반환됩니다.

5.7.3 4인 원칙

Four Eyes Principle(‘Dual Control’이라고도 함)은 회사의 [내부 통제](#) 메커니즘의 일부이며, 조직 내에서 중대한 위험 프로파일을 수반하는 모든 활동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 즉 두 번째 역량 있는 개인에 의해 검토되거나 재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통제의 목적은 주로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위험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 사업 수행 - 정기적인 사업 업무의 부적절한 수행(실수, 간과)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
- 내부 사기 - 회사 내부자의 사기 행위로 인한 부정적 결과.

"four eyes" 원칙은 이중 확인 및 통제와 위험 평가, 거래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우선적인 요건은 회사의 전체 운영 또는 일반적으로 회사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운영 전반에 걸쳐 4인(최소 2명의 개인) 기준이 지속적으로 충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모든 기존 또는 신규 절차는 "four eyes" 원칙이 이에 따라 준수되도록 시행되어야 합니다.

5.8 내부 및 외부 보고 절차

회사는 상장 당사자 및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와 관련된 내부 및 외부 보고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내부 절차 매뉴얼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MLRO / DMLRO는 본 절에 따른 보고와 관련하여 회사를 위한 다음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합니다.

- MLRO/DMLRO에 제출된 의심스러운 거래 / 활동에 관한 내부 보고 기록
- MLRO/DMLRO가 FIU에 제출한 의심스러운 거래 / 활동에 관한 외부 보고 기록
- United Nations (Financial Prohibitions, Arms Embargo and Travel Ban) Sanctions Act 2019의 section 25(2)에 따른 일치하는 성명 확인 보고 기록
- United Nations (Financial Prohibitions, Arms Embargo and Travel Ban) Sanctions Act 2019의 section 23(4)에 따른 National Sanctions Secretariat 및 FSC에 대한 통지 기록
- 거부된 고객 기록

5.8.1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

5.8.1.1 거래 스크리닝 및 모니터링:

회사는 고객 위험 평가, 프로파일링 및 거래 행태 분석을 포함하여 모든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 및 제재 스크리닝을 수행합니다. 생성된 경보는 Compliance Officer가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의심스러운 활동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EDD 조치 및 적절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직원은 고객 계정 및 본 매뉴얼의 다른 장에서 상세히 규정한 기타 요소를 모니터링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거래의 비정상적 성격: 예를 들어 해당 고객 또는 고객 유형에 비해 비정상적인 규모 또는 빈도.
- 일련의 거래의 성격: 예를 들어 다수의 현금 입금.
- 자금 지급의 지리적 목적지 또는 출처: 예를 들어 고위험 관할권에서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고객의 행태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포착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또한 회사는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 고객에 대한 적합성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고객의 거래 동기에 관한 정보를 거의 보유하지 않게 됩니다. 회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 계정을 개설하고 해외 계정에서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인 경우, 회사는 해당 해외 계정이 고객 본인 명의로 보유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이 위험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계정 및 거래 이력을 검토하고 해외로 지급하는 사유를 문의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해당 계정 또는 그 계정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비정상적이며 따라서 의심스러운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거래팀은 전자 자금 이체를 포함한 고객의 거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직원들은 후속 실사 조치가 필요한 “triggers”를 식별하도록 교육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결이 끊긴 전화번호 또는 반송된 우편물은 KYC 정보가 업데이트될 때까지 고객 계정의 정지를 유발합니다. 직원들은 모든 비개인 고객 유형에 대한 실소유권 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확인하도록 교육받습니다.

실소유자 또는 실제 지배자가 확인된 경우, 추가적인 KYC 정보가 수집되고 검증됩니다. 사안별로 회사의 파일을 전담하는 컴플라이언스 분석가는 복잡하거나 비정상적으로 큰 거래 및 명백한 경제적 목적이나 외관상 합법적 목적이 없는 이상한 거래 패턴을 포함하여 고객의 거래를 모니터링합니다.

사안별로 계좌 개설팀의 직원은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는지 고객 계좌를 수동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직원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식별하기 위해 고객 계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직원은 거래가 AML/CFT/CPF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금 및 거래 활동을 검토합니다. 의심스러운 패턴이 발견되면 에스컬레이션 절차를 개시하고 해당 팀의 직속 관리 관리자에게 보고하며, 직속 관리자는 Compliance에 통지하고 조사가 진행됩니다.

잠재적 위험 신호 목록

다음은 FSC Handbook 제10.5절에 따른 사업 관계 또는 일회성 거래를 처리할 때 모든 직원이 유의해야 하는 가능한 위험 신호의 비망라적 목록입니다:

- a) 계좌에서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 b) 실소유자/지배자에 관한 CDD 문서 제공을 꺼리는 행위.
- c) 해당 금융기관이 파악한 고객 및 고객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빈도로 예금 또는 인출이 이루어지는 행위.
- d) 현금 또는 전신송금 형태로 자금이 이동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거래.
- e) 알 수 없거나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지급을 받거나, 그러한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행위. FSC AML/CFT Handbook
- f) 개인 관련 자금 흐름과 사업 관련 자금 흐름을 서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 g) 고객의 합법적 또는 예상되는 활동과 일치하지 않는 금융 활동.
- h) 휴면 기간 후 계좌 또는 사업 관계가 활성화되는 경우.
- i) 고객이 사업 관계를 설정하거나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를 수행하는 이유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기를 꺼리는 경우.
- j) 고객이 명백한 상업적 또는 기타 사유 없이 여러 계좌를 보유하는 경우.
- k) 외화로 현금화된 은행어음.
- l)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는 보험계약의 조기 해약.
- m) 대출금의 빈번한 조기 상환.
- n) 친척으로부터 대여금으로 표시되어 송금되는 자금의 빈번한 이체.
- o) 테러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선단체 또는 NPO로 자금이 이체되는 경우.
- p) 저장가치 카드에 예치된 자금의 수준이 높은 경우.
- q)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지급금이 제3자에게 지급되도록 요청하는 경우.
- r) 출처가 설명되지 않는 거액의 현금.
- s) 대출을 받은 후 잔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 t) 고가 자산을 구매한 직후 재판매하고 수표를 통한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5.8.1.2 내부 의심거래 보고

회사의 직위 또는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또는 이와 관련된 금융범죄 활동에 대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거래, 거래 시도, 활동 또는 상황에 대해 경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심이 발생한 경우, 직원은 과도한 지체 없이, 의심이 발생한 날로부터 늦어도 3영업일 이내에 내부 의심거래 보고서(Internal 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 iSTR)를 MLRO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MLRO가 부재한 경우 iSTR은 DMLRO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은 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이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고객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MLRO 및 DMLRO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MLRO	
성명:	Ms. Ranjana Gujadhur
이메일 주소:	rgujadhur@credentiainternational.com
연락처:	+230 467 2000
DMLRO	
성명:	Arhaan Mountasir Sophie
이메일 주소:	amountasirsophie@credentiainternational.com
연락처:	+230 467 2000

회사는 모든 회사 팀원이 의심 사항을 MLRO/DMLRO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iSTR 양식(부록 9)을 마련했습니다. 회사의 팀원은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도 MLRO에게 의심 사항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활동의 주요 지표/위험 신호에는 서비스 또는 거래가 다음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가 포함됩니다:

-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경우;
- 자금 또는 범죄 수익의 세탁과 관련된 경우;
- 자금이 테러자금조달 또는 금지된 조직에 의해 사용되거나 이와 연계 또는 관련된 경우. 해당 자금이 범죄 수익인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또는
- 비정상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복잡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 경제적 정당성 또는 합법적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리고
- FIU가 발행한 Guidance Note 3(의심거래 지표의 구체적 사례) 제5절에 따라 의심을 야기하는 경우.

모든 iSTR은 관련 증빙 문서/의심의 증거와 함께 기록되어야 하며, MLRO 및/또는 DMLRO가 내부 STR Register에 기록해야 합니다.

5.8.1.3 외부 의심거래 보고

:

FIAMLA 2002 제2절에 따르면, 의심거래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

a. 다음과 관련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야기하는 거래:

1. 자금 또는 범죄 수익의 세탁; 또는
2. 자금이 테러자금조달 또는 금지된 조직에 의해 사용되거나 이와 연계 또는 관련된 경우. 해당 자금이 범죄 수익인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b. 비정상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복잡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c. 경제적 정당성 또는 합법적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d. 거래 당사자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에 의해 또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경우; 또는

e. 그 밖의 사유로 의심을 야기하는 경우.

내부 STR을 수령하면 MLRO 또는 DMLRO는 신속하게 수령을 확인하고(적절한 경우),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며, 이용 가능한 모든 내부 정보를 사용하여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거래 또는 활동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또는 전제범죄와 연계되어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MLRO 및/또는 DMLRO는 외부 STR이 최종적으로 제출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행한 평가, 검토한 정보 및 도달한 결정의 근거를 문서화하고 회사의 기록 보관 요건에 따라 적절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MLRO 또는 DMLRO가 의심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 의심거래 보고서(“STR”)를 goAML 플랫폼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의심이 형성된 후, 어떠한 경우에도 **의심이 발생한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FIAMLA 제14조에 따라.

외부 STR에는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이 보고서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정보, 증빙서류 및 의심의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STR 제출 사실은 해당되는 경우 Financial Intelligence and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18 (“FIAMLR 2018”) 규정 30에 따라 내부 공개 등록부 및 외부 공개 등록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고객 관계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모든 기록은 해당 기록과 관련된 거래가 완료된 후 최소 7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모든 외부 STR은 MLRO 및/또는 DMLRO가 외부 STR 등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 **FIU에 의한 의심거래의 일시적 중지**

회사는 FIAMLA 2002 제10A조에 따라 의심거래의 일시적 중지를 요구하는 FIU의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 체계에 따라, FIU는 모리셔스 내외에서 거래, 관련자 또는 관련 자금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거래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자금조달 또는 관련 전제범죄와 연계되어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보고의무자에게 거래의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중지 명령은 발령 시점부터 최대 72시간 동안 유효할 수 있다. 중지 기간의 만료일이 일요일, 공휴일 또는 FIU의 비근무일인 경우, 중지 기간은 최대 120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다. FIU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중지 명령을 수령하면 회사는 즉시 해당 거래의 처리를 중단하고 FIU가 발행한 모든 지시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FIU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거래와 관련된 추가 정보, 문서 또는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회사와 그 이사, 임원, 직원 및 대리인은 모든 중지 명령에 관하여 엄격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명령이 발령, 연장 또는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고객이나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공개는 금지된 정보누설 (tipping-off)에 해당할 수 있다.

FIU의 중지 명령 및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신속한 상급 보고, 처리, 모니터링 및 보고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자산 동결

고객이 United Nations (Financial Prohibitions, Arms Embargo and Travel Ban) Sanctions Act 2019에 따른 지정 당사자로 선언되거나 등재 당사자로 등재된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지정 당사자 또는 등재 당사자의 세무사항을 확인하고, 또한 고객이 모리셔스에서 자금 또는 기타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자산을 확인한 후 회사는 의무에 따라 National Sanctions Secretariat 및 해당되는 경우 기타 현지 당국 또는 규제기관에 보고한다.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2020의 공포에 따라 의심거래 보고 의무가 강조되었으며, 그 결과 FIAMLA 2002 등이 개정되었다. MLRO 또는 Deputy MLRO는 의심이 제기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FIU에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를 신속하게 검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FIAMLA에 따른 해당 범죄에 대한 재정적 제재는 유죄 판결 시 다음과 같다:

- 의심이 제기된 날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MUR 1 million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효과적인 위험평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 MUR 10 million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
- 주장된 금융 부정행위에 공모하거나 이를 지원한 경우 - MUR 10 million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
- 증거 및 관련 기록을 파기하여 방해한 경우 - MUR 10 million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
- 규제기관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MUR 1 million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

> FIU 연락처

국장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10th Floor, SICOM Tower

Wall Street

Ebene Cybercity, 72201 Mauritius

연락처:

전화: (230) 454 1423

팩스: (230) 466 2431

이메일: fiu@fiumauritius.org

GoAML Portal: https://www.mrugoaml.fiumauritius.org/goAMLWeb_PRD/Account/LogOn

5.8.1.4 정보누설(TIPPING-Off)

- a. FIAMLA 2002 제19조 (1)(c)의 규정에 따라 정보누설은 금지된다;
- b.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MLRO는 경영진과 직원이 데이터 공유 및 정보누설의 결과를 인지하고 이에 유의하도록 해야 한다;
- c. 직원 또는 임원이 고객확인(CDD) 조치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고객에게 정보가 누설될 수 있다고 믿거나 그렇게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사안을 MLRO에 회부해야 한다. MLRO는 고객확인(CDD) 조치 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경우 고객에게 정보가 누설되었을 것이라고 믿은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d. 내부 STR이 MLRO에게 제출된 경우, 직원은 이를 고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 e. MLRO는 그러한 공개가 정보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내부 STR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누구에게도 허가하거나 동의해서는 안 된다;
- f. FIU 또는 경찰로부터 수령한 서신, 통지 또는 요청은 Compliance Team 또는 고객 외의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g. FIU 및 경찰에 대한 공개를 제외하고 허용되는 유일한 예외는 다음에 대한 공개이다;
 1. 직무 수행과 관련된 어떠한 목적을 위해 보고기관의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2.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 또는 대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실무가, 변호사 또는 법률고문에게 공개하는 경우; 그리고
 3. 보고의무자의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고의무자의 감독기관.
- h. MLRO는 모든 임원 및 직원이 AML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 i. MLRO는 모든 임원 및 직원이 AML 의심거래를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5.8.1.5 의심거래보고 기록

MLRO는 의심거래보고와 관련하여 다음 기록을 유지한다:

1. MLRO가 접수한 내부 공개 양식;
2. 내부 의심거래보고서 및 FIU에 제출한 의심거래보고서;
3. FIU에 의심거래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검토된 정보 또는 자료의 기록과 결정 사유를 기재한 평가보고서를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고객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보관해야 하며, 모든 기록은 해당 기록과 관련된 거래가 완료된 후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한다.

구조 및 절차

보고 체계

직원 → MLRO / 대리 MLRO → FIU

- i. 회사의 지위와 관계없이 각 직원은 의심스러운 성격의 거래를 MLRO/대리 MLRO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 ii. MLRO/대리 MLRO는 내부 STR을 조사하고 해당 보고가 근거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 iii. 그 후 STR은 내부 STR 제출에 대한 근거와 함께 GoAML Portal을 통해 FIU에 보고된다.

FIU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국장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SICOM Tower 10층, Wall Street,

Ebene Cybercity

Ebene, 72201

전화: (230) 454 1423

팩스: (230) 466 2431

이메일: fiu@fiumauritius.org

GoAML Portal: https://www.mrugaml.fiumauritius.org/goAMLWeb_PRD/Account/LogOn

5.9 AML/CFT/CPF 정책, 절차 및 프로세스의 검토와 독립 감사

본 매뉴얼의 내용은 필요할 때마다 Compliance Officer / MLRO / DMLRO가 검토해야 하며, 매뉴얼을 개정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개정된 매뉴얼을 이사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한다.
- 승인된 매뉴얼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회사를 관리하는 모든 임원 및 직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회사를 관리하는 임원 및 직원(회사를 관리하도록 배정된 MC의 임원/직원 포함)은 매뉴얼을 읽고 읽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Appendix 12)

5.10 독립 감사 기능

FIAML Regulations 2018의 Regulation 22(1)(d) 및 FSC Handbook의 Chapter 13에 따라, 회사는 FIAMLA 및 FIAML Regulations 2018에 따른 조치의 준수 여부와 효과성을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한 감사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독립 감사 기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 a. 회사의 AML/CFT/CPF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다음 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수립된 정책, 절차, 시스템 및 통제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 **ML/TF/PF** 위험, 식별된 위험에 대응하고 법률,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는 것;
- b. 회사의 정책, 절차 및 통제를 이행하는 회사 직원 및 임원의 효과성;
- c. 거래 알림의 매개변수 및 기준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감독 및 품질관리의 효과성; 그리고

d. 관련 직원 및 임원에 대한 회사 교육의 효과성.

감사의 빈도는 제시된 **ML/TF/PF** 위험과 회사의 규모 및 복잡성에 상응해야 한다. 회사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입법 및 규제 의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한, 독립 감사는 최소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권고사항 및 결함을 강조하는 독립 감사보고서의 발견사항은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기관 이사회는 독립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된 문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특히 업무계획, 감사 범위 및 거래 테스트를 포함한 모든 독립 감사 문서도 적절히 문서화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FSC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11 AML/CFT/CPF 관련 적용 법률에 따른 처벌

적용되는 AML/CFT/CPF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CC Act의 section 26에 따르면, FIAMLA에 따른 자금세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10 million rupees의 벌금 및 최대 20년의 형벌적 노역에 처해질 수 있다. FIAMLA에 따른 CDD 또는 보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 000 rupees의 벌금 또는 회사 그룹의 모든 임직원에게 대한 형사책임 및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각각 발생할 수 있다. FIAML Regulations 2018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최대 1 million rupees의 벌금 및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5.12 인증

- 5.12.1 신원확인 서류가 원본 형식이 아닌 경우, 해당 서류는 원본 서류의 진본 사본임을 적절히 인증해야 한다.
- 5.12.2 회사 또는 회사 그룹의 직원, 이사 또는 임원이 제안된 고객 또는 법인 고객의 주요 관계자를 대면하여 만나고 원본 신원확인 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직원, 이사 또는 임원은 신원확인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고 이를 원본 서류의 진본 사본으로 직접 인증할 수 있다.
- 5.12.3 그 밖의 경우 신원확인 서류의 사본은 변호사, 공증인, 보험계리사, 회계사 또는 공인된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 모리셔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할권에서 규제되는 금융기관의 이사 또는 비서, 사법부 구성원 또는 고위 공무원과 같은 적합한 사람이 인증해야 한다.
- 5.12.4 인증자는 사본 문서에 서명하고 인증자의 추적을 돕기 위해 자신의 성명, 주소 및 직위 또는 자격과 연락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5.12.5 회사는 인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고위험 국가 또는 비동등 관할권에서 발행된 것으로 인식되는 인증 사본 문서를 검토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5.12.6 모든 경우에 회사는 또한 신원확인서류에 기재된 고객 서명권자의 서명이 신청서, 위임장 또는 기타 서류상의 서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5.12.7 디지털 도구가 사용되는 경우, 서류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도 기술을 사용하는 플랫폼이 해당 서류의 진위성을 확인한다.

> 전자적 신원확인 및 검증

FSC Handbook 제5.11절에 따라 회사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전자적 검증 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고객의 신원을 적절히 확인할 수 있는지 보장해야 한다. 회사는 위험기반 접근법을 채택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데이터 출처, 생체정보 확인, 지리적 위치정보 도구, 인증

된 서류 또는 제3자 검증의 사용을 포함한 추가 검증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전자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진위성, 정확성 또는 소유권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추가 확인을 수행해야 한다. 회사가 고객의 신원 또는 주소를 만족스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과의 업무관계를 설정하거나 계속해서 안 되며 내부 의심거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5.13 번역

5.13.1 어떠한 서류라도 영어 또는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이들 언어 중 하나로 번역되어야 한다:

- a. 자격을 갖춘 번역가;
- b.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영어 또는 프랑스어에 능통한 회사의 직원; 및
- c. 번역 소프트웨어.

5.13.2 번역가는 번역가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류에 서명하고 자신의 성명, 직위, 회사, 이메일 주소 및 번역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인증자의 적절성과 번역가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확인 및 서류 검증을 각각 실시하고 요청해야 한다.

제6절: 고객 정책 및 절차

6.1 일반 고객 정책

회사의 일반 정책은 모든 고객에 대한 주요 연락 담당자로 적절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두는 것이다. 고객 회의는 회의록으로 요약되며 해당 고객 파일에 기록으로 보관된다.

법인(들)의 설립/설정에 앞서, 회사는 고객이 제안된 다양한 유형의 투자/상품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험고지 정책을 참조한다.

6.2 고객 온보딩 정책

6.2.1 고객의 실시간 온보딩

고객 온보딩은 신규 고객이 당사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회사가 고객과 최초로 접촉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 및 고객이 회사로부터 최대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을 규정한다. 여기에는 안내, 지원 및 단계별 튜토리얼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당사의 사업을 소개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고객 온보딩은 다음과 같다:

- 고객은 회사 플랫폼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한다;
- 고객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든 고객확인절차(“CDD”)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온보딩 팀 / 백오피스 팀은 신청서의 모든 항목이 완전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정보가 누락된 경우 신청서는 작성을 위해 고객에게 반환된다;
- CDD 서류를 수령한 후, 회사의 온보딩 팀 / 백오피스 팀은 회사 정책에 따라 신원확인,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수행한다;

고객이 요청을 받았을 때 요구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오도하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의 계좌 개설을 진행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고객과 어떠한 관계를 맺기 전에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고객의 배경, 고객의 출신 국가, 고객의 공적 또는 고위직 지위, 고객의 사업 활동, 전달 채널, 고객의 위험수용도 및 기타 위험요소가 포함된다.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회사는 고객의 배경 및 자금/재산의 출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다음 출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객을 수락하지 않는다:

- 고객이 양호한 평판을 가진 회사의 기존 유명 고객으로서 회사에 추가 고객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 고객이 평판이 좋은 유명한 현지 또는 국제 회사 또는 규제 대상 회사인 경우
- 고객이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활동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되는 관리회사, 법률회사, 은행 또는 기타 전문가에 의해 소개된 경우
- 고객이 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 또는 경영진 구성원에 의해 소개된 경우
- 고객이 회사가 입증된 업무관계를 구축한 신뢰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소개된 경우

고객 식별 및 검증 절차에 관한 제5.0절도 참조한다.

6.2.2 고객 온보딩 후

온보딩 팀 / 백오피스 팀이 고객의 CDD 서류 검증 및 고객 심사를 완료하면, 관리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분석가는 고객에 대한 서류 검증 및 심사를 2차로 수행해야 한다.

- 신원 증명서류 및 주소 증명서류는 고객의 신청서와 함께 검증된다. 신청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 CRM을 사용한다.
- PEP 또는 부정적 일치에 있는 경우, 회사에 EDD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 그런 다음 컴플라이언스 분석가는 수집된 정보에 따라 고객의 위험등급을 평가해야 한다.
-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은 운영팀이 수행한다.
- 거래 보고서는 매일(24시간 이내) 제공된다. 따라서 관리회사는 거래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 해당되는 경우 추가 서류 및/또는 갱신 서류를 요청한다.
-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신청서의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입금된 금액을 신청서에 공개된 정보와 대조할 수 없는 경우, 관리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요청한다:
 - a) 서명된 자금 및 재산 출처 신고서;
 - b) 관련 증빙서류
 - c)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추천서/CV를 요청할 수 있다; 선택사항.
 - d) 회사는 또한 인터넷 검색 및 제재 대상 여부 확인을 수행하도록 보장한다

회사는 다음을 보장한다;

- a. 계좌를 개설하는 각 고객으로부터 특정 신원확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
- b. 계좌를 개설하는 각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위험 기반 조치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 c. 고객의 신원확인 정보 및 확인 방법과 결과를 기록하는 것.

회사는 사업관계를 수립하는 시점에 사업 신청인이 제3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 회사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

- (i) 제3자의 신원(요구되는 경우 관련자 포함);
- (ii) FIAML Regulations 2018의 Regulation 3에 따라 요구되는 신원 증명서; 그리고

6.2.3 이전 절차

- 회사는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Management Company에 통지하고 이전된 고객의 목록을 공유한다.
- Management Company는 회사에 “이전된 고객”을 온보딩하기 전에 해당 고객의 서류가 최신 상태이고 적절히 인증 및 번역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해야 한다. 고객의 이전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고객은 자신의 계좌가 다른 기관으로 이전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당되는 경우 최신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받는다. (가능한 경우 승인서 및/또는 이메일을 요청/발송할 수 있으며, 로그인 시 기타 온라인 확인란 옵션/팝업을 제공할 수 있다 - 고객은 자신의 계좌 이전에 동의한다).
- Mauritius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ran 및 Myanmar와 거래하지 않으므로, 이들 고객은 이전되지 않는다. ID는 이들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계좌를 폐쇄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 계좌에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금은 고객에게 반환된다 - 따라서 Account Closure Form

및/또는 이메일을 시행할 수 있다(동일한 조항을 추가하며, 고객은 자신의 계좌가 폐쇄되고 자금이 반환된다는 사실만 확인한다). 또는 고객을 다른 관할권에 소재한 그룹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

-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서의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또는 입금된 금액이 신청서에 공개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Management Company는 다음 중 하나를 요청한다:
 - a) 서명된 자금 및 재산 출처 확인서;
 - b) 관련 증빙서류
 - Management Company는 이전된 고객에 대해 Screening, Internet Search, UNSC checks 및 Risk Assessment를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객의 Client Risk Assessment는 해당 고객의 위험 등급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6.2.3.1 고객 온보딩은 다음의 기본 원칙에 따른다:

- a. 각 문서는 원본 문서의 진본임이 확인된 사본이어야 한다.
- b. 문서는 다음 중 한 명에 의해 인증될 수 있다;
 - 1. 회사의 직원, 이사 또는 임원이 제안된 고객 또는 법인 고객의 주요 관계자를 대면하여 만나고 신원확인 서류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직원, 이사 또는 임원은 신원확인 서류의 사본을 만들고 이를 원본 서류의 진본 사본으로 직접 인증할 수 있다.
 - 2.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경우, Attorney, Barrister, Notary 또는 Chartered Accountant가 진본 사본으로 인증한 사본을 확보해야 한다.
 - 3. 인증자는 사본 문서에 서명하고, 인증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 주소 및 직위 또는 자격과 함께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c. 신원확인 자료가 불완전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신청은 접수되지 않는다. 계좌에 명의를 표시되고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모든 개인, 법인 또는 조직에 대해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1. 성명, 설립번호, 법적 지위, 설립 또는 등록일 및 설립 또는 등록 국가(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 2. 생년월일 및 출생지(개인의 경우)
 - 3. 직업, 보유 중인 공직 및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의 성명(개인의 경우) 또는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Policy(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 4. 현재 주소로서, 개인의 경우 거주지 주소이거나, 법인의 경우 등록 사무소 주소 및 주된 사업장 소재지(등록 사무소와 다른 경우);
 - 5. 여권 번호 및 발급 국가, 신분증 번호 및 발급 국가, 국적 또는 거주지를 입증하고 사진 또는 기타 유사한 보안장치를 포함하는 그 밖의 정부 발행 문서의 번호 및 발급 국가(예: national identity cards, current valid passports 또는 current valid driving licenses); 그리고
 - 6. 개인이 아닌 법인의 자본 또는 자산에 대해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실질적 주체(beneficial owners, controllers, directors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를 포함)의 신원과, 법

인을 대신하여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증거 및 해당 사람의 신원.

- d. 실질적 주체가 개인이 아닌 경우, 회사는 사업을 최종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식별번호가 없는 외국 사업체 또는 기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사업체 또는 기업의 존재를 인증하는 정부 승인 대체 서류를 요청한다.
- e. 잠재 고객이 위에 설명된 정보 또는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회사는 신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위험을 고려한 후 기존 고객의 개설된 계좌를 폐쇄하는 것을 검토한다.
- f. 고객의 위험 프로파일은 해당 서류를 기초로 결정된다. 위험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고객을 온보딩하기 전에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고객 거래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나 충분할 수 있다. 회사는 section 5.7에 따라 각 고객에 대한 제재 대상 여부 확인을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보장한다.
- g. 최종 평가 후 고객과 사업관계를 체결하기 전에, 위험 프로파일링 시트에는 Compliance Officer가 서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객 온보딩을 진행하는 것이 승인된다.
- h. 모든 문서는 고객의 온보딩일로부터 최소 7년 동안 기록으로 보관됩니다.

6.3 회사의 주요 주주 및 임원

회사의 주요 주주 및 임원, 예를 들어 이사, 주주, 최종수익소유자, 거래부서장, 거래부서 부서장 대리, MRLO, MLRO 대리 및 은행 서명권자에 대해 수행되는 모든 CDD 조치와 관련하여, 모든 CDD 문서는 FSC의 요구사항에 따라 원본과 일치하는 사본임이 적절히 인증되어야 합니다.

6.4 고객 분류

고객은 3개 범주로 분류됩니다:

1. 활성
2. 비활성 / 휴면
3. 폐쇄

1. 활성 고객

‘활성 고객’은 회사에 등록되어 있고 최근 XXX개월 이내에 거래 또는 매매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모든 고객에 대해 다음에 규정된 바와 같이 표준 실사가 수행됩니다: 2단계 - 식별 및 검증, 그리고 AML/CFT/CPF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의 부록 11에 따라 업데이트된 CDD 문서가 요청됩니다.

2. 비활성 고객

비활성 계정 상태는 다음의 여러 기준에 따라 정의됩니다: (i) XX개월 연속으로 미결제 포지션이 없는 경우, (ii) 최근 XX개월 연속으로 거래 활동이 없는 경우, (iii) 최근 XX개월 연속으로 입금, 출금 또는 내부 이체 활동이 없는 경우. 계정 간 내부 이체는 입금 또는 출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에 대해 다음에 규정된 바와 같이 표준 실사가 수행됩니다: 2단계 - 식별 및 검증. 위에서 정의한 비활동으로 인해 고객이 비활성 / 휴면으로 분류되는 경우, 업데이트된 문서는 **NOT** 요청됩니다.

비활성 계정 재활성화 절차:

고객이 자신의 계정으로 입금하거나 해당 계정에서 인출하거나, 해당 계정으로 거래하거나 해당 계정에서 거래하고자 하며 해당 계정이 휴면으로 인해 비활성 상태였던 경우, 고객의 입금 또는 거래를 허용하기 전에 다음 절차가 이행됩니다:

- i. 업데이트된 주소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및 업데이트된 신원 증명서(해당하는 경우)가 요구됩니다.
- ii. 이전에 요청된 추가 정보(예: 신청서 정보, 자금/재산의 출처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제공되어야 합니다.
- iii. 스크리닝(Worldcheck, 제재 스크리닝 및 인터넷 검색)이 다시 수행됩니다.
- iv. 위험 평가를 재검토하고 해당되는 경우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3. 폐쇄 계정

‘폐쇄 계정’은 회사에 등록되었으나 다음의 사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정으로 폐쇄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계정을 의미합니다:

- i. 내부 정책*(최신이 아닌 CDD 문서, 정보 부족, 거래 패턴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계정 폐쇄에 앞서 고객에게 통지하고, 업데이트된 CDD 또는 추가 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2주의 기간을 부여합니다. 요청된 문서가 해당 기간 내에 제공되지 않으면 계정은 폐쇄됩니다.

회사는 수령한 문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고객이 회사가 통지한 기한 내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재량에 따라 고객의 계정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의 계정에는 고객이 회사에 누락된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월 \$5 또는 계정 잔액 중 더 낮은 금액의 처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ii. 24개월 동안 비활성 상태인 경우*

계정이 24개월의 비활성 기간에 도달하면 자동 메시지가 생성되어 고객에게 발송되며, 약관에 따른 예정된 계정 차감에 대해 통지합니다. 동시에 영업팀에도 이러한 조치가 통지됩니다.

계정 잔액이 0에 도달하면 계정은 비활성화됩니다. 비활성화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정은 MT 거래 시스템 및 고객 포털에서 폐쇄됩니다. 그러나 마스터 계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모든 거래 계정이 폐쇄되면 마스터 계정 상태도 폐쇄로 변경됩니다.

- iii. 고객의 요청에 따른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계정이 폐쇄된 경우 해당 계정은 재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고객은 회사에 새 계정을 개설해야 합니다.

회사는 companies Act 2001 및 Financial Service Act 2007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자체 사무실 기록과 고객의 기록을 7년 동안 보관합니다.

사망의 경우

1. 고객이 사망한 경우, 고객의 법적 개인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고객의 사망에 대한 공식 통지를 회사에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실물 형태의 사망진단서 원본 제출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고객의 사망진단서를 수령하고 이를 수락하면, 회사는 고객의 사망을 채무불이행 사유로 취급하며, 이에 따라 고객 계정의 모든 미결제 포지션을 폐쇄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회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고객의 법적 개인대리인 또는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해지할 때까지 고객의 유산을 구속합니다.
3. 회사가 고객의 유산에 대한 유산대표권 부여서를 수령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사람도 고객의 법적 개인대리인임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고객의 유산에 대한 유산대표권 부여서를 수령하면, 회사는 고객의 법적 개인대리인의 서면 지시에 따릅니다. 회사는 계정을 정리 및/또는 폐쇄하기 위한 지시만 수락합니다. 재등록 절차가 완료되고 고객이 회사에 부담하는 모든 수수료, 비용 및 경비가 정산될 때까지 등록 자산은 매각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고객의 사망진단서를 수령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지시도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는 아니나) 고객의 보유자산을 고객의 법적 개인대리인 명의로 재등록하고, 전자 보유자산을 실물화하여 해당 보유자산을 증서 형태로 고객 유산의 등록 통신 주소로 발송할 수 있으며, 이는 Financial Terms에 수시로 명시되는 적절한 수수료를 조건으로 합니다.
4. 고객의 유산이 유산대표권 부여서를 요구할 만큼 충분한 규모가 아닌 경우, 회사는 전적인 단독 재량으로 고객의 법적 개인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유산대표권 부여서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거나 적절한 면책 보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Financial Terms에 명시된 해당 수수료는 계정이 폐쇄될 때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6. 계약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사망일로부터 two (2) years 이내에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계좌를 폐쇄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객의 유산 또는 그 법정 개인대표자는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회사의 중대한 과실, 고의적 채무불이행 또는 사기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한 범위는 제외한다.

제7절: 운영 정책 및 절차

7.1. 고객 운영 절차

회사의 목표는 만족과 신뢰의 환경에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수익을 제공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회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고객 운영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운영 절차는 또한 회사가 자체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준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도록 보장한다.

7.2 고객에 대한 서비스

- 회사는 고객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7.3 고객의 은행 계좌 및 COPRORATE 계좌의 분리

회사가 고객의 자산(고객 자금 포함)을 통제하는 경우, 해당 자산이 항상 적절하게 분리되고 식별 가능하도록 회사는 보장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 자금의 분리와 관련된 조치를 마련하였다. 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고객/거래처의 자산과 혼합하지 않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회사는 고객의 자산(은행 예금 포함)이 명확히 식별되고 회사의 자산 및 다른 고객의 자산과 별도로 보유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7.4 고객에 대한 보고

사업 관행상, 투자 딜러는 거래량에 따라 또는 거래자/최종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매일/매주/매월 거래자/최종 고객에게 '계좌 명세서'를 발행한다.

- '계좌 명세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 거래자/최종 고객의 최초 입금.
- 체결된 오픈 또는 종료 거래.
- 마진 콜.
- 거래자/최종 고객이 추가로 입금한 금액.
- 신청된 인출.
- 현재 계좌 잔액.
- 총 손익.

전체적으로 해당 명세서는 거래 계좌의 개요를 제공한다.

7.5 회사의 선급금

회사는 다음 거래를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 1) 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 매입에 사용하도록 고객에게 대출 방식으로 선급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a) 선급금이 제공되기 전에 고객이 선급금 제공 조건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이 FSC Rules를 준수하는 경우; 그리고
 - b) 선급금이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FSC Rules에 명시된 증권 시장가치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2) 위 (1)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500,000 rupees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또한, SA 2005의 section 54에 따라, 질권 설정, 저당, 유치권 또는 기타 담보권의 대상이 되거나 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공된 증권을 나타내지 않는 회사 고객 계좌의 모든 신용 잔액은—
 - a) 요구 시 지급되어야 한다;
 - b) 고객의 명시적인 서면 권한 없이 투자 딜러가 사용하거나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 c) 도산과 관련된 법률의 목적상 투자 딜러의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여서는 안 된다.
- 4) 위 (3)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500,000 rupees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회사는 고객이 유지하는 증권 계좌의 신용 잔액에 대하여 시장 금리에 따라 계산된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7.6 이해상충

회사는 이해상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이해상충 및 잠재적 이해상충은 회사 이사회에 공개되고, 이사회에 의해 검토되며, 해당되는 경우 해결되어야 한다.

고객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회사는 Appendix 15에 따른 이해관계 관리 정책을 채택하였다. 회사는 또한 준법 매뉴얼, 정관 및 모리셔스 법률을 따라야 한다.

회사는 이해관계 등록부(Appendix 15)를 유지하여야 한다.

7.7 민원 처리 절차

민원이란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서비스가 요구되는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지를 받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민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제기될 수 있다. 모든 민원은 절차상 또는 서비스상의 결함이 발생했음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민원에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중대한 불규칙 행위 또는 사기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5 working days 이내에 민원 접수를 확인한다.
- 지체 없이 모든 관련 정보와 함께 민원을 준법감시책임자에게 제출한다.
- 직원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경우, 준법감시책임자는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민원의 내부 및 외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조사한다.
- 민원이 회사 측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민원을 해결하고 해결이 공정하도록 보장한다.
- 민원인에게 서면 답변을 발행하며, 해당 답변에는 (i) 조사 결과의 세부사항, (ii) 상황상 필요한 경우 사과, (iii) 제안된 해결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고객이 제공된 답변에 만족하도록 보장한다.
- 그러한 민원이 준법감시책임자가 유지하여야 하는 민원 기록부에 기록되도록 조치한다.

서면 답변은 실행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다만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one month 이내에 민원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사기 또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민원은 조사 및 필요할 수 있는 후속 보고를 위하여 즉시 MLRO/DMLRO에게 회부되어야 한다..

7.8 준법 및 위험 위원회

AML/CTF는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위원회 의제의 상시 안건이다.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된다. 회사는 회사의 현재 및 미래의 전반적인 위험성향을 감독하고, 고위 경영진의 위험성향 프레임워크 이행 및 위험 상태 보고를 감독하기 위하여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TERMS OF REFERENCE OF THE COMPLIANCE AND RISK COMMITTEE'를 참조한다.

7.9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 (i) 회사가 적절한 회계 및 재무보고 프로세스와 절차를 채택, 유지 및 적용하도록 보장하는 것;
- (ii) 외부감사 절차의 독립성을 촉진하고 감사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것; 그리고
- (iii) 회사가 효과적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

자세한 내용은 'TERMS OF REFERENCE OF AUDIT COMMITTEE'를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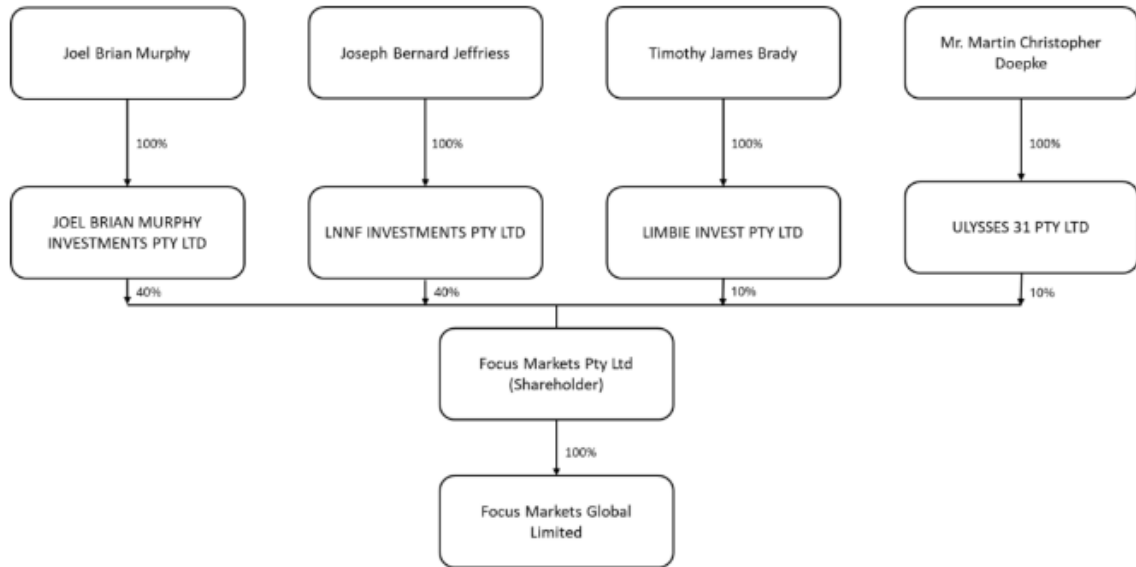
결론

- 회사의 고위 경영진은 AML/CTF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데 전념하며 규정 준수를 보장할 최종 책임을 진다. AML/CTF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정책과 절차가 이행되도록 보장할 책임은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자금세탁 보고 책임자 및 자금세탁 보고 부책임자에게 위임된다.
- 본 매뉴얼은 이사회가 채택하였다. 본 매뉴얼의 모든 개정은 이사회가 감독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즉, 매뉴얼의 모든 개정은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 고용이 시작될 때 모든 직원에게 본 매뉴얼의 사본이 제공되며, 본 매뉴얼의 조항을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부록 12)에 서명해야 한다. 서명된 양식은 기록 보관을 위해 MLRO에게 전달된다. 또한 최소한 수습기간 동안 AML/CFT/CPF 입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원이 AML/CFT/CPF 입문 교육을 만족스럽게 이해하고 이수한 경우에만 해당 직위에 정식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의 정책이다.
- 각 직원은 매뉴얼의 조항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 기소, 규제 제재 및 회사의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부록 목록	
부록 1	회사의 조직도
부록 2	MLRO 및 DMLRO의 의무와 책임
부록 3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부록 4	투자 딜러 팀의 의무와 책임
부록 5	위험평가 정책
부록 6A	위험평가 - 사업 위험평가 설문지

부록 6B	위험평가 - 고객 위험평가 설문지
부록 7	PEP 신고서 및 PEP 등록부
부록 8	교육 기록
부록 9	내부 STR 기록부
부록 10	부정적 언론보도 / 컴플라이언스 보고서
부록 11	업데이트된 CDD 문서
부록 12	확인서
부록 13	자금 출처 신고서
부록 14	거부된 고객 목록
부록 15	이해관계 관리 정책 이해관계 등록부
부록 16	위험평가 - 제3자 위험평가 설문지
부록 17	거래 모니터링 양식

부록 1: 회사의 조직도



부록 2: MLRO 및 DMLRO의 의무와 책임

Licensee는 내부 의심거래 보고서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MLRO가 고객 식별 자료 및 기타 CDD 정보, 거래 기록과 기타 관련 정보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MLRO는 의심거래 보고서를 FIU에 제출할지 여부에 관한 결정에서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MLRO는 평가 과정의 일환으로 동료와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고위 동료가 자신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MLRO는 부당한 영향, 압력 또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MLRO가 의심을 불러일으킨 거래에 관한 내부 보고를 확인한 경우, MLRO는 FIU에 보고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MLRO 및 MLRO 부재 시 Deputy MLRO는 다음과 같다:

- 공시 처리와 관련하여 Financial Intelligence Unit(“FIU”)의 주요 연락 담당자이다;
- 수익적 소유자를 포함한 회사 고객의 CDD 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
-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
- 일상적으로 연락이 가능하다;
-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며 이사회와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다; 그리고
- FIAMLA 및 FIAML Regulations 2018, FSC Handbook 및 본 Compliance Procedures Manual에 따른 자신의 개인적 의무와 Investment Dealer의 의무를 모두 완전히 숙지한다.

또한 MLRO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억제 절차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유지 및 이행할 책임을 지며, 해당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관리를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
-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교육 세션을 조직하는 것;

- 직원이 작성한 자금세탁 의심 보고서를 접수하고, 이후 이를 확인·보고하며 FIU와 연락하는 중앙 연락 담당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의심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의심거래 보고서를 제출할 때 고객 관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해 회사에 자문하는 것;
- 각 고객의 위험등급을 모니터링하는 것;
-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사항에 관하여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는 것;
- 모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문제를 매년 또는 필요한 경우 더 짧은 간격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
- 이용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모든 내부 공시를 검토하고, 해당 내부 공시에 실질적인 근거가 있어 FIU에 외부 공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 관련된 모든 기록을 유지하는 것;
-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고객에게 제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피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의 방지, 탐지, 조사 또는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FIU 및 필요한 경우 FSC와 연락하고 기타 제3자 문의에 참여하는 것.

부록 3: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FIAML Regulations 2018의 Regulation 22 (1) (a)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위 경영진 수준의 준법감시인을 지정하고 FSA 제24조에 따른 임원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법감시인('CO')은 금융기관이 FIAMLA 및 FIAML Regulations 2018의 요구사항에 따라 내부 프로그램, 통제 및 절차를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고위 경영진은 FIAML Regulations 2018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노출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해당 위험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직급을 가진 임원 또는 직원으로 정의되며, 모든 경우에 이사회 구성원일 필요는 없다.

FIAML Regulations 2018의 Regulation 22(3)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지속적인 감독을 전제로 FIAMLA 및 FIAML Regulations 2018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을 수행하는 것;
- 매년 또는 필요한 경우 더 짧은 간격으로, 미준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포함하여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내부 준법감시 매뉴얼, 정책, 절차 및 시스템의 설계, 이행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

준법감시인은 또한 다음을 보장한다:

- Investment Dealer가 관련 법률, Guidelines 등을 준수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권고를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존재할 것;
- 규제기관과의 주요 연락 담당자 역할을 수행할 것.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와 관련된 계획을 개발, 유지 및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핵심 통제를 식별하고 매뉴얼에 포함하는 것
- 준법 준수 모니터링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설계하는 것
- 준법 준수 점검을 수행하는 것
-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권고를 제시하는 것
- 필요한 경우 조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
- 준법 준수에 관한 교육 세션을 조직하는 것
- 새로운 법률 및 규정에 대해 이사회에 업데이트하는 것
- 각 고객의 위험 등급을 모니터링하는 것
- 이사회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해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는 것

준법감시인은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통제가 항상 완료되도록 준법감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Investment Dealer가 규제기관이 정한 지침, 코드 및 기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준법감시인이 모든 모니터링 및 테스트를 직접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회사가 수행하는 모든 모니터링 및 테스트에 대해 준법감시인이 감독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의 상황상 직원 수가 적어 CO가 추가 기능을 수행하거나 회사 운영의 다른 측면에 대한 책임을 맡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CO 역할의 책임과 다른 기능의 책임 간의 이해상충이 식별되고, 문서화되며,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CO는 회사의 핵심 운영 활동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영업 권유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금융기관이 두 직무의 각 요구사항과 해당 개인이 두 직무를 모두 효과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일한 개인을 자금세탁 보고 책임자(“MLRO”) 및 CO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검토에서 도출된 자신의 조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반 또는 잠재적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즉시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Appendix 4: Investment Dealer 팀의 의무 및 책임

회사는 Dealing Team(Dealing 총괄 및 Dealing 보조 총괄)을 임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딜러들은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행동할 수 있다.

Dealing Team은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중요한 정책, 계획 및 전략 결정을 내리는 것.
- 운영 정책 및 절차를 개발, 이행 및 검토하는 것.
- 예산 편성, 보고, 계획 및 감사를 감독하는 것.
- 규제 및 내부 준수를 보장하면서 트레이더 및 기타 직원을 감독하는 것.
- Treasury Department를 감독하는 것.
- 장중 거래 세션 동안 고객 위험 관리를 모니터링하고 처리하는 것.
- 매일 매수 및 매도 신호를 발생시키는 Reuters 호환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 은행과 연락하여 유동성을 모니터링하고 고객, 회사 및 주식시장 간 결제를 관리하는 것.
- 시장 상황을 연구 및 분석하고 금융, 사회 및 경제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
- 현재 알고리즘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알고리즘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권고하는 것.
- 거래와 관련된 잠재적 전략을 설계하고 취해야 할 조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 거래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해당 거래가 규칙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것.

Appendix 5: 위험평가 정책

1. 위험기반접근법이란 무엇인가?

위험기반접근법은 잠재 고객, 신규 고객 및 기존 고객/파트너/이해관계자가 회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Spec Capitals Ltd('the Company')가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커니즘이다. CIMLI 사업 관계 또는 제안된 사업 관계를 통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최초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회사가 고객/파트너/이해관계자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많다. 이러한 요소의 비망라적 목록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 고객/파트너/이해관계자의 성격 및 유형
- 관계의 상업적 근거
- 고객/파트너/이해관계자의 거주지 지리적 위치
- 고객/파트너/이해관계자의 사업 이해관계 및/또는 자산의 지리적 소재지(해당되는 경우)
- 해당 관계와 관련된 자산/자금의 성격 및 가치
- 적절한 경우 고객/파트너의 자금 및 자산의 출처
- 소개자의 역할 및 해당 소개자가 규제 대상인지 여부

2. 위험기반접근법은 어떻게 이행되는가?

Spec Capitals Ltd의 위험기반접근법은 고객위험평가("CRA") 및 사업위험평가("BRA")의 수행을 통해 이행된다. 상기 각 평가를 위해 위험 프로파일링 설문지가 작성되었으며, 본 문서에 첨부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위험 프로파일링 설문지' - 부속서 1 및 '사업위험평가' - 부속서 2.

고객위험평가 - 위험 프로파일링 설문지:

실무상 회사에 전담 배정된 파일 관리담당자 또는 컴플라이언스 분석가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구성된 위험 프로파일링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 다음 해당 담당자는 각 기준에 귀속되는 위험 수준을 나타낸다고 판단하는 해당 비율을 기입한다.

귀속된 총 비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고객/사업 관계의 위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

그 후 4자 원칙에 따라 자금세탁 보고책임자/컴플라이언스 책임자가 평가를 재확인하고 검증한다.

사업위험평가:

회사는 항상 "체크박스" 접근방식을 피해야 하며, 각자의 상황에 근거하여 스스로 위험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기 언급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자금세탁 보고책임자가 일반적으로 본 문서 또는 설문지를 작성한다. 회사는 식별된 모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식별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업의 특정 부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통제 또는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 후 해당 문서를 회사 이사회에 상정하여 논의 및 검토하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BRA는 이사회 구성원이 검증하고 부서명한다.

상기 절차의 전체적인 이행은 아래 제4절(절차)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3. 왜 위험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도입하는가?

적절한 위험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회사가 고객, 서비스 제공자, 사업 관계 및/또는 활동을 평가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을 절감한다.

적절한 위험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CIML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객/잠재 고객, 서비스 제공자, 사업 관계/활동 및 고위험 상황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식별한다.
2. 고객/잠재 고객, 사업 관계/활동 및 상황을 위험 수준(낮음, 중간 및 높음)으로 분류하고 귀속시킨다.
3. 위험을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한다.
4. 절차

고객위험평가 - 위험 프로파일링 설문지:

제1단계

특정 고객 파일에 전담 배정된 파일 관리담당자 또는 컴플라이언스 분석가는 위험 프로파일링 설문지(이하 ‘설문지’)를 작성하고, 고객/파트너/이해관계자/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신의 지식에 따라 결과를 산출하여 고객/파트너/이해관계자/서비스 제공자, 그 활동 및/또는 사업 관계에 귀속되는 위험을 결정한다.

파일 관리담당자 또는 컴플라이언스 분석가는 이후 설문지에 서명한다.

제2단계

컴플라이언스 책임자/MLRO는 이후 위험 프로파일링 설문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한 후 검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설문지에 서명한다.

제3단계

위험 등급(제6절 아래 표에 규정됨)을 설정하고, 고객 파일은 부여된 위험 등급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제4단계

고객 파일이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경우, Financial Intelligence and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18 및 FSC Handbook 2020(2022년 9월 개정)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EDD)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사업 관계 중 정치적 주요인물(PEP)이 식별된 경우, 고객 파일은 자동으로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EDD 조치를 적용해야 하며, 사업 관계를 계속/개시/종료하기 위해 고위 경영진/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위험평가:

제1단계

사업위험평가 설문지(이하 ‘설문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회사 개요
- 승인된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정보를 일치시킬 것
- 다음 사항의 개요: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주요 고객 범주
 - 서비스 제공 채널
 - 고객의 지리적 소재지/분포

- 기술 발전
- 고객확인(CDD) 조치를 위한 제3자 의존

➢ 검토 대상 평가 기간

제2단계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책임자/MLRO는 상기 기준을 포함하는 사업위험평가 설문지를 작성하고, 회사의 활동에 대한 자신의 지식에 따라 결과를 산출하여 회사에 귀속되는 위험을 결정한다.

제3단계

컴플라이언스 책임자/MLRO는 이후 설문지에 서명한다.

제4단계

그 후 해당 문서를 회사 이사회에 상정하여 검토, 논의 및 심의하도록 한다. 변경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다.

제5단계

결국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BRA는 검증되고 이사회 구성원이 부서명한다.

사업위험평가에 대한 최종 책임은 회사 이사회에 있다.

5. 위험 등급의 변경

위험 평가는 촉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변경될 수 있다. 특정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위험 등급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 즉 위험 등급을 높이거나 낮춰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 등급의 변경은 컴플라이언스 분석가 또는 파일 관리담당자의 권고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책임자/MLRO가 재승인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의 목적은 고객의 기업 구조, 경영진 및 활동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MLRO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계좌 개설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거나 모든 신원 확인 정보를 재검증할 필요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검토는 Compliance Officer / MLRO가 검증합니다. 고객의 구조, 경영진 및 프로필 변경을 검토하는 것 외에도, 일반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고객의 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가 수행됩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고객에 대해 보유한 정보에 비추어 고객의 활동에 비정상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변경이 있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과 관계없이, 직원이 고객의 상황에 변경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구조의 변경 또는 새로운 사업 분야로의 진출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는 즉시 고객 파일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해당 정보가 고객의 위험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Compliance Officer / MLRO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Compliance Officer / MLRO가 고객의 위험평가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트리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나, 아래 목록은 포괄적인 것이 아닙니다:

- 관할권 변경
- 국적 변경
- 제품 및 서비스 변경
- 자산의 성격 및 가치 변경

6. 위험 수준

고객 위험평가 - 위험 프로파일링 설문지:

위험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고객 파일의 검토 빈도가 결정됩니다.

위험 수준:	검토 빈도:
낮음	3년마다
중간	2년마다
높음	매년

사업 위험평가:

위험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되며, 검토 빈도는 매년으로 합니다.

사업 위험평가 방법론

SN	위험평가 방법론
1	회사의 활동, 제품, 서비스, 고객, 제공 채널, 지리적 노출, 제3자 의존도 및 기술 발전과 관련된 고유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정의합니다.
2	위험 범주별로 정리된 위험의 종합 목록을 작성합니다.
3	회사 전반에 적용할 평가 기준을 개발합니다.
4	식별된 각 위험에 대해 다음 항목의 등급을 부여하여 고유 위험 수준을 평가합니다: • 발생 가능성/확률; 및 • 회사에 미치는 영향/심각도. 등급은 1부터 5까지입니다
5	평가는 위험등급 척도에 규정된 승인된 등급 척도 및 위험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6	식별된 고유 위험을 해결하고 감소/완화하기 위해 회사가 시행한 기존의 완화 통제, 정책, 절차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식별하고 매핑합니다.
7	통제를 적용한 후 각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재평가하여 잔여 위험 노출을 평가합니다.
8	통제 적용 후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 점수를 합산하여 각 하위 위험의 잔여 위험등급을 산출합니다
9	잔여 위험등급을 통합하고 표로 작성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 위험등급을 결정하고 강화된 모니터링 또는 시정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합니다.
10	향후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s)를 위해 식별된 각 통제의 결함 또는 취약점을 추가 의견란에 기록합니다(해당하는 경우).

등급 척도:

고유 위험 점수	
종합 위험 수준	종합 위험등급
낮음	0 - 258
중간	259- 517
높음	518 - 775

발생 가능성 위험 설명 및 점수		
발생 가능성은 기존의 위험 및 취약점을 기준으로 위험 사건(예: ML/TF 악용)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0	해당 없음	위험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1	희박	10년 또는 그 이상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불가능하지는 않음 프로젝트 기간 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2	가능성이 낮음	3~10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프로젝트 기간 내 발생 가능
3	가능	2~3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프로젝트 기간 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4	가능성이 높음	2년 이내에 한 번(50%) 또는 그보다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프로젝트 기간 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5	거의 확실함	연중 한 번 발생하거나 연중 발생할 것이 확실함(100%) 프로젝트 기간 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고유 위험의 영향/심각도 설명 및 점수		
수준	점수	설명
높음 - 순 위험 노출이 매우 우려되는 수준임	4 - 5	조직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이 \$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음 500k
		회사의 목표 또는 운영에 중대한 영향 - 목표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규제기관/법집행기관이 공식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음
		언론 보도의 중대한 위험
		고객의 33% 초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평판에 대한 중대한 노출
		영향이 위험 허용한도를 초과함
		협상의 여지가 없는 위험(예: 규제 위반)
중간 - 순 위험 노출이 어느 정도 우려되는 수준임	3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없는 위험.
		조직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이 \$일 가능성이 높음 250 - \$500k
		회사의 목표 또는 운영에 중간 정도의 영향
		규제기관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언론 보도의 중간 정도 위험
		고객의 20% 초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영향이 위험 선호도를 초과함
		평판에 대한 노출

		프로젝트 목표에 대한 중대한 위험.
낮음 - 순 위험 노출이 우려되지 않거나 허용 가능한 수준임	1-2	조직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이 \$ 5 미만일 가능성이 높음 ok
		회사의 목표 또는 운영에 영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음
		규제기관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낮음
		언론 보도의 위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음
		고객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음
		평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프로젝트 목표에 대한 위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음.

잔여 위험 설명 및 점수:

잔여 위험 점수		
잔여 위험은 통제를 적용한 후에도 남아 있는 위험입니다.		
0	해당 없음	남아 있는 위험이 없거나 해당 없음
1	희박	최소한의 위험만 남아 있으며 통제가 매우 효과적임. 잔여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고, 10년 또는 그 이상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불가능하지는 않음.
2	가능성이 낮음	일부 잔여 위험이 남아 있으며 통제가 위험의 대부분을 감소시키지만 전부를 감소시키지는 못함. 3~10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프로젝트 목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음.

3	가능	중간 정도의 잔여 위험이 남아 있으며 통제가 위험을 부분적으로 완화함. 발생할 수 있고, 2~3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프로젝트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가능성이 높음	중대한 잔여 위험이 남아 있으며 통제가 부분적으로만 효과적임.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재발할 수 있고, 1~2년 이내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5	거의 확실함	업데이트 제안: 높은 잔여 위험이 남아 있으며 통제가 효과가 없거나 불충분함.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발생했으며, 최소 연 1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프로젝트 목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잔여 위험 점수/최종 위험등급 점수:

잔여 위험 점수 산정	
종합 위험 수준	전체 위험 등급
낮음	0 - 258
중간	259- 517
높음	518 - 775

7. 위험 등급 및 지침
고객 위험 평가 - 위험 프로파일링 설문지:

위험 프로파일링 설문지에서 위험을 산정한 후, 아래 표를 사용하여 고객 파일/구조의 위험 수준을 분류해야 합니다.

위험 수준	위험 등급
낮음	0 - 59
중간	60 - 129

높음	130 - 205
----	-----------

각 고객/서비스 제공자가 초래하는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할 때 위험 기반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으로 다음 사항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통해 보유하거나 수집한 전체 정보를 고려할 경우 위험 프로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낮음 및 중간 위험:

- 동등한 관할권 및 FATF 회원국에 소재한 규제 대상 신용기관 또는 금융기관;
- 동등한 거래소에 상장된 공개 거래 회사 또는 투자펀드;
- FSC와 동등한 규제 및 감독 책임을 가진 기관의 규제를 받고 해당 기관이 규제하는 소재지의 규제 대상 투자펀드.
- 예를 들어 고객확인조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높은 위험:

- 정치적 주요 인물(PEP) 또는 그와 연결된 자가 중대한 관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 관계(이 PEP의 정의에는 국가 또는 정부의 수반, 고위 정치인, 고위 정부·사법 또는 군사 공무원, 공기업의 고위 임원 및 주요 정당의 주요 관계자가 포함됨);
- 실소유자를 은폐하기 쉽게 하는 역외 특수목적기구와 같은 복잡한 기업 소유구조, 특히 합법적인 상업적 근거가 없는 경우;
- 비협조적 국가 및 지역("NCCTs")에 거주하거나 그 국가 및 지역의 국민인 고객이 관련된 관계;
- 관계없는 제3자와의 정기적인 지급 또는 수취가 관련된 계좌;
- 이전에 금융범죄와 연계된 이름(이는 UN 제재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un.org/securitycouncil/content/un-sc-consolidated-list>);
- 부패 및 조직범죄 또는 마약 생산·유통 수준이 알려진 고위험 관할권에 소재하거나 그곳에서 또는 그곳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고객;
- 고위험 사업 활동(예: 인터넷을 통한 전자 도박/게임)에 종사하는 고객;
- 특히 고위험 관할권에서 설립된 무기명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 대상이 된 고객.

사업 위험 평가:

FIAMLA 제17(2)조는 회사가 사업 위험 평가를 수행할 때 다른 위험 요인과 함께 6개의 주요 영역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 (i) 회사 활동의 성격, 규모 및 복잡성;
- (ii)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 (iii)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과 그 제공 방식;
- (iv) 고객 활동의 성격, 규모, 복잡성 및 소재지;
- (v) 고객확인 절차의 일부 요소를 제3자에게 의존하는 정도; 및
- (vi) 기술 발전.

FIAMLA 제17(2)(b)조에 따라 회사는 사업 위험 평가에서 국가 위험 평가(‘NRA’)의 결과 및 발행된 모든 지침을 고려해야 합니다.

8.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유용한 자료

> FIAMLA 2002

<http://www.fiumauritius.org/English/AML%20CFT%20Framework/Documents/2020/FIAMLA%20Updated%20August%202020.pdf>

> FIAML 규정 2018

<http://www.fiumauritius.org/English/AML%20CFT%20Framework/Documents/FIAMLA-2018.pdf>

> FSC 핸드북 2020

<https://www.fscmauritius.org/media/99188/aml-cft-handbook.pdf>

> 국가 위험 평가 보고서

- 2019: <https://financialservices.govmu.org/Documents/NRA%20Report/Public%20Report%202019-compressed.pdf>
- 2025: https://financialservices.govmu.org/Documents/AnnualReport/NRA_Public_Report.pdf

> 모리셔스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국가 위험 평가 결과

<http://www.fiumauritius.org/English/Seminars/Documents/NRAWorkshopPresentationsWebsite14102020.pdf>

부록 6A: 사업 위험 평가 설문지

별도로 제공됨.

부록 6B: 고객 위험 평가 설문지

투자자명:				검토일:	
제III부 - VI		전체 위험 등급: 전체 위험 수준: 낮은 위험(‘LR’) £ 중간 위험(‘MR’) £ 높은 위험(‘HR’) £		다음 검토일:	
I.	위험 평가 - 예비 점검에 근거한 고객 수락	지침	점수	의견	

(a)	고객이 제재 대상자이며/이거나 그 자금 (보험료)의 출처가 제재 관할권에 있거나 제재 관할권과의 거래 또는 예정된 거래인 경우	아니요 - 0 예 - 5		
(b)	고객의 배경이 이전, 현재 또는 계획된 사업 활동, 사업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아니요 - 0 예 - 5		
(c)	허위 또는 도난된 신원확인 서류나 정보를 수령했거나 고객이 고객확인 서류 제공을 거부한 경우.	아니요 - 0 예 - 5		
(d)	보험에 가입할 고객의 프로젝트에 상업적/합법적 근거가 없거나, 예정된 거래에 명백한 경제적/합법적 목적 또는 건전한 상업적 근거가 없는 경우	아니요 - 0 예 - 5		
(e)	고객이 매우 중대한 범죄 또는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제재를 받았거나, 보험계약자 및/또는 그 이사회/경영진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적으로 사업 관계를 수락할 수 없는 경우.	아니요 - 0 예 - 5		
(f)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예인 경우 양식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십시오	예 - 0		
	• 합계			

• 제I부에서 5점 이상을 받은 경우 고객을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위험 평가 기준	지침	점수	의견 / 근거
II.	고객 위험	(1)-(85) LR 0-5 MR 6-34 HR ≥ 35	등급: /85 0	낮음 중간 높음
1	정치적 주요 인물('PEPs') 또는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개인 / UBOs; 고객자산가(HNWIs)	(0)-(10) LR (0) Ø HR >0	0	

(a)	관계에 PEP 또는 PEP의 가까운 관계자 또는 PEP가 관여하거나 PEP와의 연계가 있는가? 사적 이익을 위해 해당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저명한 직위에 있거나 높은 사회적 인지도를 누리는 사람 또는 HNWI가 있는가?	Ø 예 (5) 아니요 (0)		
(b)	해당 고객의 이사(해당되는 경우) 또는 서비스 제공자 중 PEP가 있는가? 정치적 연계가 있는가? PEP와 관련된 기타 관련 연계가 있는가? 그러한 경우 해당 PEP가 고객/실소유자에 대해 중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가? 또는 HNWI인가?	Ø 예 (5) 아니요 (0)		

Ø PEP, 전직 PEP 또는 PEP의 가까운 관계자, HNWI인 경우 고객 위험 및 전체 등급은 자동으로 높음으로 변경되며 고객 수락을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고객/고객의 지배자 유형	(1)– (20) 낮음 <5 높음 >5	0	
(a)	개인	(5)		
(b)	i) FATF에 의해 제재되거나 조치를 요구받지 않은 관할권 또는 FATF에 따라 강화된 모니터링 대상 관할권 등에 소재한 규제 대상 법인 ii) FATF가 조치를 요구한 관할권에서 규제되는 법인 / FATF 기준 강화된 모니터링 대상 관할권 / 고위험 관할권 μ / 기타	(0) (5)		
(c)	기타 법적 약정 또는 구조?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단체(“NPOs”)	(5)		
(d)	(i) 신규 고객 (ii) 기존 고객	(5) (3)		
3	고객의 자금 출처 또는 재산 출처	(1)-(20) LR (1) MR (5) HR (10)	0	정의

(a)	고객의 자금 출처 또는 재산 출처가 확인되었는가?	예 (0) 아니요 (10)		
(b)	자금의 성격 / 고객의 사회적 / 재무적 지위	LR (1) MR (5) HR (10)		
4	독립적 검색 결과(스크리닝 또는 기타 독립적인 방법에 의함)	(0)-(15) LR (0) MR = (5) HR > (5)	0	
(a)	고객 / BOs / UBOs / Controller와 관련된 유죄 판결 / 제재 / 진행 중인 소송 / 부정적으로 보도된 언론 보도 / 공개적 비판 (Φ) 및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며 EDD 조치로 완화할 수 없는 사항	(5)		
(b)	최근 수년간 고객에게 부과된 AML/CFT/CPF 의무 또는 보다 광범위한 행위 요건의 미준수와 관련된 과거 유죄 판결 또는 감독상 제재나 집행 조치로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제 이슈가 있는가?	(5)		
(c)	고객이 제공한 문서를 근거로 검색 또는 EDD가 수행되지 않았는가?	(5)		
(Φ) UBO / BO / Controller에 관한 사항은 비교란을 참조하십시오				

5	개인의 직업 / 법인의 사업 / 법적 약정 또는 NPOs의 목적	(1)– (20) LR (1) MR (5) HR ≥ 5	0	
(a)	건설, 제약 및 의료, 채굴 산업 또는 공공 조달 등 일반적으로 더 높은 부패 위험과 관련된 부문과의 연계가 있는가? (마지막 페이지의 사업 활동 표를 참조하십시오)	예 (5) 아니요 (0)		
(b)	특정 자금 서비스 제공업체(“MSPs”), 카지노 또는 귀금속 딜러 등 ML 및/또는 TF 위험이 높은 부문과의 연계가 있거나 상당한 현금이 관련되는가?	예 (5) 아니요 (0)		

(c)	법인의 사업 활동 / 고객의 직업 / 법적 약정 또는 NPO의 목적	LR (1) MR (5) HR (10)		
-----	---------------------------------------	-----------------------------	--	--

Part I (5)(c)의 비고란에서 다양한 부문에 대한 NRA 분류를 참조하십시오

III. 상품, 서비스 및 거래 위험		(3)- (30)	평가: /30	
		LR = 3		
		MR 5-11		
		HR ≥ 12	0	
1	고객의 은행 계좌에 대한 통제,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의 이용 가능성, 금융기관의 사업 활동에 부합하는 고객의 거래 또는 상품, 서비스나 거래의 불투명성을 포함한 투명성 수준	LR (1) MR (3) HR (5)		
2	거래의 가치 또는 규모	LR (1) MR (5) HR (10)		
3	사업 관계의 일부가 아닌 제3자가 지시를 내리는가? 사업 관계와 무관한 제3자 지급이 있는가?	LR (0) HR (10)		
4	신규 또는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특히 신규 기술 또는 지급 수단이 사용되거나 회사의 전문 분야 외부에 해당하는 경우	LR (1) MR (3) HR (5)		

국가 / 영토 및 지리적 영역 위험		(0)- (50)	평가: /50	
		LR (0)		
		MR (5-25)		
		HR > 25	0	
1	개인 / UBO / Controller의 국적			
	국제 조세 투명성 및 정보 공유 기준 / FATCA 참여 관할권 / CRS 약정 관할권 / 국가 또는 영토의 ML/TF/PF 수사 사법 제도 / 제재 없음	LR (0)		

	FATF 40 + 9개 권고사항 미준수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부 법률의 취약성 / 부패 지수(Transparency International 및 W.G.I) / 세계 거버넌스 지표(정치적 이슈)	MR (5)		
	FATF가 조치를 요구한 관할권 / FATF 기준 강화된 모니터링 대상 관할권 / 기타	HR (10)		

2	개인 / UBO / Controller가 거주하거나 소재한 국가			
	국제 조세 투명성 및 정보 공유 기준 / FATCA 참여 관할권 / CRS 약정 관할권 / 국가 또는 영토의 ML/TF/PF 수사 사법 제도 / 제재 없음	LR (0)		
	FATF 40 + 9개 권고사항 미준수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부 법률의 취약성 / 부패 지수(Transparency International 및 W.G.I) / 세계 거버넌스 지표(정치적 이슈)	MR (5)		
	FATF가 조치를 요구한 관할권 / FATF 기준 강화된 모니터링 대상 관할권 / 기타	HR (10)		

3	개인 / 실소유자 / UBO / Controller가 활동하는 국가			
	국제 조세 투명성 및 정보 공유 기준 / FATCA 참여 관할권 / CRS 약정 관할권 / 국가 또는 영토의 ML/TF/PF 수사 사법 제도 / 제재 없음	LR (0)		
	FATF 40 + 9개 권고사항 미준수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부 법률의 취약성 / 부패 지수(Transparency International 및 W.G.I) / 세계 거버넌스 지표(정치적 이슈)	MR (5)		
	FATF가 조치를 요구한 관할권 / FATF 기준 강화된 모니터링 대상 관할권 / 기타	HR (10)		

4	자금 출처의 지리적 위치			
	국제 조세 투명성 및 정보 공유 기준 / FATCA 참여 관할권 / CRS 약정 관할권 / 국가 또는 영토의 ML/TF/PF 수사 사법 제도 / 제재 없음	LR (0)		
	FATF 40 + 9개 권고사항 미준수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부 법률의 취약성 / 부패 지수(Transparency International 및 W.G.I) / 세계 거버넌스 지표(정치적 이슈)	MR (5)		
	FATF가 조치를 요구한 관할권 / FATF 기준 강화된 모니터링 대상 관할권 / 기타	HR (10)		

5	자금의 목적지			
	국제 조세 투명성 및 정보 공유 기준 / FATCA 참여 관할권 / CRS 약정 관할권 / 국가 또는 영토의 ML/TF/PF 수사 사법 제도 / 제재 없음	LR (0)		
	FATF 40 + 9개 권고사항 미준수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부 법률의 취약성 / 부패 지수(Transparency International 및 W.G.I) / 세계 거버넌스 지표(정치적 이슈)	MR (5)		
	FATF가 조치를 요구한 관할권 / FATF 기준 강화된 모니터링 대상 관할권 / 기타	HR (10)		

	전달 채널 위험	(1)– (20) LR 1 MR 5 HR ≥ 10	평가: /20	
1	화상통화를 포함한 빈번한 대면 고객 관계	(1)		빈도 명시(해당되는 경우)

2	대면하지 않는* 고객 관계만 해당(우편, 전화, 문자, 인터넷 포함) 및/또는 중개인을 통한 관계(게이트키퍼 포함) * 고객이 FI에 알려진 고객이지만 대면하지 않고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중간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MR (5) HR (10)		
3	요청하지 않은 고객 관계(방문 고객 포함)	(20)		

의견:

VI. 정보의 일관성/완전성		(0)– (20)	평가: /20	
		LR 0		
		MR 5-10		
		HR > 10	0	
1	미제출된 기본 KYC / CDD 문서	(10)		
	최신이 아닌 KYC / CDD 문서	(5)		
	취득한 모든 고객확인(CDD) 문서	(0)		
2	추가로 고려해야 할 관련 요소가 있습니까?	(5)		
	총점	(200)	0	

위험평가 요약

	고객 위험 / 고객 활동의 성격, 규모 및 복잡성	상품, 서비스 및 거래 위험	국가 / 영토 및 지리적 지역 위험	제공 채널 위험	정보의 일관성 / 완전성	종합 위험
	제II부	제III부	제IV부	제V부	제VI부	
승인 및 검토						
정치적으로 노출된 인물 (PEP)	높음					높음

	작성자:	서명:	일자:
	검토자:	서명:	일자:
	종합 위험 수준	종합 위험 등급	
	낮음	0 - 59	
	중간	60 - 129	
	높음 ¹	130 - 205	

¹고객 파일이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경우, FIAML Regulations 2018의 Regulation 12(1) 및 FSC AML/CFT/CPF Handbook 2020의 Chapter 6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EDD)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고객 인수 위원회 승인²/CO/MLRO

서명:

**준법감시
인 /
MLRO**

**Managing
Director/
CEO**

일자:

²해당되는 경우, 특히 신규 고객을 온보딩하는 경우

낮음

중간

높음

비고:

μ: 고위험 관할권

관할권이 고위험 관할권인지 평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FATF 고위험 및 기타 모니터링 대상 관할권

- **European Commission** 고위험 제3국의 AML/CFT/CPF 목록
- [European Commission의 조세 목적상 비협조적 관할권 목록](#)
-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연례 부패인식지수](#)
- **OECD** 조세 투명성 및 조세 목적의 정보교환에 관한 Global Forum 평가
- **Office of Foreign Affairs Control (OFAC)** 국가 목록
- **Basel** AML 지수
- 부패인식지수
- 세계 평화 지수
- 세계 테러리즘 지수
- 금융 비밀 지수
- “Know Your Country” FATF AML 결함 목록을 확인하고 “Google Boolean”을 사용

사업활동 분류:

저위험

비생명보험

연기금

소매 부문

게임 부문(규제 대상, 소규모)

공공 의료

정부 기관(비금융 / 행정)

신용조합 / 협동조합 신용사회

공공 유틸리티

교육기관(공립/사립)

중위험

보험(생명)

증권 및 자본시장

회계 및 감사 전문가

공증인(부동산/법인 서비스)

협동조합 신용조합

의료 부문(민간 병원)

정부 기관(서비스 제공)

IT 및 기술 부문

정부 기관(금융/규제)

통신 부문

마케팅 및 광고 부문

지급 서비스 제공업체(PSPs)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s)

글로벌 비즈니스 회사(GBCs)

고위험:

은행 부문

신탁 또는 회사 서비스 제공업체(TCSPs)

부동산 부문

자금 또는 가치 이전 서비스(MVTS)

귀금속/보석 딜러

변호사(회사 설립, 부동산 거래 등에 관여하는 자)

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문(예: 토지 등기 조작, 온라인 사기)

고액 현금 매출 사업체(비규제)

Φ: Ultimate Beneficial Owner (UBO) / Beneficial Owner (BO) / Controller가 언급되는 경우에는, Legal Person 또는 Legal Arrangement 또는 Charities 또는 Non-Profit Organisations로 분류되는 투자자의 UBO / BO / Controller를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2019: <https://financialservices.govmu.org/Documents/NRA%20Report/Public%20Report%202019-compressed.pdf>

2025: https://financialservices.govmu.org/Documents/AnnualReport/NRA_Public_Report.pdf

부록 7: PEP 신고서 및 PEP 등록부

정치적으로 노출된 인물 지위 신고서

아래의 정치적으로 노출된 인물(“PEP”)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요청된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이는 Company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조치와 관련하여 Financial Intelligence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02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 현재 주요 공적 기능(1)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위임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는 그러한 PEP의 직계 가족(2) 또는 가까운 측근(3)입니까?

☐ 아니요 ☐ 예 - 예라고 답한 경우, 해당 기능(수행한 기능, 시기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자금/재산의 출처

2. 위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 현재 자금/재산의 출처 및 향후 예상되는 자금/재산의 출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 ☐ 사업 운영 ☐ 투자 수익
☐ 대출 ☐ 급여
☐ 상속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본인은/당사는 위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함을 확인합니다.

본인은/당사는 위에 신고된 지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신속히 통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명: _____

고객/본인의 성명: _____

를 대신하여

일자:

PEP 등록부

	PEP 성명	국적 및 여권 ID	PEP가 관여하는 법인 및 해당 법인에서의 직위	법인의 활성 또는 비활성 여부	적발 또는 부정적 언론 보도 (있는 경우)	검색 일자 (위험 기반으로 수행)	의견
1.							

2.							
3.							
4.							
5.							
6.							
7.							

부록 8: 교육 기록

ICM Capital (Mauritius) Limited (the "Company")						
TRAINING REGISTER						
S/N	DATE	ATTENDEE(S)	TOPIC	TRAINING INSTITUTION	DURATION (HOURS)	CIML ANNUAL CPD AS AT NOV
1						
2						
3						
4						
5						
6						
7						
8						
9						
10						
DIRECTORS, CO & MLRO/DMLRO & Dealing Team						
Directors						
1						
2						
3						
4						
CO & MLRO/DMLRO						
1						
2						
3						
4						
5						
6						
Dealing Teams						
1						
2						
3						
4						
5						

부록 9: 내부 STR 기록

내부 의심거래 보고서(iSTR)**MLRO 앞 내부 공개 양식****1. 보고 직원;**

성명:

전화번호:

2. 고객 세부정보;

고객명:

주소:

연락 담당자명:

연락 전화번호:

고객과의 사업관계 개시일:

고객 참조번호:

3. 정보/의심

의심되는 정보/거래:

의심 사유:

이 보고서에 관련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보고자 서명: 일자:

고객 또는 그 밖의 누구에게든 귀하의 의심 및 보고 사실을 알리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이 보고서는 최고 수준의 기밀로 취급됩니다.

MLRO 사용란:

접수일: 접수시간: 참조:

FIU 통지 ... 예/아니요 일자: 참조:

부록 10: 부정적 언론 보도 / 준법 보고서

Investment Dealer는 자동화된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Management Company에 검색 기능을 아웃소싱했습니다. 해당 엔진은 다음의 경우에 부정적 언론 보도 및/또는 적발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고객 인수 단계에서 고객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경우.
- 고객이 인수된 후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경우.

두 경우 모두 Compliance Officer/MLRO(후자의 부재 시 DMLRO)는 권고사항을 포함한 준법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회는 다음 조치를 결정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FSC에 제출하기 전에 Compliance Officer/MLRO(후자의 부재 시 DMLRO)와 Investment Dealer의 이사가 서명하여 승인해야 합니다.

부록 11: 최신 CDD 문서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Company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고객 여권의 만료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마다 갱신된 여권을 요청하여, 사진이 포함된 신원 증명 자료인 유효한 여권 사본이 항상 회사에 보관되도록 한다.
- 고객 신원의 특정 측면이 변경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예: 성명, 국적 또는 승인된 기타 사항의 변경), 관련 최신 고객확인(CDD) 서류를 수집한다.
- 다음의 위험 기반 접근법에 따라 고객에게 최신 주소 증명서를 요청한다. 즉, 요청 빈도는 고객의 위험 등급에 따라 결정한다.

위험 수준	최신 주소 증명서 요청 빈도
저위험	3년마다
중위험	2년마다
고위험	매년

부록 12: 확인서

확인서

본인(직원 성명)은 본 준법감시 매뉴얼의 내용을 읽고 이해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회사의 준법감시 책임자 및 자금세탁 보고 책임자에게 질문하거나 제기하고자 하는 문의를 할 기회가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준법감시 매뉴얼에 규정된 정책, 원칙, 절차 및 프로세스와 이에 첨부된 정책, 절차 및 프로세스를 준수하는 데 동의하며, 본 매뉴얼 또는 회사의 기타 프로세스, 정책이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관련 조치를 취하거나 제재를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자필로 ‘읽고 이해함’이라고 기재하십시오)

직원 서명

직원 성명:.....

일자:

부록 13: 자금 출처 신고서

회사명	
자금 및 재산의 출처 확인	
성명 / 법적 성명:	
신분증 번호/회사 번호:	
국적/설립 국가:	
생년월일 / 설립일:	
영구 거주지/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본인/당사는 회사에 이루어진 예치금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1. 제3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그리고 2. 예치된 자금은 적법한 출처에서 발생한 것이며, 범죄적 출처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계되거나 그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고, 특히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수익을 구성하지 않음.	
정치적 주요 인물(“PEP”) 확인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 표시)	
PEP ☐ PEP 관련 ☐ 해당 없음	
자금 출처 신고 - 예치될 자금 출처에 대한 상세 설명.	

자금 출처: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 표시)

1. 회사 자본 ☐
2. 급여 소득 ☐
3. 배당금 ☐
4. 사업 운영 수입 ☐
5. 증여 ☐
6. 상속 ☐
7. 투자금의 이익 또는 만기 수익 ☐
8. 재산 매각 이익 ☐
9. 회사 주식 매각 수입 ☐
10. 정기예금 저축 ☐
11.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

송금 은행명:
송금 은행 주소:
송금인 계좌명:
송금인 계좌번호:
기타 세부사항:
재산의 출처
재산의 출처: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 표시)

1. 급여 소득 ☐
2. 생명보험 증권의 만기 또는 해약 ☐
3. 투자 매각/청산 ☐
4. 재산 매각 ☐
5. 회사 매각 ☐
6. 상속 ☐
7. 이혼 합의금 또는 기타 형태의 합의 보상금 ☐
8. 회사 이익 ☐
9. 퇴직 소득 ☐
10. 배당금/로열티 지급금 ☐
11. 고용 소득 ☐
12. 임대 소득 ☐
13.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

확인 및 인증

본인/당사는 고객 분리 계정에 예치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XXX의 정책임을 확인하며, 예치된 자금이 위 출처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증합니다. 해당 자금은 출신 국가 또는 이 계정과 관련된 기타 장소에서 불법 또는 위법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며, 그러한 활동과 관련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관련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당사는 현재 예치된 자금의 자금 출처에 관한 요구 증빙을 제공하며, 향후에도 요구되는 경우 이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인/당사는 XXX로의 자산 이전이 모리셔스 공화국에 적용되는 자금세탁 관련 규정 및 법률을 위반하지 않음을 추가로 확인하며, 여기에는 Financial Intelligence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02 and 2018,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2002 및 Prevention of Terrorism Act 2002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선의로 그리고 충분한 검토 후 작성함.

서명	
----	--

[illegible]

부록 15: 이해관계 관리 정책 및 이해관계 등록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란 무엇인가?

Companies Act 2001 제147조는 “거래에 대한 이해관계”를 회사가 당사자인 거래 중 이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로 정의한다.

- (a) 해당 거래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거래로부터 중대한 재정적 이익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경우;
- (b) 거래의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중대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 (c) 거래의 다른 당사자이거나 거래로부터 중대한 재정적 이익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다른 당사자의 이사, 임원 또는 수탁자인 경우,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당사자나 사람인 경우:
 - (i) 회사가 완전 소유 자회사인 지주회사인 경우;
 - (ii) 회사의 완전 소유 자회사인 경우; 또는
 - (iii) 회사 역시 완전 소유 자회사인 지주회사의 완전 소유 자회사인 경우;
- (d) 거래의 다른 당사자이거나 거래로부터 중대한 재정적 이익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사람의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인 경우; 또는
- (e) 그 밖에 해당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Companies Act 2001 제147(2)조는 회사가 당사자인 거래가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구성되고, 해당 제3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그 제3자가 이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사 또는 다른 사람이 보증, 면책 또는 담보의 제공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한 회사의 채무 또는 의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가 해당 거래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로 명확히 한다.

관련 당사자 거래에 내재된 이해상충을 적절한 모니터링, 승인 및 공개 등을 통해 적절히 처리하여 잠재적인 관련 당사자 거래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면, 이러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관련 당사자와 거래를 체결하는 것 자체에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해상충의 공개

Companies Act 2001 제148조 및 이사 의무, 보수 및 성과와 관련된 National Code of Corporate Governance 2016의 원칙 4는 회사의 이사가 회사와의 거래 또는 예정된 거래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해관계 등록부가 있는 경우 해당 등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회사에 이사가 둘 이상인 경우 회사의 이사회에 다음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a) 이사의 이해관계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의 성격 및 금전적 가치; 또는
- (b) 이사의 이해관계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의 성격 및 범위.

그러나 회사의 이사는 다음의 경우 위 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 -

- (a) 거래 또는 예정된 거래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인 경우; 그리고
- (b) 거래 또는 예정된 거래가 회사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통상적인 조건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예정인 경우.

어떻게 공개하는가?

이사가 다른 명시된 회사 또는 기타인의 주주, 이사, 임원 또는 수탁자이며, 등록 또는 공개일 이후 해당 회사 또는 기타인과 체결될 수 있는 모든 거래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일반 통지가 이해관계 등록부에 기재되거나 이사회에 공개된 경우, 해당 거래와 관련한 이해관계의 충분한 공개로 본다.

이행을 위한 이해관계 등록부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공개하지 않은 경우

이사가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또는 이사가 체결한 거래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래의 회피

Companies Act 2001 제149조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명확히 규정한다:

회사 이사가 이해관계를 가진 회사의 거래는 회사가 연차보고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모든 주주에게 해당 거래를 공개한 후 6개월이 만료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회사에 의해 회피될 수 있다.

회사가 해당 거래에 따라 **공정한 가치**를 수령한 경우에는 거래를 회피할 수 없다.

- (a) 회사가 거래에 따라 공정한 가치를 수령했는지 여부는 거래가 체결된 당시 회사 및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알고 있던 정보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b) 거래가 회사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통상적인 조건에 따라 체결된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에 따라 공정한 가치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 (c) 거래를 유지하려는 자로서 거래 체결 당시 이사의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하는 자는 공정한 가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 (d) 그 밖의 경우에는 회사가 공정한 가치를 수령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사가 이해관계를 가진 거래는 이사의 이해관계를 근거로 하여 본 조 또는 회사 정관에 따라야만 회피될 수 있다.

이 이해관계 정책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본 정책은 회사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해당되는 경우 이사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임원, 주주, 임원 또는 수탁자가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회사

이해관계 등록부

유형: Investment Dealer (Full-Service Dealer, Excluding Underwriting) License (Pursuant to Section 29 of the Securities Act 2005)

설립일: XXX XXX XXX

회사 번호: CXXX GBC

선임일	직위	구성원 이름	이해관계 설명
-----	----	--------	---------

	최종 실소유자		Mr. XX는 회사의 최종 실소유자이다. 그는 회사 주식의 100%를 소유한다. 그는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며 회사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비거주 이사		Mr. XX는 회사의 이사이다. 그는 이사회가 특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사회 회의에 참여하여 회사의 의무가 이행되도록 한다.
	비거주 이사		Mr. XX는 회사의 이사이다. 그는 이사회가 특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사회 회의에 참여하여 회사의 의무가 이행되도록 한다.
	거주 이사		Mr. XX는 회사의 이사이다. 그는 이사회가 특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사회 회의에 참여하여 회사의 의무가 이행되도록 한다.
	거주 이사		Mr. XX는 회사의 이사이다. 그는 이사회가 특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사회 회의에 참여하여 회사의 의무가 이행되도록 한다.
	거래 부서장		Mr. XX는 회사의 거래 부서장이다. 그는 유동성 공급자에 예치된 회사의 증거금 수준을 모니터링한다. 또한 거래 인프라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한다. 그는 고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내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해당 윤리강령에는 다음의 주요 정책이 포함된다: 이해 상충 관리, 고객 및 사업 정보의 기밀유지, 선물 또는 행사 또는 기타 혜택의 수령 및 제공.
	거래 부서 부서장 보좌		Mr. XX는 회사의 거래 부서 부서장 보좌이다. 그는 XXX를 포함한 거래 시스템을 구성하고 관리한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권고안 및 해결책을 고위 경영진에게 공식적으로 제시한다. 그는 또한 운영 및 위험관리 절차와 정책을 문서화하고 내부 지식 공유 사이트를 관리한다.
	DMLRO		Mrs. XXX는 회사의 CO & MLRO이다. DMLRO로서 그녀는 MLRO가 부재한 경우 내부 공개를 접수하고 외부 공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CO/MLRO		Mr. XXX는 회사의 MLRO이다. CO로서 그는 FIAMLA 및 FIAML Regulations 2018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프로그램 전반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FIAML Regulations 2018 Regulation 22(3)). 또한 MLRO로서 그는 필요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 시행 및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다. 그는 내부 공개를 검토하고 조사하며 해당 거래 보고가 의심스러운지 여부 및 FIU에 보고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	---------	--	--

이름:

직책: Company Secretary / Director

일자:

서명:

Appendix 16: Third Party Risk Assessment Template

제3자 위험 평가

XXX

(“Company”)

서비스 제공자명:	XXX
종합 위험 등급:	XXX / 100
종합 위험 수준:	저위험(‘LR’) ☐ 중위험(‘MR’) ☐ 고위험(‘HR’) ☐
위험평가일:	XXX
다음 검토일:	XXX

	위험평가 기준	내재위험 평가 지침	발생가능성 위험등급	의견 위험완화 통제
I.	고객 위험			

1. 서비스 제공자 유형				
	개인 FATF에 의해 제재 또는 조치 요청을 받지 않은 관할권에서 규제되는 법인 / FATF 기준 강화된 모니터링 대상 관할권의 법인 FATF에 의해 조치 요청을 받은 관할권에서 규제되는 법인 / FATF 기준 강화된 모니터링 대상 관할권의 법인 / 고위험 관할권 μ / 기타	(5) (0) (5)		
2. 사업의 성격				
	제공되는 상품 / 서비스 (부록 1 참조 - 방법론: 사업활동 분류)	LR (1) MR (3) HR (5)		
II. 국가 / 영토 및 지리적 위험				
1. 서비스 제공자의 설립국가 / 국적				
	국제 조세 투명성 및 정보 공유 기준 / FATCA 참여 관할권 / CRS 약정 관할권 / 해당 국가 또는 영토의 ML/TF/PF 수사 사법제도 / 제재 없음	LR (0)		
	FATF 40+9개 권고사항 미준수 /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정부 입법의 취약성 /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 및 W.G.I) / 세계 거버넌스 지표(정치적 문제)	MR (5)		
	FATF에 의해 조치 요청을 받은 관할권 / FATF 기준 강화된 모니터링 대상 관할권 / 기타	HR (10)		
2. 서비스 제공자가 거주하거나 영업하거나 소재한 국가)				
	국제 조세 투명성 및 정보 공유 기준 / FATCA 참여 관할권 / CRS 약정 관할권 / 해당 국가 또는 영토의 ML/TF/PF 수사 사법제도 / 제재 없음	LR (0)		

	FATF 40+9개 권고사항 미준수 /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정부 입법의 취약성 /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 및 W.G.I) / 세계 거버넌스 지표(정치적 문제)	MR (5)		
	FATF에 의해 조치 요청을 받은 관할권 / FATF 기준 강화된 모니터링 대상 관할권 / 기타	HR (10)		
3.	자금의 목적지			
	국제 조세 투명성 및 정보 공유 기준 / FATCA 참여 관할권 / CRS 약정 관할권 / 해당 국가 또는 영토의 ML/TF/PF 수사 사법제도 / 제재 없음	LR (0)		
	FATF 40+9개 권고사항 미준수 /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정부 입법의 취약성 /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 및 W.G.I) / 세계 거버넌스 지표(정치적 문제)	MR (5)		
	FATF에 의해 조치 요청을 받은 관할권 / FATF 기준 강화된 모니터링 대상 관할권 / 기타	HR (10)		
III.	독립적인 검색 결과(스크리닝 또는 기타 독립적인 방법)			
	정치적 주요 인물(PEP) / 관계에 관여하는 PEP / PEP 연계	Ø 예 (5) 아니요 (0)		
	유죄 판결 / 제재 / 진행 중인 소송 / 부정적으로 보도된 언론 보도 / 대중의 비판	Ø 예 (5) 아니요 (0)		
IV.	기술적 위험			
	특히 새로운 기술 또는 지급 방법이 사용되거나 회사의 전문 분야를 벗어난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LR (1) MR (3) HR (5)		
V.	고객확인 의무(CDD)			
	모든 CDD 문서 확보	LR (0)		
	최신이 아닌 KYC / CDD 문서	MR (2)		
	미제출된 기본 KYC / CDD 문서	HR (10)		

VI.	고려해야 할 추가 관련 요소가 있습니까?	(5)		
	총점	(100)		

의견:

종합 위험 수준	종합 위험 등급	검토 및 스크리닝 주기
저위험(LR)	0 - 25	3년마다
중위험(MR)	26 - 40	2년마다
고위험(HR)*	41 - 100	매년

*고객이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경우, FIAML Regulations 2018의 Regulation 12 및 FSC Handbook 제6장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EDD)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사회 / 준법감시인 / MLRO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XXX 준법 분석가
일자:	
서명:	
검토 및 승인자:	XXX 준법감시인
일자:	
서명:	

지속적 위험평가 - 위험 요소가 변경되었습니까?		낮음 ☐ 중간 ☐ 높음 ☐
귀하의 평가를 기재하십시오:		
작성자:	일자:	서명:
검토 및 승인자:	일자:	서명:

지속적 위험평가 - 위험 요소가 변경되었습니까?		낮음 ☐ 중간 ☐ 높음 ☐
귀하의 평가를 기재하십시오:		
작성자:	일자:	서명:
검토 및 승인자:	일자:	서명:

[illegible]